

서울시보

서울시 홈페이지 | www.seoul.go.kr

제3068호 2011. 09. 22.(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Hi Seoul
SOUL OF ASIA

HAECHI
SEOUL



상암동 하늘공원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서울특별시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 731-6113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518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훈 령]

제971호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9

제972호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안 17

[입법예고]

제2011-1477호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3

◆ 고 시

제2011-274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 35

제2011-27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73

제2011-276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3

제2011-277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03

제2011-279호 등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39

◆ 공 고

제2011-147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144

제2011-1476호 일반측량업등록공고 144

제2011-148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45

제2011-1483호 2011년도 제16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145

제2011-148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48

제2011-148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49

제2011-14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151

제2011-1492호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158

제2011-1493호 박물관 신규 등록공고 159

제2011-1494호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159

제2011-1497호 회계관계공무원 폐기직인 등록공고 160

제2011-1498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 행정처분 등 공시송달 163

제2011-1500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65

제2011-1501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기간 연장 공고 167

◆ 구 고 시

제2011-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성동구)	170
제2011-30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광진구)	171
제2011-4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강서구)	171
제2011-60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관악구)	173

◆ 구 공 고

제2011-862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공사완료 공고(성북구)	177
제2011-71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완료 공고(구로구)	177
제2011-613호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열람공고(동작구)	179
제2011-77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정거장))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서초구) ..	180
제2011-9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강동구)	181

◆ 기 타

제2011-266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90
제2011-26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90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518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허 광 태 인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로 수정한다.

제1조의 내용 중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이하 “법인”이라한다)”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으로 수정한다.

제2조의 내용 중 “법인의”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법인”이라 한다)”로, “민법”을 “『민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한다.

제3조의 내용 중 “민법의”를 “『민법』의”로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전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로 수정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이하 “사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③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법인의 이사장·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 의결사항 등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3명
 2.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3명
- 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경영전문인,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 법인의 임·직원, 서울시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⑤ 법인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동 조례 “제8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동 조례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각각 수정한다.

동 조례 “제17조”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u>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이하 "법인"이라 한다)</u> 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u> 을.....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u>의한다</u> .	제2조(적용범위) <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법인"이라 한다)의</u>「 <u>민법</u> 」..... <u>따른다</u> .
제3조(설립)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설립)「 <u>민법</u> 」의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생략) ② 시는 법인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범위에서.....
제6조(정관) ① (생략)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사전에</u>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u>이사회의 의결을 거쳐</u>
제7조(임원) ① 법인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이하 "사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이하 "사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장은 <u>이사회의 의결을 거쳐</u> 시장이 임명한다. ③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법인의 이사장·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에 의결사항 등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제9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3명 2.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3명 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경영전문인,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 법인의 임·직원, 서울시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법인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①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제10조(이사회) ①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제9조(사장 및 감사)</u> ① 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u>제10조(직원)</u>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u>제11조(운영재원 등)</u>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u>제12조(사업연도)</u> 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u>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u>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u>제14조(결산서의 제출)</u>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u>제15조(보고 및 검사)</u>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인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u>제9조 <삭제></u> <u>제11조(직원)</u> (현행과 같음) <u>제12조(운영재원 등)</u> (현행과 같음) <u>제13조(사업연도)</u> (현행과 같음) <u>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u> (현행과 같음) <u>제15조(결산서의 제출)</u> (현행과 같음) <u>제16조(보고 및 검사)</u>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제16조(경영평가)</u>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기관 등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인사상·예산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u>제17조(공무원의 파견)</u>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u>제17조(경영평가)</u> (현행과 같음) <u>제17조<삭제></u>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세종문화회관이 문화예술을 위한 공익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예술의 특성을 살린 평가제도 및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6조 제2항)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장이 임면하고,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함(제7조)
- 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명하도록 함(제9조)
-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함(제9조 제2항)
- 의결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제9조 제3항)
-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제9조 제6항)
-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3. 참고사항 : 없음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훈 령]**◆ 서울특별시훈령 제971호****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권 영 규 인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로교통의 기능을 보완하고 도시경관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적 기능 향상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기전설비”란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설치 관리하는 도로조명시설, 배수설비, 환기설비 및 이에 수반된 기계, 전기, 통신설비를 말한다.
2. “관리청”이란 「도로법」 등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로기전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도로조명시설”이란 공용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로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및 지하보·차도등을 말한다.
4. “가로등”이란 노폭 12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하며 보행등, 육교등 및 하이마스트등을 포함한다.
5.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6. “터널등”이란 터널내 교통기능 보완을 위해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7. “지하보·차도등”이란 지하보·차도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8. “가로등 주”란 등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철 또는 비철주를 말한다.
9. “정기점검”이란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0. “정밀점검”이란 전로의 절연·접지, 보호기기 동작상태 및 도로조명시설의 구조 안전에 관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1. “일상점검”이란 관리청이 매년 수립하는 점검계획에 따라 가로등 부점등, 사고주 등 도로기전설비에 대한 육안·휴대장비 등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로기전설비기본계획수립) ① 관리청은 관할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기전설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기전설비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기전설비의 현황분석
3. 도로기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4. 연차별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정비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기전설비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주요시설물 등의 설치기준) 다음 각 호의 주요시설물 또는 항목에 대한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수전전압
2. 전선로 배선
3. 관로포설
4. 보호기기(주개폐기, 분기개폐기)
5. 전선접속
6. 접지
7. 광원
8. 가로등 주
9. 등기구
10. 기초
11. 분전함 및 안정기 설치
12. 조도(휘도)기준
13. 기타 도로설비와 관련된 기준

제6조(도로조명시설) 도로조명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로등
 - 가. 등기구 설치 높이, 오버행, 경사각도는 별표 4에 따른다.
 - 나. 조명등기구 형태에 따른 배열의 차도폭(w), 등주간격(s), 높이(H)는 별표 5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조명등주간격 $S = \frac{F \times U \times N \times M}{W \times K \times L}$ 에 의해 산출한 값이나 목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S: 간격(m), F: 광속(lm), U: 조명율, N: 조명기구배열에 의한 계수, M: 보수율, W: 차도폭(m), K: 평균조도환산계수, L: 평균노면회도
 - 라. 등주 배열은 도로의 단면 구조, 차도 부분 노폭, 조명기구의 배광 등에 따라 한쪽 배열, 지그재그 배열, 마주보기 배열, 중앙 배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도로의 단면구조 및 차도 부분 노폭에 따라서는 이들을 조합하여도 좋다.
 - 마. 보행등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4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 바. 육교등은 구조나 의장의 조화를 고려하여 보행등에 준하여 설치한다.

2. 터널 및 지하보차도등

가. 터널 및 지하보차도 등에 설치하는 조명은 터널조명기준(KS C 3703)에 따라 설치한다.

나. 터널 및 지하보차도의 전·후의 접속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은 도로조명기준(KS A 3701)에 따라 설치한다.

다. 조명회로는 상시등(주야간점등), 비상등으로 구분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터널, 지하보차도에 접속되는 가로등 전원은 별도로 공급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이 불가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200m 이상의 터널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전시에 대비하여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7조(전선로매설 위치) 가로등 전선로는 가능한 한 보차도경계석 쪽으로 근접되게 설치하여 타 시설물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선로 보호) ① 도로관리청의 도로굴착승인업무담당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굴착대상 구간내에 가로등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 착공계 접수 후 굴착구간, 굴착일시 등을 가로등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전선로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로굴착 시행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도로굴착시행자가 전선로를 손괴하였을 경우 도로관리원은 가로등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응급조치 및 완전복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시설물의 통합) ① 관리청은 도로교통의 효율적 기능보완 및 도시미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관리기관으로부터 통합설치 협의가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로등 주
2. 신호등 주
3. 도로안내표지판 지주
4. 기타 통합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도로상의 시설물

② 도로안내표지판 지주의 경우는 구조 안전 등을 검토한 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① 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각각 100ppm 및 25pp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터널 안에서의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터널의 방재시설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에 따라 설치한다.

제14조(지하보차도 설비) 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하보차도의 배수펌프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의 수배전반 시설은 우기시 침수되지 않도록 지하보차도 주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수펌프는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에는 이물질과 모래가 퇴적될 수 있도록 침사조를 설치하여 유사시 배수펌프의 가동효율

을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하차도는 설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가 내부간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지상의 관리실에서 지하차도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⑤ 전원은 2계통 또는 비상발전기 설치를 검토하여 시행한다.

제15조(운영) ① 가로등은 무선원격조정에 의하여 점등 및 소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점등 및 소등 시간은 천문기상대 역서에 따른 일·출몰 시간을 기준으로 점등은 일몰 15분 후, 소등은 일출 15분 전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개, 강우 등 기상 상황의 변화로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조도유지) 관리청은 도로조명의 설계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등기구내 날파리 등 곤충류 제거
2. 매연에 오염된 글로우브 청소
3. 불량전구 적기 교체
4. 등기구 조사각도 교정

제17조(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도로조명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일상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정밀점검은 전기안전 및 도로조명시설의 구조안전을 위해 관리청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절연저항 측정값
2. 접지저항 측정값
3. 보호기기 동작상태
4. 경사주, 등주기초 균열, 양카볼트 부식 파손 등 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터널 및 지하차도의 기전·방송설비 및 소방설비는 설치목적에 부합된 작동여부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보강 및 안전조치)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보강하여 도로조명의 설계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 및 인위적인 사고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로등 주
2. 등주 밑부분이 부식되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가로등 주
3. 교통사고 미상으로 파손되어 철거된 가로등 주

② 접지불량 및 선로절연저항 불량 전선로는 발생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관리에산 편성) 도로기전설비에 대한 정비 및 보수에 따르는 예산편성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제24조(자재의 품질유지) 도로기전설비용 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이 정하는 규격을 준용하여 사용자재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물 준공) 가로등 설치 및 개량공사를 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한국전기 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점검을 받고 준공하여야 한다.

제26조(표찰) 관리청은 관리번호 및 관리청이 명시된 표찰을 가로등의 지상 2.5m 높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대한전기협회발행내선규정, 도로설비관련 KS규격 등 관련 규정과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28조(자료의 기록) 관리청은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분전함 관리이력부(별지 제1호서식)
2. 도로조명시설 관리이력부(별지 제2호서식)
3. 터널기전시설 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4. 지하차도기전시설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5. 가로등 표찰(별지 제5호서식)
6. 준공표지(별지 제6호서식)
7. 라인마크 설치기준(별지 제7호서식)

제29조(보고) ① 관리청은 도로기전설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에 설치한 도로기전설비 및 관리내용(통계)은 익년 1월 30일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시설물 설치기준

시설물 항목	설 치 기 준	관련규정
수전전압	단상 220V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기공급을 받기 어려운 곳 또는 부하가 밀집된 지역은 삼상 220V/380V를 수전 할 수 있다.	가로등용 분전함 (KS C 8324)
전선로 배선	- 선로 전압강하는 6% 이내. - 배선은 격등을 고려 2선식 제어방식. - 주내배선은 CV 4㎟ 2C 이상.	
관로포설	- 매설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 기타 장소는 0.6m 이상 - 관로규격은 시공성 및 사후관리를 고려 36㎟관 이상으로 한다 - 재질은 FEP관, CD-P관, 강제전선관, 트라우관로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교량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입하는 전선관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시점부에서 종점부까지 산출 최대구경의 동일크기 전선관을 부설할 수 있다.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판단기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보호기기	- 주개폐기는 MCCB 정격전류 200AT 이하. - 분기개폐기는 누전차단기 정격전류 30mA 이하. 감도전류 30mA, 0.03초 또는 50mA 0.1초 (단, 연접 접지저항 10Ω 이하 유지 경우)	가로등용 분전함 (KS C 8324)
접 지	- 가로등 주, 분전함 외함은 각각 100Ω 이하. - 접지값을 10Ω 이하로 할 경우는 분전함과 가로등 주의 접지를 연접접지 한다.	
전선접속	가로등 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용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광 원	- 메탈할라이드등, 나트륨등, 기타 고효율 등 선정 - 보행등의 광원색은 환경에 적합하고 연색성이 좋은 것을 선정	
가로등 주	- 재질은 철 또는 비철 등을 소재로 선정하되 미관을 고려한다 - 높이, 강도, 안정기 내장 점검구 크기는 관련규정을 적용	철재 가로등 주 (KS D 3600)
기 초	기초규격은 등주의 자중이나 풍하중을 고려하여 별표 7값 이상적용	
등 기 구 높 이	- 조명기구 통칙(KS C 8000) 및 도로조명기구(KS C 8010) 규정 준용 - 등기구설치높이·오버행·경사각은 별표 4에 의한다	
분 전 함 안 정 기	침수지역의 경우 분전함과 안정기는 지역여건을 고려 높이조정 가능	
조도 (휘도) 기준	-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는 별표 2의 값, -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조도는 별표 3의 값 - 터널지하차도 내 휘도는 터널조명기준(KS C 3703)의 값	도로조명기준 (KS A 3701) 터널조명기준 (KS C 3703)

주요시설물(기타) 설치기준

시설물항목		설치기준	관련규정
기 타 시 설	결선도	°분전함내에는 가로등 분기회로별 결선도를 도면화하여 분전함 문짝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지중선 매설테입	°지중선 매설 관로를 묻은 상단에는 전기위험표시 테이프를 관로 상부를 따라 부설하여야 한다.	
	준공표지	°도로조명시설의 구조적, 전기적, 기계적 안전을 기하고 공사참여자 모두가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준공표지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여 분전함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전선의피색상	°전선은 유지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상별로 색상을 달리하거나, 색상 표시를 부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인마크	°타공사 (가스관로, 송전관, 전기통신관로 등)의 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시 가로등 관로 매설지점을 쉽게 인지하여 가로등선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로등관로 매설위치 표시를 도로상에 설치하되 기준은 직선구간의 경우 가로등 경간당 1개씩 라인마크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설치한다.	
	주철 또는 스텐레스 등주	°관광특구, 상징거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강판주	°스테인레스, 주물주를 사용하는 이외의 일반도로에는 강판 가로등 주 제작후 아연용융도금 마감처리(페인트도장 금지)	철재 가로등 주 (KS D 3600)
	광고물 부착방지	°가로등 주분전함은 필요시 감전보호기능 및 침지류 부착방지를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다.	

[별표 2]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 기준

도로조명등급	평균노면휘도 (최소허용치) (cd/m ²)	휘도균제도(최소허용치)		TI(%) (최대허용치)
		종합균제도	차선축균제도	
M1	2.0	0.4	0.7	10
M2	1.5	0.4	0.7	10
M3	1.0	0.4	0.5	10
M4	0.75	0.4		15
M5	0.5	0.4		15

도로 및 교통의 종류에 따른 도로조명 등급

도로종류	교통의 종류와 자동차 교통량	도로조명 등급
상하행선이 분리되고 교차부는 모드 입체교차로로서, 출입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고속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으면서 도로 선형이 복잡한 경우 ¹⁾	M1
	교통량이 많거나 도로 선형이 복잡한 경우	M2
	교통량이 적고 도로 선형이 단순한 경우, 또는 주변환경이 어두운 경우	M3
고속의 도로, 상하행선 분리 도로	교통제어 ²⁾ 와 다른 형태의 도로사용자 ³⁾ 의 분리 ⁴⁾ 가 부족함	M1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2
주요한 도시 교통로, 간선도로, 국도	교통통제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부족함	M2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3
주요도가 낮은 연결도로, 지방연결도로, 주택지역의 주 접근도로, 사유지로의 접근도로와 연결도로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부족함	M4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5

1) 도로선형의 복잡함이란 도로의 기본 구조, 차량의 이동, 그리고 시각적 환경을 의미한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차선의 수, 경사면의 수, 신호등 및 표지, 진출입용 램프, 진입차량, 진출차량 등의 존재

2) 교통제어란 신호등과 표지판의 존재, 그리고 법규의 존재를 말한다. 제어의 수단은 교통신호등, 통행 우선권의 규칙, 우선권의 법규와 표지, 교통표지판, 방향표지, 그리고 도로표지 등이 있다. 이러한 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경우 교통제어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

3)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란 예를 들어 자동차, 트럭, 저속차량, 버스, 자전거, 보행자 등을 말한다.

4) 분리란 전용차선의 방법이나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교통 형태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리가 있다면 낮은 등급의 조명을 행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로법」,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한국산업표준(KS)」등 관계법령, 지침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문 및 관련규정의 표시방법을 개정하고,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법정 정기점검과 규정상 정밀점검의 중복에 따른 점검업무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을 규정에 반영함(안 제1조 및 제8조제1항)
- 「한국산업표준(KS)(기술표준원)」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KS 표준번호를 규정에 반영함(안 제6조)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해양부 예규)」개정사항을 규정에 반영함(안 제10조)
- 도로조명시설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법정 정기점검과 규정상의 정밀점검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함(안 제17조제3항)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훈령 제972호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안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권 영 규 인

2011년 9월 22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2.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및 추천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연장시는 연장기간)의 적정성

4.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또는 의무복무 대상자의 휴직
5. 훈련과정 및 훈련성과 평가
6.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
7. 그 밖의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훈련대상자 선발 시 검토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국외훈련대상자 선발 및 파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1. 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
2. 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경력·어학능력·연령 등) 및 절차의 적정성
3. 훈련과제, 훈련기관, 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
4. 훈련성과의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
5. 훈련이수 후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
6. 훈련분야별 허용인원의 제한
7. 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의 실·본부·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행정1부시장과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여 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외훈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주관부서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심의 생략) 6개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기간의 단축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제9조(국외훈련계획)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공무원에 대하여 국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연도별 국외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외훈련계획에는 훈련수요와 직급별 정·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간 훈련인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5급 이상 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 총 인원은 5급 이상 총 정원의 7퍼센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요건) ① 국외훈련 공무원은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영 제2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3. 6개월 이상의 장기훈련은 선발연도 말 현재 만 50세 이하의 자(직무훈련의 경우 국장급은 만53세 이하)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4. 6개월 미만의 단기훈련은 선발연도 말 현재 만55세 이하의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시 전입 2년 이상인 자)인 공무원. 다만, 단체훈련의 경우 만57세 이하인 자
5. 단체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발연도 말 현재 1년 이상의 국외훈련파견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6.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연구직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국외훈련 공무원은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어학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어학검정의 유효기간은 선발연도 말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

④ 선발과 파견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본 조의 선발연도 말은 전년도 말로 본다.

⑤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의 경우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훈련의 일반 요건에서 정한 어학점수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선발요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에서 정한 선발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글로벌 정책체험연수 등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하더라도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훈련, 비영어권 훈련, 특수지역 훈련, 단체훈련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외국장학금에 따른 훈련 등 특수한 훈련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발요건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선발방법) ① 훈련 대상자는 제10조에 따른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성적우수자 및 특수공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3급 이상 국장급에 대한 훈련, 별도의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선발되는 외국장학금훈련 등은 경쟁 선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훈련분야 선정과 훈련과제 부여) ① 주관부서의장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 선정 및 시정목표를 반영한 우선 선발대상 과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선발된 훈련대상자의 훈련과제와 관련한 부서장(과장급)을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훈련과제 수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훈련분야와 훈련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주관부서의장 또는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은 훈련공무원에게 당면 정책 과제와 관련되는 별도의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훈련공무원이 국외훈련을 통해 관련 부서의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훈련공무원은 주관부서의장과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에게 세부연구계획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출국 전까지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장과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은 소속 훈련공무원이 과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등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단체훈련의 경우에는 개인별 연구과제를 부여 하는 대신 훈련 공무원 전원이 공동 작성하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훈련기관 선정) ①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훈련대상자를 당해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장은 훈련예정자가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훈련기간) ① 훈련기간은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장기훈련은 사전 어학연수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내, 단기훈련은 6개월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동일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 파견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국외훈련의 파견) ①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발령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훈련기간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 예산에 따른 훈련의 경우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한 조기파견은 3개월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연수 비용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특별훈련의 경우 어학연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훈련준비 및 직무복귀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기간을 파견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 또는 훈련 중인 자가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파견을 제한할 수 있으며 훈련 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될 때에는 훈련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의장은 훈련예정자의 여권발급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외화사용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단기 국외훈련과정은 별도 자체교육계획에 따른다.

제17조(결원보충 승인)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장기국외훈련자의 결원보충은 훈련개시 30일 전까지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결원보충 신청은 연도별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자체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의 국외훈련 선발 시 검토사항을 기준으로 결원보충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별 국외훈련계획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국외훈련자는 결원보충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 ① 주관부서의장은 훈련공무원의 소재와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훈련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훈련 공무원 관리카드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장 또는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은 훈련공무원에게 훈련 중 연구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훈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제연구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장은 훈련기관의 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훈련자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훈련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장과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은 연도별 업무계획 등 정책 관련 자료를 훈련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송부하여 훈련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행정에 관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훈련공무원은 주관부서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등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별 훈련상황보고서, 기타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이 확인한 반기별 훈련상황보고서. 다만, 6개월 이하의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성과보고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기관 및 현지생활 소개서, 소재(변경)보고서, 신상보고서, 정책동향보고서 등
3. 자율·지정 연구과제보고서
4. 훈련종료 3개월 전 또는 3개월 후에 측정한 어학성적표

제19조(일시귀국) ① 훈련기간 중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의 사망 등 사전 승인절차를 거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귀국한 후에 일시귀국기간 중에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귀국의 최장기한은 연간 15일(파견일로부터 기산함) 이내로 하되, 주관부서의장이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장은 훈련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일시귀국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장의 승인 없이 훈련 도중에 귀국한 경우에는 동 기간 만큼의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며,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향후 훈련비 지급시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훈련 종료시점까지의 체재비가 기 지급되었거나 감액분이 향후 지급할 훈련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귀국 후 정산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훈련비용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 일시귀국 기간이 연간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에 대한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일시귀국 기간에 귀국일은 포함하되, 출국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로 일시귀국한 경우에 일시귀국 기간은 제5항에 따른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 범위 내로 한다.

제20조(훈련계획의 변경) ① 훈련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계획 (훈련목적·기관·기간·방법 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관부서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훈련계획의 변경내용·사유 및 향후 훈련계획서
 2. 훈련기관의 장 또는 책임 있는 관계관의 추천서, 입학허가서
 3. 훈련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빙서류
 4. 기 훈련내용(성적증명서 등 첨부)
 5. 그 밖에 주관부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 ② 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 하거나 훈련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③ 연령이 50세를 초과한 자가 훈련기간이 1년 미만의 훈련의 대상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훈련기간 연장은 전체 훈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제21조(훈련성과 보고 및 시정활용) ① 훈련을 종료하거나 복귀명령을 받은 훈련공무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그리고 파견기간 종료 3일 전까지는 훈련 주관기관의 장에게 귀국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귀국사실을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성과보고서(학위논문 등)를 주관부서의장과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장과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은 동 훈련성과보고서가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의장은 과제수행에 따른 훈련자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훈련성과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훈련성과 평가) 당초 훈련계획 대비 이수성과의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국외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훈련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

제23조(필요한 조치의 요구) ① 주관부서의장은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훈련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의장은 복무실태 확인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훈련성실의 원칙) ①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법령 및 주관부서의장 등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훈련공무원은 훈련국의 통상적인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수행 또는 훈련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국 국민 및 현직교민 등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연락체계의 유지) ① 훈련공무원은 훈련 주관부서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훈련공무원은 훈련 주관부서와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의 신상 등에 관련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복귀명령

제27조(복귀명령) ① 훈련공무원이 영 제30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이탈한 때(이하 “중도복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기관에 상당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학위과정의 성적 또는 훈련과제의 수행이 극히 저조한 때
4. 훈련기관의 학칙 또는 규칙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학칙 또는 규칙 등의 위반사유로 해당기관으로부터 불이익 통보를 받은 때
5. 영 제30조에서 정한 보고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주의 통보를 받은 때
6. 주관부서의장 또는 훈련과제 책임관의 지시사항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때

② 영 제31조에서 정한 질병 기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때(이하 “훈련중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훈련 중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 수행이 곤란한 때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정도가 제1항에서 정하는 현저한 이탈에 이르지 아니한 때
3. 시정 현안업무의 긴급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목적상 조기복귀의 필요성이 인정된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때

③ 주관부서의장은 훈련공무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복귀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도복귀 또는 훈련중단 조치를 취하고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 훈련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훈련비 지급·정산·환수

제28조(훈련비) 시비로 실시하는 국외훈련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학자금,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 의료보조비 등)를 지급하되,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학자금) ① 학자금은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부담금 등에 상당하는 비용과 그 밖의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내역이 명확한 현장실무수습비용 등을 포함한다.

② 주관부서의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제1항의 소요경비의 지급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급한도액은 연도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훈련기간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학자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훈련기간 동안 지원 가능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총비용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30조(항공료) ① 훈련공무원에 대한 항공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요금을 지급한다.

② 훈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미혼인 자녀에 한한다) 또는 직계존속 1인(훈련자가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자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곤란한 경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정부항공의뢰(GTR) 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정부항공의뢰(GTR) 요금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훈련공무원이 제2항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라 한다)의 항공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파견 요청 시에 주관부서의장에게 본인과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종료 시에는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훈련공무원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이 전체 파견기간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기간 중 혼인·출산 등의 사유로 동반가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동거기간이 전체파견기간의 2분의 1미만일 경우라도 귀국 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귀국 항공료는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운임은 훈련공무원의 파견 종료시점의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일이 시장의 승인에 의해 단축된 경우에는 당초 파견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⑥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는 훈련기간 중 출국 및 귀국 각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1조(체재비) 체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제32조(의료보험료) ①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된 의료보험료를 고려하여 훈련국별로 일정액의 의료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보험제도 미시행 국가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된 의료비를 고려하여 훈련국별로 일정금액의 의료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훈련국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훈련공무원이 훈련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국가로 이동시 소요되는 훈련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항공료와 생활준비금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훈련비 지급시기 및 방법) ① 2년의 회계연도에 걸친 훈련의 경우에는 예산사정에 따라 다음 연도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거나 전년도 훈련비의 일부를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훈련비 송금 시에는 송금당일의 전산화매도율(송금 보내는 환율)을 적용하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당일의 현찰매도율(은행으로부터 외화현찰을 사는 환율)을 적용한다.
 ③ 훈련비 정산 시에는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명령 종료일의 현찰매입률(은행에 외화현찰을 파는 환율)을 적용한다.
 ④ 제41조에 따른 의무복무 위반에 대하여 훈련비를 환수함에 있어서는 환수사유 발생 당일의 현찰매도율(은행으로부터 외화현찰을 사는 환율)을 적용한다.
 ⑤ 국장급 이상 공무원 직무훈련보조비, 특수지역보조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등은 월단위로 지급 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의 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제35조(훈련비 차액지급)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훈련주관부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외훈련 시 지급할 수 있는 훈련비와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훈련비 정산) ① 체재비는 지급기간과 실제 훈련기간의 차이가 5일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하고, 6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을 차감한 후 일할계산 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5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파견 종료시점의 체재비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에서 우선 차감하고, 그럼에도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파견 기산시점의 체재비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에서 차감한다.
 ② 실제 훈련기간은 파견기산일(출국이 늦은 경우에는 실제 최초 출국일)부터 파견종료일(귀국일이 빠른 경우에는 실제귀국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파견기산일과 파견종료일은 체재비 등을 지급한다.
 ③ 체재비 정산(일시귀국으로 인한 정산 포함)은 정산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체재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④ 국장급 이상 직무훈련보조비, 특수지역보조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및 체재비 가산금 등의 정산은 체재비 정산에 준한다.
 ⑤ 훈련공무원이 성적우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학자금 면제금액의 50%, 조교활동에 의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학자금 면제금액의 전액을 지원한다. 단, 기부금, 찬조금 등은 전액 불인정한다.

제37조(훈련비 환수) ① 훈련비 환수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21조제1항의 훈련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위를 미취득한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비의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이나 강의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teaching assistantship, research assistantship)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7장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

제38조(의무복무) ①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훈련 포함)을 받은 공무원은 6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훈련기간은 해당 훈련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된 기간을 말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65조의3의 직위해제기간은 의무 복무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가 또 다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때 새로운 훈련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전체 의무복무기간에서 잔여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39조(의무복무 확보를 위한 조치) ① 제38조제1항의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란 훈련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을 달리하여 입법부·사법부 등에서의 근무, 국·공립대학(교)등에서 교원으로 근무,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복무의무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주관부서의장은 소속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감독을 충실히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파면·면직 또는 타 기관 간 전보 그 밖의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요경비의 반납·복무의무의 승계 또는 일시유예 등 복무의무 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제1항 단서의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란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자연적인 사망, 공무원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40조(의무복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① 시장은 훈련공무원이 영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케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면직결정 전에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반납의무 이행 각서 및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지정 제출받는 등 훈련비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훈련이수자의 보직관리) ① 시장은 국외훈련공무원이 훈련을 통하여 지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항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거나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지원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직개편으로 대상 직위의 명칭·기능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통합 및 조정된 때
2. 훈련 이수자에 대한 징계처분·휴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보직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외훈련 이수자가 시에 복귀할 시점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 국외훈련 복귀자 또는 차기 파견대상자의 무보직 상태가 예견되는 바, 가급적 국외훈련 복귀자를 우선 보직하고 차기 파견대상자는 파견 시까지 2월의 범위 내에서 본청에 근무토록 하여 업무량 과다부서 업무지원, 교육준비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2의 규정에 따른 파견근무는 적정 보직관리로 간주하고 의무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기 위하여 파견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무복무 중의 휴직)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라 국외훈련 중에 있거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해외유학)에 따른 휴직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훈련 중인 자 및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훈련 중인 자가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성과보고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훈련성과보고 및 정산을 귀국 후로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유학휴직 희망자의 근무분야유학휴직의 목적, 분야, 기간 및 유학휴직 후 근무예정분야의 적정성과 직무활용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할 수 있다.

제43조(기관 간 인사교류) ① 의무복무 중에 있는 국외훈련이수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특별채용의 방식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복무 의무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8장 선발요건이 다른 훈련

제44조(박사파견 훈련) ① 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과학기술분야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을 박사과정 훈련에 파견할 수 있다.

1. 선발 연도말 현재 48세 이하인 경력직 공무원
2. 외국정부·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수혜(「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훈련비

- 에 상당하는 금액)를 받는 자로 시비 지원 없이 수학이 가능한 자
3.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자는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시장이 정하는 일정기간을 성실히 근무한 자
 4. 위원회가 박사훈련의 필요성·학위취득 가능성·학위취득 후 공직근무 가능성 등을 심의의결한 자
 - ② 훈련분야가 첨단과학기술분야이고 전향의 요건을 갖춘 경우 파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훈련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 파견한다.
 - ③ 최초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훈련성과에 따라 기간연장을 승인한다.
 - ④ 파견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훈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 ⑤ 훈련비는 장학금 등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 예산이나 이에 준하는 자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의무복무 기간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7월 3일 이후에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훈련의 세부시행요령)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훈련 대상자의 선발절차와 지도·감독 및 훈련비의 지급 등 국외훈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예를 따른다.

[별표 1]

어 학 요 건
(제10조제2항 관련)

훈 련 종 류		어 학 성 적
장기 훈련 (6월 이상)	영어권	iBT 83점, 서울대학교 어학검정 65점, 영국문화원 IELTS 6.0점, TOEIC 775점, TEPS 700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 어학검정 65점 이상
단기 훈련 (6월 미만)	영어권	iBT 71점, 서울대학교 어학검정 55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 어학검정 55점 이상

※ 상기 장기훈련 어학조건은 2013년 선발자 부터 적용하며, 2012년까지의 선발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적용연도	훈 련 종 류	어 학 성 적
2012	영어권	iBT 77점, 서울대학교 어학검정 62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TOEIC 765점, TEPS 650점이상
	비영권	서울대학교 어학검정 62점 이상
2011	영어권	iBT 71점, 서울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TOEIC 750점, TEPS 600점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별표 2]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
(제16조제4항 관련)

구 분	준비 및 정리기간
3월 미만	9일 이하
3월 이상 6월 미만	12일 이하
6월 이상 1년 미만	17일 이하
1년 이상	30일 이하

[별표 3]

결원보충 신청 서류
(제17조제1항 관련)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국외훈련추천서 ○지방자치단체의 훈련기본계획(선발절차 등 내용 포함)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훈련계획서(세부연구계획서 포함) ○입교허가서류, 초청장 등(학사일정 포함) ※ 자매결연도시 직무파견의 경우 불필요 ○3급이상의 경우 교육이수 후 초과현원 해소대책 ○어학증명서 및 서약서(자체징구)
박사과정훈련	○지도교수 의견서 ○첨단과학기술분야 확인서,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장학금수혜(예정)증명서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연구소 등훈련	○훈련기관 안내자료, 훈련비 증명서
기타 훈련	○훈련기관 안내자료, 훈련비 증명서

[별표 4]

국외훈련비 지급 기준

(제28조 관련)

1. 항 공 료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와 같음
2. 체 재 비
 - 가. 5급 이하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과 같음
 - 나. 4급
 - 일반훈련(대학원 학위과정 등)

구 분	지 급 기 준
가 산 비 율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10% 가산

- 직무훈련

구 분		지 급 기 준
체 재 비 가산비율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훈련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70% 가산
	독립전문연구기관, 유명대학 부설연구소, 소속단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법무법인 등에서 훈련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50% 가산지급
직무훈련 보조비		월 300 미합중국 달러

다. 3급 이상

구 분	지 급 기 준
체재비가산비율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75% 가산
직무훈련보조비	월 500 미합중국달러

3.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 예산의 범위안에서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에 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4. 생활준비금 : 500미합중국달러

5. 귀국이전비 : 아시아지역 300미합중국달러, 그 밖의 지역 600미합중국달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핵심 인재(人材)를 양성하고 글로벌 도시 서울을 견인할 국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 국외훈련업무 운영지침」을 훈령으로 격상하여, 훈련 공무원의 선발·파견·관리와 강화된 선발 조건 및 훈련성과 제고 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외훈련 제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위원장의 임무 및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요건, 선발방법, 훈련기간, 결원보충 승인, 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 일시귀국, 훈련계획의 변경, 훈련성과 보고 및 시정활용, 훈련성과 평가 등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 훈련공무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구, 훈련공무원의 훈련성실의 원칙, 품위유지의 의무, 연락체계의 유지 등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훈련공무원이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 위반시 복귀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
- 훈련비(학자금,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 지급시기 및 방법, 정산,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 훈련공무원의 의무복무 및 의무복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복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훈련이수자의 보직관리 등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 박사파견 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77호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의무공급 민간 부문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시기 및 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정하여 임대주택의 매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사업 등의 매입시에 매매계약은 건축공정 20퍼센트 이상인 때에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지급하며, 매매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표준건축비로 함.

나. 민간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단계별(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본부 주택공급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92-11 재능교육빌딩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과(전화 : 6361-3853, FAX : 3707-9789, E-mail : ohot@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4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호(2010.2.11)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9호(2010.9.30)로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수립 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I.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가. 현재 마곡구역은 발산 택지개발 시행, 방화 뉴타운 개발계획의 수립, 지하철 9호선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 등 개별적인 대규모 개발계획이 수립·추진되어 통합관리의 필요성
- 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서남권의 관문도시로서 새로운 지구중심 창출
- 다.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
- 라. 마곡구역을 세계적 수준의 쾌적한 수변도시 조성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가. 사업시행 기간 변경
 - (1) 기정 : 2007년~2012년
 - (2) 변경 : 2007년 12월 28일~2014년 12월 31일
-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3. 사업시행지구 분할

- 가. 지구분할 사유
 - (1) 원활한 사업시행과 국부적 변경 등의 신속한 대처가 용이하도록 주거·업무·산업단지 등의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지구를 분할
- 나. 지구분할 내용
 - (1) 면적,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가) 면 적

구 분	기 정	1지구	2지구	3지구
사업분할면적	3,665,336㎡	1,066,222㎡	1,763,219㎡	835,895㎡

(나) 시행기간 : 2007년 12월 28일~2014년 12월 31일

(다)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4.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 첨(※ 이하 내용의 변경사항 없음)

※ 기타사항 : 변경없음

II. 마곡 도시개발구역 1지구, 2지구 개발계획변경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1지구	2지구	
마곡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향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1,066,222	1,763,21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변경없음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 기간 : 2007년 12월 28일~2014년 12월 31일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1지구		2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66,222	1,066,222	1,763,219	1,763,219
주거용지	소 계	612,634	612,620	-	-
	단독주택용지	15,833	15,833	-	-
	공동주택용지	596,801	596,787	-	-
상업용지	상업용지	11,979	11,916	69,159	72,109

구 분		1지구		2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업무용지	업무용지	-	-	269,315	270,560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	-	736,944	770,922
기 단 기 시 설 용 지	소 계	410,807	410,884	659,145	620,972
	도 로	158,784	159,491	371,572	380,074
	보행자도로	2,469	407	5,226	-
	철도용지	-	-	5,719	7,507
	의료시설	-	-	43,330	43,277
	공공청사	50,983	49,786	1,061	1,061
	학교	60,875	60,733	11,284	11,281
	사회복지시설	1,000	1,000	-	-
	광장	-	-	13,239	13,239
	근린공원	44,121	42,179	16,914	16,914
	어린이공원	19,628	19,213	-	-
	경관녹지	-	-	1,068	928
	연결녹지	64,760	66,822	168,255	125,758
	주차장	5,870	5,870	19,242	19,242
	전기공급설비		2,645	-	-
	방수설비	1,954	2,369	-	-
	공공공지	-	-	1,351	807
	하수도 (오수펌프장)	363	369	884	884
기 타 시 설 용 지	소 계	30,802	30,802	28,656	28,656
	주유소	1,600	1,600	800	800
	가스충전소	-	-	2,000	2,000
	유보지	107	107	354	354
	종교시설	2,947	2,947	-	-
	편익시설	26,148	26,148	20,502	20,502
	택시차고지	-	-	5,000	5,000

나. 가구 및 획지계획

(1) 단독주택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R1	1,688	1,688	기정	R1	1,688	-
	기정	R2	2,552	2,552	기정	R2	2,552	
	기정	R3	2,371	2,371	기정	R3	2,371	
	기정	R4	1,141	1,141	기정	R4	1,141	
	기정	R5	645	645	기정	R5	645	
	기정	R6	1,661	1,661	기정	R6	1,661	
	기정	R7	1,655	1,655	기정	R7	1,655	
	기정	R8	1,781	1,781	기정	R8	1,781	
	기정	R9	1,542	1,542	기정	R9	1,542	
	기정	R10	797	797	기정	R10	797	
	계		15,833	15,833	기정	-	15,833	
2지구	-		-		-		-	

(2) 공동주택용지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A1	13,186	13,186	기정	A1	13,186	-
	기정	A2	23,457	23,457	기정	A2	23,457	
	변경	A3	20,488	20,474	기정	A3	20,488	
					변경	A3	20,474	
	기정	A4	24,975	24,975	기정	A4	24,975	
	기정	A5	27,803	27,803	기정	A5	27,803	
	기정	A6	75,115	75,115	기정	A6	75,115	
	기정	AC7	56,336	56,336	기정	AC7	56,336	
	기정	A8	28,690	28,690	기정	A8	28,690	
	기정	AC9	69,122	69,122	기정	AC9	69,122	
	기정	AC10	46,032	46,032	기정	AC10	46,032	
	변경	AC11	14,962	14,962	기정	AC11	14,962	
					변경	AC11	14,962	
	기정	AC12	15,311	15,311	기정	AC12	15,311	
	기정	A13	64,088	64,088	기정	A13	64,088	
	기정	A14	62,517	62,517	기정	A14	62,517	
	기정	A15	54,719	54,719	기정	A15	54,719	
	계		596,801	596,787	기정	-	596,801	
					변경	-	596,787	
2지구	-	-	-	-	-	-		

(3) 상업용지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변경	B1	6,172	6,109	기정	B1	6,172	
					변경	B1	6,109	
	기정	B2	5,807	5,807	기정	B2	5,807	
					변경	B2	5,807	
2지구	변경	B3	23,798	26,892	기정	B3-1	13,192	
					변경	B3-1	14,669	
					기정	B3-2	10,606	
					변경	B3-2	12,223	
	변경	B5	45,361	45,217	기정	B5-1	20,217	
					변경	B5-1	20,218	
					기정	B5-2	17,463	
					변경	B5-2	17,318	
	계		69,159	72,109	기정	B5-3	7,681	
					변경	B5-3	7,681	
					기정	-	69,159	
					변경	-	72,109	

(4) 업무용지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		-		-		-	-
2지구	기정	C1	49,618	49,618	기정	C1-1	25,009	
					기정	C1-2	11,584	
					기정	C1-3	13,025	
	변경	C2	97,602	97,602	기정	C2-1	15,168	
					기정	C2-2	17,129	
					기정	C2-3	15,225	
					기정	C2-4	17,072	
					기정	C2-5	16,200	
					기정	C2-6	16,808	
					변경	C2-6	16,808	
	기정	C4	24,807	24,807	기정	C4-1	14,559	
					기정	C4-2	10,248	
	기정	C5	14,847	14,847	기정	C5	14,847	
	기정	C6	7,584	7,584	기정	C6	7,584	
	변경	C7	32,030	34,073	기정	C7-1	19,345	
					변경	C7-1	20,174	
					기정	C7-2	12,685	
					변경	C7-2	13,899	
	변경	C8	42,827	42,029	기정	C8-1	21,484	
					변경	C8-1	21,239	
					기정	C8-2	21,343	
					변경	C8-2	20,790	
	계		269,315	270,560	기정	-	269,315	
					변경	-	270,560	

(5) 산업시설용지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		-		-		-	
2지구	변경	D1	45,599	49,380	기정	D1	45,599	
					변경	D1-1	17,458	
					변경	D1-2	20,662	
					변경	D1-3	11,260	
	변경	D2	32,321	36,268	기정	D2-1	18,845	
					변경	D2-1	22,781	
					기정	D2-2	13,476	
					변경	D2-2	8,430	
					변경	D2-3	5,057	
	변경	D3	24,446	29,441	기정	D3-1	12,147	
					변경	D3-1	16,319	
					기정	D3-2	12,299	
					변경	D3-2	5,876	
					변경	D3-3	7,246	
	변경	D4	26,554	30,105	기정	D4-1	13,560	
					변경	D4-1	17,115	
					기정	D4-2	12,994	
					변경	D4-2	6,708	
					변경	D4-3	6,282	
	변경	D5	17,433	22,472	기정	D5	17,433	
					변경	D5-1	10,743	
					변경	D5-2	5,898	
					변경	D5-3	5,831	
	변경	D6	16,270	13,411	기정	D6	16,270	
					변경	D6-1	2,151	
					변경	D6-2	2,152	
					변경	D6-3	2,152	
					변경	D6-4	2,348	
					변경	D6-5	2,348	
					변경	D6-6	2,260	
	변경	D7	14,794	29,431	기정	D7	14,794	
					변경	D7-1	4,433	
					변경	D7-2	4,436	
					변경	D7-3	5,924	
					변경	D7-4	3,897	
					변경	D7-5	3,768	
					변경	D7-6	6,973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2지구	변경	D8	17,368	11,223	기정	D8	17,368	-
					변경	D8-1	1,789	
					변경	D8-2	1,790	
					변경	D8-3	1,790	
					변경	D8-4	1,953	
					변경	D8-5	1,953	
					변경	D8-6	1,948	
	변경	D9	16,146	20,030	기정	D9	16,146	
					변경	D9-1	1,594	
					변경	D9-2	1,603	
					변경	D9-3	1,602	
					변경	D9-4	1,744	
					변경	D9-5	1,744	
					변경	D9-6	1,744	
					변경	D9-7	2,383	
					변경	D9-8	2,399	
					변경	D9-9	2,625	
					변경	D9-10	2,592	
	폐지	D10	13,275	-	폐지	D10	13,275	
	기정	D11	28,592	28,592	기정	D11-1	13,835	
					기정	D11-2	14,757	
	변경	D12	11,966	13,191	기정	D12	11,966	
					변경	D12	13,191	
	변경	D13	12,764	12,788	기정	D13	12,764	
					변경	D13	12,788	
	변경	D14	17,430	11,881	기정	D14	17,430	
					변경	D14	11,881	
	변경	D15	16,439	7,127	기정	D15	16,439	
					변경	D15-1	2,407	
					변경	D15-2	2,360	
					변경	D15-3	2,360	
	변경	D16	9,614	10,617	기정	D16	9,614	
					변경	D16-1	7,308	
					변경	D16-2	3,309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2지구	변경	D17	26,449	28,907	기정	D17-1	12,917	-
					변경	D17-1	14,154	
					기정	D17-2	13,532	
					변경	D17-2	14,753	
	변경	D18	11,058	13,295	기정	D18	11,058	
					변경	D18	13,295	
	변경	D19	11,816	12,959	기정	D19	11,816	
					변경	D19	12,959	
	변경	D20	17,709	11,975	기정	D20	17,709	
					변경	D20	11,975	
	변경	D21	10,439	7,131	기정	D21	10,439	
					변경	D21	7,131	
	변경	D22	9,269	10,235	기정	D22	9,269	
					변경	D22-1	5,676	
					변경	D22-2	4,559	
	기정	D23	49,960	49,960	기정	D23-1	24,111	
					기정	D23-2	25,849	
	변경	D24	21,163	23,261	기정	D24-1	10,703	
					변경	D24-1	11,502	
					기정	D24-2	10,460	
					변경	D24-2	11,759	
	기정	D25	22,038	22,038	기정	D25	22,038	
	기정	D26	32,960	32,960	기정	D26	32,960	
	기정	D27	34,665	34,665	기정	D27-1	17,802	
					기정	D27-2	16,863	
	기정	D28	34,277	34,277	기정	D28-1	16,212	
					기정	D28-2	18,065	
	변경	D29	14,752	16,218	기정	D29	14,752	
					변경	D29	16,218	
	기정	D30	16,093	16,093	기정	D30	16,093	
	기정	D31	24,495	24,495	기정	D31	24,495	
	변경	D32	19,353	21,266	기정	D32-1	12,100	
					변경	D32-1	6,951	
					변경	D32-2	6,350	
					기정	D32-2	7,253	
					변경	D32-3	7,965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2지구	변경	D33	21,308	21,308	기정	D33-1	13,721	-
					변경	D33-1	7,171	
					변경	D33-2	6,561	
					기정	D33-2	7,587	
					변경	D33-3	7,576	
	변경	D34	38,129	38,129	기정	D34-1	20,299	
					변경	D34-1	5,310	
					변경	D34-2	4,843	
					변경	D34-3	4,443	
					변경	D34-4	4,521	
					기정	D34-2	17,830	
					변경	D34-5	5,310	
					변경	D34-6	4,843	
					변경	D34-7	4,444	
					변경	D34-8	4,415	
	신설	D35	-	5,829	신설	D35-1	1,902	
					신설	D35-2	1,963	
					신설	D35-3	1,964	
	신설	D36	-	10,581	신설	D36-1	1,788	
					신설	D36-2	1,755	
					신설	D36-3	1,755	
					신설	D36-4	3,002	
					신설	D36-5	2,281	
	신설	D37	-	5,931	신설	D37-1	2,310	
					신설	D37-2	1,815	
					신설	D37-3	1,806	
	신설	D38	-	3,452	신설	D38-1	1,726	
					신설	D38-2	1,726	
	계		736,944	770,922	기정	-	736,944	
					변경	-	770,922	

(6) 종합의료시설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		-		-		-	
2지구	변경	E1	43,330	43,277	기정	E1	43,330	
					변경	E1	43,277	
	계		43,330	43,277	기정	-	43,330	
					변경	-	43,277	

(7) 공공청사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F1	1,061	1,061	기정	F1	1,061	소방파출소
	기정	F2	759	759	기정	F2	759	파출소
	기정	F3	764	764	기정	F3	764	동사무소
	기정	F4	1,061	1,061	기정	F4	1,061	우체국
	변경	F5	4,828	4,828	기정	F5	4,828	강서세무서
					변경	F5	4,828	
	기정	F6	16,901	16,901	기정	F6	16,901	출입국관리소
	변경	F7	22,314	21,861	기정	F7	22,314	강서구청
					변경	F7	21,861	
	폐지	F8	744	-	폐지	F8	744	소방파출소
	변경	F9	744	744	기정	F9	744	파출소
					변경	F9	744	
	변경	F10	744	744	기정	F10	744	동사무소
					변경	F10	744	
2지구	변경	F11	1,063	1,063	기정	F11	1,063	우체국
					변경	F11	1,063	
	계		50,983	49,786	기정	-	50,983	
					변경	-	49,786	
	기정	F12	1,061	1,061	기정	F12	1,061	
	계		1,061	1,061	기정	-	1,061	

(8) 학교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G1	10,921	10,921	기정	G1	10,921	고등학교
	변경	G2	15,832	15,778	기정	G2	15,832	초등학교
					변경	G2	15,778	
	변경	G3	10,481	10,485	기정	G3	10,481	중학교
					변경	G3	10,485	
	기정	G4	11,554	11,554	기정	G4	11,554	초등학교
	변경	G6	12,087	11,995	기정	G6	12,087	초등학교
					변경	G6	11,995	
2지구	계		60,875	60,733	기정	-	60,875	
					변경	-	60,733	
	변경	G7	11,284	11,281	기정	G7	11,284	초등학교
					변경	G7	11,281	
	계		11,284	11,281	기정	-	11,284	
					변경	-	11,281	

(9) 사회복지시설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H1	1,000	1,000	기정	H1	1,000	
	계		1,000	1,000	기정	-	1,000	
2지구	-		-	-	-		-	

(10) 주차장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I1	2,835	2,835	기정	I1	2,835	
	기정	I2	3,035	3,035	기정	I2	3,035	
	계		5,870	5,870	기정	-	5,870	
2지구	변경	I3	7,015	7,015	기정	I3	7,015	5
					변경	I3	7,015	
	기정	I5	7,178	7,178	기정	I5	7,178	
	변경	I6	5,049	5,049	기정	I6	5,049	
					변경	I6	5,049	
	계		19,242	19,242	기정	-	19,242	
					변경	-	19,242	

(11) 전기공급설비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신설	K2	-	2,645	신설	K2	2,645	
	계		-	2,645	기정	-	-	
					변경	-	2,645	
2지구	-		-		-		-	

(12) 방수설비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변경	M1	1,954	2,369	기정	M1	1,954	
					변경	M1	2,369	
	계		1,954	2,369	기정	-	1,954	
					변경	-	2,369	

(13) 종교시설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N1	667	667	기정	N1	667	
	기정	N2	650	650	기정	N2	650	
	기정	N3	979	979	기정	N3	979	
	기정	N4	651	651	기정	N4	651	
	계		2,947	2,947	기정	-	2,947	
2지구	-		-		-		-	

(14) 방재시설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변경	U1	363	369	기정	U1	363	오수중계펌프장
					변경	U1	369	
	계	363	369	기정	-	363		
				변경	-	369		
2지구	기정	U2	359	359	기정	U2	359	
	기정	U3	525	525	기정	U3	525	
	계		884	884	기정	-	884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변경	P1	800	800	기정	P1	800	주유소
					변경	P1	800	
	기정	P2	800	800	기정	P2	800	
	계		800	800	기정	-	800	
					변경	-	800	
2지구	기정	P4	800	800	기정	P4	800	
	계		800	800	기정	-	800	
					변경	-	800	
1지구	-		-	-	-	-	-	가스충전소
2지구	변경	Q2	2,000	2,000	기정	Q2	2,000	
					변경	Q2	2,000	
	계		2,000	2,000	기정	-	2,000	
					변경	-	2,000	

(16) 편익시설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S1	2,793	2,793	기정	S1	2,793	
	기정	S2	4,684	4,684	기정	S2	4,684	
	기정	S3	6,470	6,470	기정	S3	6,470	
	기정	S4	12,201	12,201	기정	S4	12,201	
	계		26,148	26,148	기정	-	26,148	
2지구	기정	S5	20,502	20,502	기정	S5	20,502	
	계		20,502	20,502	기정	-	20,502	

(17) 택시차고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		-		-		-	
2지구	기정	T1	5,000	5,000	기정	T1	5,000	-
	계		5,000	5,000	기정	-	5,000	

다. 기반시설 배치계획

(1) 교통시설

(가) 도 로

① 도로 총괄표

구 분		류 별	폭원(m)	1지구			2지구			비 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	31	6,905	159,898	43	14,768	380,074	
일 반 도 로	소 계		-	1	618	32,357	3	2,659	125,398	
	광로	3 류	40~45	1	618	32,357	3	2,659	125,398	
	소 계		-	1	703	23,582	6	3,024	100,154	
	대로	2 류	30~31	1	703	23,582	5	2,605	89,263	
		3 류	25	-	-	-	1	419	10,891	
	소 계		-	16	4,468	94,827	27	8,109	147,134	
	중로	1 류	20	6	2,543	58,029	9	3,197	62,083	
		2 류	15~18	8	1,843	35,756	11	3,652	67,495	
		3 류	12	2	82	1,042	7	1,260	17,556	
	소 계		-	12	1,036	8,725	7	976	7,388	
	소로	1 류	10	2	141	1,416	3	429	4,517	
		2 류	8	9	865	7,180	1	414	2,044	
		3 류	4~6.5	1	30	129	3	133	827	
보행자 전용도로	소계		-	-	-	-	-	-		
	중로	1류	18	-	-	-	-	-		
	소계		-	1	80	407	-	-		
	소로	1류	10	-	-	-	-	-		
		3류	5	1	80	407	-	-		

② 도로계획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연장(m)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지구	2지구	
기정 변경	광	3	1	40	주간선 도로	광3-16 가양동 663답	양천길 마곡동 229-4답	일반 도로	-	1,427	
기정 변경	광	3	16	45	주간선 도로	제2한강교남단 (공향동6-12도)	김포공항 (가양동 972도)	일반 도로	8,890 (618)	8,890 (1,232)	서고제603호 '78.11.15 ()사업구역내
기정 변경	광	3	19	40	주간선 도로	삼전동	방화동	일반 도로	35,306	-	사업구역외
기정 변경	대	2	1	31	보조간선 도로	광3-16 가양동 876-1공	양천길 가양동 272-30도	일반 도로	-	1,329	
기정 변경	대	2	2	31	보조간선 도로	광3-1 마곡동 278-6답	방화로 방화동 217-222답	일반 도로	703	258	
기정	대	2	3	31	보조간선 도로	광3-1 가양동 598답	대2-1 가양동 401-2답	일반 도로	-	538	
기정	대	2	4	31	보조간선 도로	간서로 가양동 1086답	대2-1 가양동 392답	일반 도로	-	480	
기정 변경	대	2	38	30	보조간선 도로	내발산동 644-2 (가양동 709도)	고척동 76-148 (가양동 1130답)	일반 도로	-	7,250	'71. 4. 7
기정 변경	대	2	41	30	보조간선 도로	양화고-광16 (마곡동 55-5제)	개화동시계 (마곡동 272-22도)	일반 도로	-	-	서고제333호 '84.6.5
기정	대	3	1	25	보조간선 도로	광3-16 내발산동 198-5공	내발산동 181답	일반 도로	-	419	
기정	중	1	1	20	집분산 도로	양천길 마곡동 224-7전	대2-2 마곡동 363-7답	일반 도로	-	643	
기정	중	1	7	20	집분산 도로	광3-16 공향동 968-2공	대2-2 방화동 224-2답	일반 도로	565	-	
기정 변경	중	1	8	20	집분산 도로	광3-16 가양동 533-5답 광3-16 가양동 533-8답	대2-2 마곡동 363-5답 대2-2 마곡동 363-5답	일반 도로	- 743	739	
기정	중	1	11	20	집분산 도로	방화로 공향동 2-105답	중1-7 공향동 4-178잡	일반 도로	353	-	
기정	중	1	12	20	집분산 도로	중1-7 공향동940-14대	중1-8 가양동 470-3대	일반 도로	266	-	
기정	중	1	13	20	집분산 도로	광3-1 가양동 573답	중1-8 가양동 475답	일반 도로	-	241	
기정	중	1	14	20	집분산 도로	광3-1 가양동 576답	중2-13 가양동 745답	일반 도로	-	244	
기정	중	1	15	20	집분산 도로	대2-1 가양동 414-1답	중2-13 가양동 743답	일반 도로	-	272	
기정	중	1	16	20	집분산 도로	대2-38 가양동 1126대	대2-1 가양동 386-1답	일반 도로	-	444	
기정 변경	중	1	17	20	집분산 도로	방화로 공향동 833-32구 방화로 공향동 833-3구	광3-16 공향동1036-1공 광3-16 공향동1036-1공	일반 도로	661	-	
기정 변경	중	1	18	20	집분산 도로	광3-16 공향동1313-2공	소1-6 공향동 1252답	일반 도로	472	173	
기정	중	1	27	20 (3)	집분산 도로	발산택지개발지구 내발산동384-1답	중2-15 내발산동 358답	일반 도로	226	-	()사업 구역내
기정	중	1	28	20 (3)	집분산 도로	중2-15 내발산동 358답	대3-1 내발산동 181답	일반 도로	-	271	()사업 구역내
기정	중	1	29	20	집분산 도로	대3-1 내발산동 181답	중2-16 공향동 163답	일반 도로	-	166	
기정	중	2	2	18	집분산 도로	대2-2 방화동 225답	방화동 183-3전	일반 도로	427	-	
기정 변경	중	2	3	18	집분산 도로	중2-2 방화동 235-3답	방화동 208-27전	일반 도로	240	-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연장(m)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지구	2지구	
기정	중	2	4	18	집분산 도로	중1-1 마곡동 365-8답	마곡동 353답	일반 도로	97	-	
기정	중	2	5	18	집분산 도로	방화로 방화동 산75-9임	중1-7 방화동 217-14답	일반 도로	194	-	
기정	중	2	7	18	집분산 도로	방화로 방화동 240-4도	중2-2 방화동 238답	일반 도로	205	-	
기정	중	2	8	15	집분산 도로	중1-2 방화동 224-7전	방화뉴타운 방화동 217-205대	일반 도로	95	-	
폐지	중	2	9	18	집분산 도로	대2-38 가양동 162-1답	중2-10 가양동 172-18전	일반 도로	-	171	
기정	중	2	10	18	집분산 도로	양천길 가양동 282-2도	대2-4 가양동 371-1답	일반 도로	-	653	
기정	중	2	11	18	집분산 도로	대2-1 가양동 349-1전	중2-10 가양동 359-1답	일반 도로	-	344	
기정	중	2	12	18	집분산 도로	대 2-38 가양동 1069대	중2-10 가양동 359-2잡	일반 도로	-	151	
기정	중	2	13	18	집분산 도로	광3-16 가양동 839공	대2-3 가양동 408-3구	일반 도로	-	493	
기정	중	2	14	18	집분산 도로	대2-4 가양동 367-1대	중1-16 가양동 961답	일반 도로	-	260	
기정	중	2	15	18	집분산 도로	광3-16 내발산동 228-6공	내발산동 358답	일반 도로	-	426	
기정	중	2	16	18	집분산 도로	광3-16 내발산동 91-5공	내발산동 162답	일반 도로	-	412	
기정	중	2	17	18	집분산 도로	방화로 공향동 36-23잡	중1-17 공향동 1133답	일반 도로	314	-	
기정 변경	중	2	18	18	집분산 도로	중1-17 공향동 1136답	중1-18 공향동 1325답	일반 도로	271	-	
기정	중	2	19	18	집분산 도로	중1-18 내발산동 1327답	발산택지개발지구 외발산동 338답	일반 도로	-	243	
기정	중	2	20	18	집분산 도로	발산택지개발지구 내발산동 335답	중2-15 내발산동 340답	일반 도로	-	233	
기정	중	2	21	18	집분산 도로	대3-1 내발산동 194-3답	중2-15 내발산동 326답	일반 도로	-	272	
기정	중	2	22	18	집분산 도로	대3-1 내발산동 193-1답	중2-16 내발산동 158-2답	일반 도로	-	166	
기정	중	3	1	12	집분산 도로	중1-11 공향동 2-12답	방화뉴타운 공향동 4-48대	일반 도로	30	-	
기정	중	3	2	12	집분산 도로	중2-16 내발산동 162답	소2-2 내발산동 153-15답	일반 도로	-	116	
기정	중	3	3	12	국지 도로	대2-2 방화동 209-2전	방화동 208-22대	일반 도로	52	-	
기정 변경	중	3	4	12	집분산 도로	중2-16 내발산동 160-4답	소2-2 내발산동 155-2답	일반 도로	-	130	
기정	중	3	5	12	집분산 도로	대3-1 내발산동 181답	내발산동 222-1전	일반 도로	-	67	
신설	중	3	6	12	집분산 도로	대2-4 가양동 367-1대	중2-11 가양동 355-3답	일반 도로	-	227	
신설	중	3	7	12	집분산 도로	대2-4 가양동 367-1대	중2-11 가양동 321-1전	일반 도로	-	225	
신설	중	3	8	12	집분산 도로	대2-4 가양동 367-1대	중1-16 가양동 382-1답	일반 도로	-	259	
신설	중	3	9	12	집분산 도로	대2-4 가양동 367-1대	중1-16 가양동 950답	일반 도로	-	259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연장(m)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지구	2지구	
기정	소	1	1	10	국지 도로	양천길 마곡동 222-30도	마곡동 222-20도	일반 도로	-	27	
기정	소	1	2	10	국지 도로	중1-1 마곡동 317전	소1-1 마곡동 222-37도	일반 도로	-	345	
기정	소	1	4	10	국지 도로	가양동 1454-1도	소3-2 가양동 1454도	일반 도로	-	57	
기정	소	1	5	10	국지 도로	중2-7 240-10답	- 241-4답	일반 도로	4	-	
기정	소	1	6	10	국지 도로	중1-18 공항동 1252답	중1-17 공항동 1207-3답	일반 도로	137	-	
기정	소	2	2	8 (5)	국지 도로	광3-16 내발산동 81-10공	내발산동 153-15답	일반 도로	-	414	()사업 구역내
기정	소	2	12	8	국지 도로	소2-12 방화동 239-2대	소2-18 방화동 240-7전	일반 도로	97	-	
기정	소	2	13	8	국지 도로	방화동 240-1답	소2-18 방화동 242-3도	일반 도로	84	-	
기정	소	2	14	8	국지 도로	소2-18 방화동 243-3답	소2-15 방화동 242-9구	일반 도로	66	-	
기정	소	2	15	8	국지 도로	소2-16 방화동 233-1답	소2-13 방화동 239-2대	일반 도로	61	-	
기정	소	2	16	8	국지 도로	중2-2 방화동 233-1답	소2-18 방화동 253-2답	일반 도로	81	-	
기정	소	2	17	8	국지 도로	소2-16 방화동 233-1답	소2-18 방화동 254-2답	일반 도로	69	-	
기정	소	2	18	8	국지 도로	소1-5 방화동 239-5전	소2-19 방화동 254-2답	일반 도로	158	-	
기정	소	2	19	8	국지 도로	중2-2 방화동 183-2전	방화동 257-7답	일반 도로	123	-	
기정	소	2	20	8	국지 도로	소2-19 방화동 255-2답	소2-19 방화동 255-2답	일반 도로	126	-	
기정	소	3	1	4	국지 도로	소1-2 마곡동 327-3유	마곡동 327-24전	일반 도로	-	9	
기정	소	3	2	6.5	국지 도로	광3-16 가양동 1454-10도	소1-4 가양동 1454도	일반 도로	-	94	
기정	소	3	3	4	국지 도로	대로2-2 361-6답	360-1대	일반 도로	130	-	
신설	소	3	4	4	국지 도로	소로1-1 가양동 222-12도	가양동 221-7도	일반 도로	-	32	
폐지	중	1	1	18	특수 도로	대2-1 가양동 306-2답	중2-10 가양동 172-29전	보행자 도로	-	288	
폐지	소	1	1	10	특수 도로	중1-11 공항동 4-38대	방화동 461전	보행자 도로	224	-	
기정	소	3	1	5	특수 도로	대2-2 방화동 217-272답	중2-5 방화동 217-182전	보행자 도로	80	-	

(나) 주차장

구분			위치	면적 (㎡)		비고
				1지구	2지구	
주차장	총계	기정	-	5,870	19,242	
		변경	-	5,870	19,242	
	1	기정	마곡동 354일원	2,835	-	
	2	기정	방화동 217-196일원	3,035	-	
	3	기정	가양동 955일원	-	7,015	
		변경	가양동 958일원			
	5	기정	마곡동 383-2일원	-	7,178	
	6	기정	가양동 287-3일원	-	5,049	
		변경				

(다) 철도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구분	위 치			1지구		2지구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면적	연장	면적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서울시 중구 의주로2가159 (강서구 마곡동42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143-1 (강서구 과해동143-1)	강서구·마곡동· 가양동·공항동· 방화동·과해동	23,417 (765)	350,000.61 (10,815)	23,417 (396)	350,000.61 (7,359)	()는 마곡지구 내 구간임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강서구과해동 83-1호	강남구 역삼동 800-1호	김포공항,당산역 여의도역,노량진역,동 작역,고속버스터미널역	26,185 (565)	325,289 (8,612)	26,185 (586)	325,289 (6,984)	
기정	2	철도	904정거장 (신방화역)	강서구 방화동 217번지일대			-	9,145 (5,628)	-	-	
기정	2	철도	905정거장 (마곡나루역)	강서구 마곡동367번지			-	-	-	18,767 (9,182)	
기정	2	철도	906정거장 (양천향교역)	강서구 가양동158번지 일대			-	-	-	8,476 (6)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일대		47,400 (862)	- (7,176)	47,400 (1,029)	- (16,954)	
기정 변경	3	철도	마곡정거장 (마곡역)	강서구 가양동 531일대			- -	- -	- -	5,234 7,329	
기정	3	철도	발산정거장 (발산역)	강서구 가양동 968일대			-	-	-	5,531 (3,134)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공항동 1293일대			-	124	-	-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가양동 527일대			-	-	-	209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가양동 783일대			-	-	-	2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가양동 965일대			-	-	-	209	

(2) 공간시설

(가) 광 장

구분			위치	면적 (㎡)		비고
				1지구	2지구	
광장	총계	기정	-	-	13,239	
		변경	-		13,239	
	1	기정 변경	마곡동 367-16일원	-	601	
	2	기정	마곡동 368-3일원	-	12,638	

(나) 공 원

구분		위치	면적 (㎡)		비고	
			1지구	2지구		
총계	기정	-	63,749	16,914		
	변경	-	61,392	16,914		
근린 공원	계	기정	44,121	16,914		
		변경	42,179	16,914		
	2	방화동 210-1일원	기정	18,620	-	
			변경	18,579	-	
	3	공항동 1220일원	기정	25,501	-	
			변경	23,600	-	
	4	기정	내발산동 358-1일원	-	16,914	
	어린이 공원	계	기정	19,628	-	
변경			19,213	-		
1		기정	방화동 241-6일원	1,722	-	
2		기정	방화동 211-3일원	1,927	-	
3		기정	마곡동 316-1일원	1,510	-	
4		기정	공항동 484일원	2,014	-	
5		기정	공항동 4일원	507	-	
6		기정	마곡동 397-1일원	2,864	-	
7		기정	공항동 6-18일원	2,658	-	
8		공항동 705일원	기정	2,360	-	
			변경	1,945	-	
9		기정	외발산동 69-1일원	2,000	-	
10	기정	내발산동 384-2일원	2,066	-		

(다) 공공공지

구분			위치	면적 (㎡)		비고
				1지구	2지구	
공공 공지	총계	기정	-	-	1,351	
		변경	-	-	807	
	1	기정	가양동 494일원	-	1,351	
		변경		-	807	

(라) 녹 지

구분		위치	면적 (㎡)		비고	
			1지구	2지구		
총계		기정	-	64,760	169,323	
		변경	-	66,822	126,686	
연결 녹지	계	기정	-	64,760	168,255	
		변경	-	66,822	125,758	
	1	기정	마곡동 323-5일원	-	7,811	
	2	기정	마곡동 292-4일원	-	4,751	
	3	기정	가양동 311-2일원	-	17,193	
		변경	-	9,768		
	4	기정	가양동 165-1일원	-	6,949	
		변경	-	3,440		
	5	기정	가양동 366-2일원	-	9,969	
		변경	-	4,542		
	6	폐지	가양동 1076일원	-	1,362	
	7	기정	마곡동 382-2일원	22,400	-	
	8	기정	마곡동 374-1일원	-	28,937	
		변경	-	26,894		
	9	기정	가양동 723일원	-	7,388	
		변경	-	4,930		
	10	기정	가양동 413일원	-	22,075	
		변경	-	17,447		
	11	기정	가양동 380-1일원	-	19,428	
		변경	-	7,379		
	12	기정	가양동 1043일원	-	3,938	
		변경	-	1,969		
	13	기정	공항동 976-1일원	12,768	-	
	14	기정	가양동 784일원	-	12,471	
		변경	-	10,373		
	15	기정	가양동 948-2일원	-	4,141	
	16	기정	공항동 1057일원	8,904	-	
	17	기정	내발산동 216-1일원	-	8,786	
		변경	-	7,320		
	18	기정	공항동 1147-1일원	6,902	-	
	19	기정	내발산동 218-10일원	-	11,411	
		변경	-	9,498		
	20	기정	외발산동 72일원	9,064	-	
	21	기정	내발산동 354-1일원	4,722	-	
	22	기정	내발산동 175일원	-	1,645	
	23	신설	공항동 516일원	2,062	-	
	24	신설	가양동 389-3일원	-	2,080	
	25	신설	가양동 1108일원	-	1,770	
경관 녹지	계	기정	-	1,068		
		변경	-	928		
	2	기정	마곡동 222-15일원	-	509	
		변경	-	369		
	5	기정	내발산동 153-7일원	-	559	

(2) 유통·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비고
					1지구	2지구	
전기 공급 설비	총계	기정	-	-	-	-	
		변경	-	-	2,645	-	
	2	신설	변전소	공항동 1250일원	2,645	-	

(나) 공동구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1지구		2지구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km)	면적 (㎡)	연장 (km)	면적 (㎡)	
공동구	총계	기정	-	-	-	-	1.75	25,340	1.47	22,050	
		변경	-	-	-	-	1.40	21,000	1.47	22,050	
	1	폐지	-	방화동225-1일원	가양동365-11일원	대로2-2	0.35	4,340	-	-	
	2	변경	-	공항동1151일원	방화동225-1일원	대로2-2→ 중로1-7, 중로1-17	1.40	21,000	-	-	
	3	변경	-	가양동297-4일원	내발산동187일원	중로1-7, 중로1-17→ 대로2-1	-	-	1.47	22,050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비고
					1지구	2지구	
공공 청사	총계	기정	-	-	50,983	1,061	
		변경	-	-	49,786	1,061	
	1	기정	소방파출소	방화동 255-2일원	1,061	-	
	2	기정	파출소	마곡동 362-3일원	759	-	
	3	기정	동사무소	방화동 257-7일원	764	-	
	4	기정	우체국	마곡동 363-1일원	1,061	-	
	5	기정	-	공항동 944일원	4,828	-	
		변경	강서세무서				
	6	기정	출입국관리소	공항동 972-3일원	16,901	-	
	7	기정	강서구청	가양동 478일원	22,314	-	
		변경			21,861	-	
	8	폐지	소방파출소	공항동 301-2일원	744	-	
	9	기정	파출소	공항동 38-4일원	744	-	
		변경		공항동 1252-1일원			
	10	기정	동사무소	공항동 1250일원	744	-	
		변경		공항동 1249일원			
	11	기정	우체국	공항동 1222일원	1,063	-	
		변경					
	12	기정	-	내발산동 181일원	-	1,061	

(나) 학 교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비고
					1지구	2지구	
학교	총계	기정	-	-	60,875	11,284	
		변경	-	-	60,733	11,281	
	1	기정	고등학교	방화동 253-3일원	10,921	-	세민정보고 (82.5.14.)
	2	기정	초등학교	방화동 238-1일원	15,832	-	송화초 (88.6.4.)
		변경			15,778	-	
	3	기정	중학교	방화동 207-1일원	10,481	-	
		변경			10,485	-	
	4	기정	초등학교	공향동 399일원	11,554	-	
	6	기정	초등학교	공향동 1324일원	12,087	-	
		변경			11,995	-	
	7	기정	초등학교	내발산동 153-7일원		11,284	가곡초 (90.10.18.)
		변경				11,281	

(다) 사회복지시설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비고
					1지구	2지구	
사회 복지 시설	총계	기정	-	-	1,000	-	
	1	기정	보육원	공향동 1151-2일원	1,000	-	

(4) 방재시설

(가) 방수설비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비고
					1지구	2지구	
방수 설비	총계	기정	-	-	1,954	-	
		변경	-	-	2,369	-	
	1	기정	-	방화동 706-1일원	1,954	-	서고제93-186호 '93.6.18
		변경			2,369	-	

(5) 보건위생시설

(가) 종합의료시설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비고
					1지구	2지구	
종합 의료 시설	총계	기정	-	-	-	43,330	
		변경	-	-	-	43,277	
	1	기정	종합병원	내발산동 157일원	-	43,330	
		변경			-	43,277	

(6)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① 하수도

구분			위치		1지구		2지구		비고
			기점	종점	연장	면적	연장	면적	
하수도	총계	기정	-	-	2,938	43,988	1,675	21,236	
	1	기정	공항동 1147-1일원	마곡동 20-3일원	774	25,701	650	16,836	box 5.0*2.0 ~ box 6@5.0*2.0
	2	기정	방화동 217-156일원	마곡동 396-1일원	889	6,561	-	-	box 3@2.0*2.0
	3	기정	공항동 2-104일원	공항동 973-4일원	486	2,965	-	-	box 2@2.5*2.0
	4	기정	공항동 707-2일원	공항동 1148-1일원	481	5,542	-	-	box 2@5.0*3.0
	5	기정	공항동 303-4일원	공항동 1147-1일원	308	3,219	-	-	box 3@3.0*2.5
	6	기정	내발산동 422-2일원	가양동 400일원	-	-	1,025	4,400	box 2@2.0*1.5

② 오수중계펌프장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비고
					1지구	2지구	
하수도	계	기정	-	-	363	884	
		변경			369	884	
	7	기정	중계펌프장	방화동 210-11 일원	363	-	
		변경			369	-	
	8	기정	중계펌프장	가양동 590 일원	-	359	
	9	기정	중계펌프장	가양동 396-1 일원	-	525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8. 실시계획의 변경인가신청기간

: 구역변경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금회 변경내용에 한함)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곡개발과 (☎ 02) 6361-3522)
- 강서구청 마곡개발과 (☎ 02) 2600-5284)
- SH공사 마곡사업단 (☎ 02) 3410-7387)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게 됨

가.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1지구	2지구	
합 계		1,066,222	1,763,219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6,384	-	
	제3종일반주거지역	665,885	72,209	
	준주거지역	282,106	58,441	
일반상업지역		91,386	503,488	
준공업지역		-	1,110,62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61	18,461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1) 미관지구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1지구	광로 3-19호선	일반 미관지구	방화동319-16~공향동9-3 (방화동 238-1학 일원)	36,240 (12,564)	1,510 (995)	양측12 (편측12)	82.4.22	()는 구역내 사항임
2지구	-	-	-	-	-	-	-	
1지구	-	-	-	-	-	-	-	()는 구역내 사항임
2지구	양천길	역사문화 미관지구	가양동265~가양사거리 (가양동 178-2대 일원)	9,600 (4,720)	400	양측12 (편측12)	03.6.22	

(2) 고도지구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1지구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지구 최고고도	(최고) 고도지구	강서구, 양천구 일부지역 (마곡동 387-10답 일원)	①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1,066,222㎡	1,066,222 (3,665,336)	77.4.22	()는 구역내 사항임
2지구			강서구, 양천구 일부지역 (가양동 367-1대 일원)	①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1,763,219㎡	1,763,219 (3,665,336)	77.4.22	

11.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I -4 별첨)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3495	기정	마곡동	41	-	15	전	1,256	563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41	-	15	전	629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41	-	106	전	627	627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3497	기정	마곡동	41	-	47	전	986	507	미등기		
	변경	마곡동	41	-	47	전	481	-	미등기		
		마곡동	41	-	107	전	505	505	미등기		
3514	기정	마곡동	43	-	2	전	777	144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변경	마곡동	43	-	2	전	634	-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마곡동	43	-	9	전	143	143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3515	기정	마곡동	43	-	3	답	1,587	215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변경	마곡동	43	-	3	답	1,378	-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마곡동	43	-	10	답	209	209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3516	기정	마곡동	43	-	7	전	1,408	407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변경	마곡동	43	-	7	전	952	-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마곡동	43	-	11	전	456	456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3517	기정	마곡동	43	-	8	전	665	260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변경	마곡동	43	-	8	전	391	-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마곡동	43	-	12	전	274	274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3518	기정	마곡동	44			답	3,438	9	미등기		
	변경	마곡동	44			답	3,429	-	미등기		
		마곡동	44	-	1	답	9	9	미등기		
3521	기정	마곡동	45	-	3	답	1,898	1,887	미등기		
	변경	마곡동	45	-	3	답	3	-	미등기		
		마곡동	45	-	7	답	1,895	1,895	미등기		
3522	기정	마곡동	45	-	4	답	3,088	3,021	미등기		
	변경	마곡동	45	-	4	답	61	-	미등기		
		마곡동	45	-	8	답	3,027	3,027	미등기		
3526	기정	마곡동	47			답	3,458	3,439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47			답	36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47	-	1	답	3,422	3,422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3527	기정	마곡동	48	-	1	답	5,035	5,017	미등기		
	변경	마곡동	48	-	1	답	33	-	미등기		
		마곡동	48	-	3	답	5,002	5,002	미등기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3528	기정	마곡동	48	-	2	답	1,868	1,157	김재환	송파구 송파동117-9	
									구경희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1317동 1108호	
									한석현	광명시 철산동 493-7	
									조상일	영등포구 문래동 4가 32-39	
									윤진규	도봉구 수유동 179-8	
									구인자	용산구 한남동 509 리비탑아파트 101-1301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48	-	2	답	708	-	김재환	송파구 송파동117-9	
									구경희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1317동 1108호	
									한석현	광명시 철산동 493-7	
									조상일	영등포구 문래동 4가 32-39	
									윤진규	도봉구 수유동 179-8	
									구인자	용산구 한남동 509 리비탑아파트 101-1301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48	-	4	답	429	429	김재환	송파구 송파동117-9	
									구경희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1317동 1108호	
									한석현	광명시 철산동 493-7	
									조상일	영등포구 문래동 4가 32-39	
									윤진규	도봉구 수유동 179-8	
									구인자	용산구 한남동 509 리비탑아파트 101-1301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48	-	5	답	731	731	김재환	송파구 송파동117-9	
									구경희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1317동 1108호	
									한석현	광명시 철산동 493-7	
									조상일	영등포구 문래동 4가 32-39	
									윤진규	도봉구 수유동 179-8	
									구인자	용산구 한남동 509 리비탑아파트 101-1301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3529	기정	마곡동	49			답	992	267	미등기		
	변경	마곡동	49			답	727	-	미등기		
		마곡동	49	-	26	답	265	265	미등기		
3536	기정	마곡동	49	-	8	답	992	963	미등기		
	변경	마곡동	49	-	8	답	35	-	미등기		
		마곡동	49	-	27	답	957	957	미등기		
3575	기정	마곡동	55	-	5	제방	1,501	556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55	-	5	제방	941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55	-	15	제방	560	560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3579	기정	마곡동	55	-	12	제방	4,234	3,515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55	-	12	제방	694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55	-	16	제방	3,540	3,540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3596	기정	마곡동	66	-	1	답	848	290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66	-	1	답	555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66	-	6	답	293	293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3597	기정	마곡동	66	-	2	답	4,502	3,872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66	-	2	답	690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66	-	7	답	3,812	3,812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3601	기정	마곡동	67	-	1	답	3,512	43	미등기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67	-	1	답	3,467	-	미등기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67	-	6	답	45	45	미등기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3629	기정	마곡동	70	-	1	답	2,479	1,761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변경	마곡동	70	-	1	답	701	-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마곡동	70	-	3	답	1,778	1,778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3631	기정	마곡동	71	-	1	답	2,833	1,436	미등기		
	변경	마곡동	71	-	1	답	1,414	-	미등기		
		마곡동	71	-	12	답	1,419	1,419	미등기		
3632	기정	마곡동	71	-	2	답	1,438	1,238	미등기		
	변경	마곡동	71	-	2	답	192	-	미등기		
		마곡동	71	-	13	답	1,246	1,246	미등기		
3635	기정	마곡동	71	-	5	답	660	98	미등기		
	변경	마곡동	71	-	5	답	561	-	미등기		
		마곡동	71	-	14	답	99	99	미등기		
3636	기정	마곡동	71	-	6	답	660	4	미등기		
	변경	마곡동	71	-	6	답	655	-	미등기		
		마곡동	71	-	15	답	5	5	미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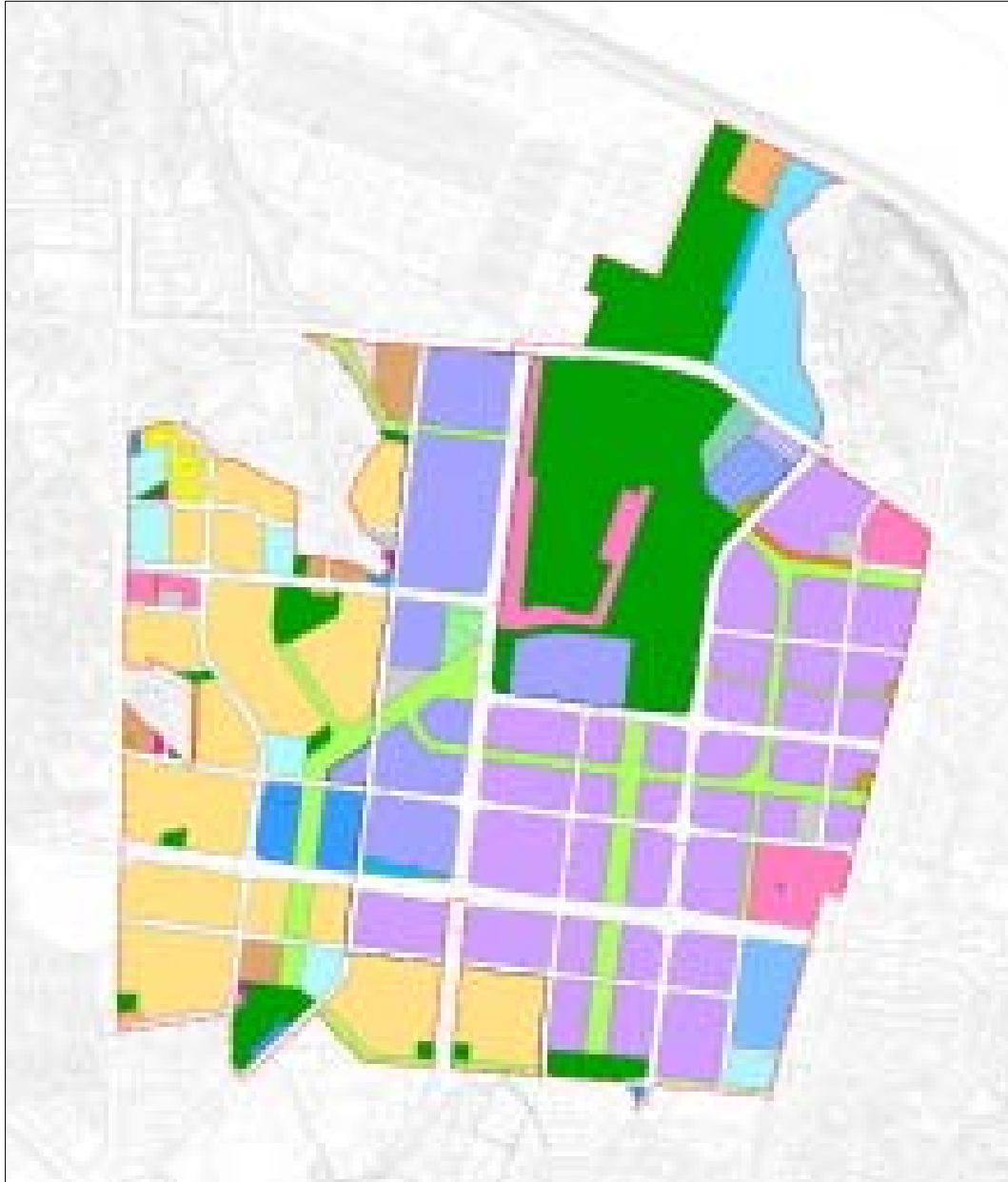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3637	기정	마곡동	71	-	10	답	3,748	3,483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변경	마곡동	71	-	10	답	315	-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마곡동	71	-	16	답	3,433	3,433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3640	기정	마곡동	73	-	10	답	2,364	1,357	미등기		
	변경	마곡동	73	-	10	답	972	-	미등기		
		마곡동	73	-	20	답	1,392	1,392	미등기		
3641	기정	마곡동	73	-	11	답	4,625	2,514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73	-	11	답	2,004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73	-	17	답	73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73	-	18	답	57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73	-	19	답	2,491	2,491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3642	기정	마곡동	73	-	12	답	529	2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73	-	12	답	527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73	-	21	답	2	2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3643	기정	마곡동	76			답	5,365	1,837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76			답	3,507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76	-	1	답	1,858	1,858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3644	기정	마곡동	77			답	4,195	569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77			답	3,619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77	-	1	답	576	576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3645	기정	마곡동	87	-	4	답	774	52	미등기		
	변경	마곡동	87	-	4	답	719	-	미등기		
		마곡동	87	-	11	답	55	55	미등기		
3646	기정	마곡동	168	-	6	도로	91	77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168	-	6	도로	15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168	-	7	도로	76	76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3649	기정	마곡동	228	-	8	제방	71	56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228	-	8	제방	2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228	-	9	제방	69	69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3659	기정	마곡동	407			도로	20,686	11,196	국(건설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407			도로	818	-	국(건설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407	-	35	도로	16,717	-	국(건설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407	-	36	도로	818	818	국(건설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407	-	37	도로	823	823	국(건설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407	-	38	도로	1,510	1,510	국(건설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3666	기정	가양동	258	-	3	유지	1,989	1,866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가양동	258	-	3	유지	126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가양동	258	-	8	유지	1,863	1,863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3672	기정	가양동	272	-	22	도로	1,496	817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변경	가양동	272	-	22	도로	676	-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가양동	272	-	63	도로	820	820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3677	기정	내발산동	179	-	1	답	2,826	474	이형재	화곡동 56-640	
	변경	내발산동	179	-	1	답	2,359	-	이형재	화곡동 56-640	
		내발산동	179	-	4	답	467	467	이형재	화곡동 56-640	
3678	기정	내발산동	180			답	3,318	535	이기에	696-4 만우연립 202호	
	변경	내발산동	180			답	2,781	-	이기에	696-4 만우연립 202호	
		내발산동	180	-	2	답	537	537	이기에	696-4 만우연립 202호	
3679	기정	내발산동	181			답	2,920	1,436	최종욱	서울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자아파트 209-302	
	변경	내발산동	181			답	432	-	최종욱	서울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자아파트 209-302	
		내발산동	181	-	3	답	1,458	1,458	최종욱	서울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자아파트 209-302	
3695	기정	마곡동	407	-	30	도로	3,641	3,641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마곡동	407	-	30	도로	49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마곡동	407	-	39	도로	3,592	3,592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3697	기정	가양동	422	-	86	도로	5,556	65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변경	가양동	422	-	86	도로	5,490	-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가양동	422	-	90	도로	66	66	국(국토해양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 마곡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Ⅱ-11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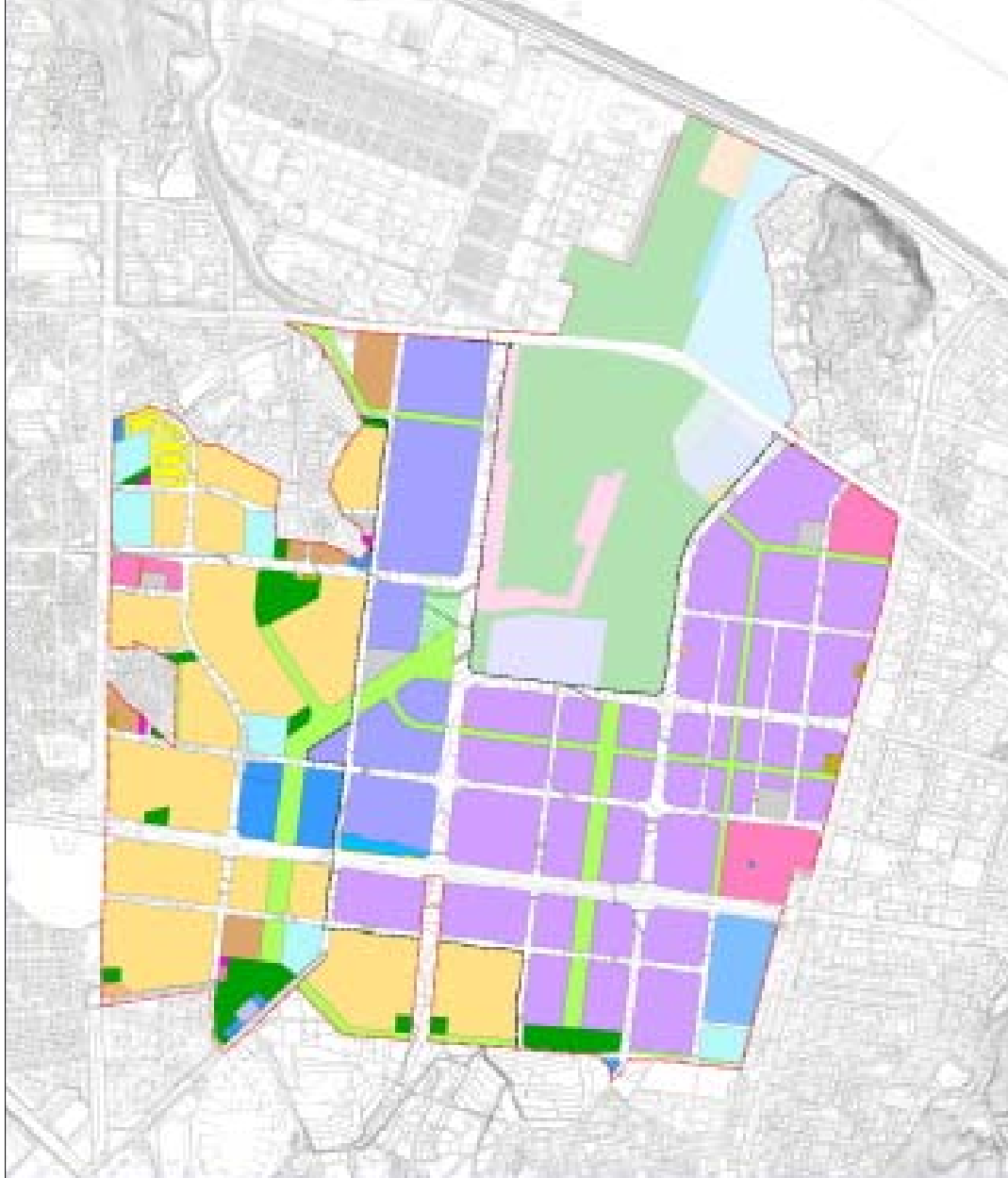


□ 마곡 도시개발구역 1·2지구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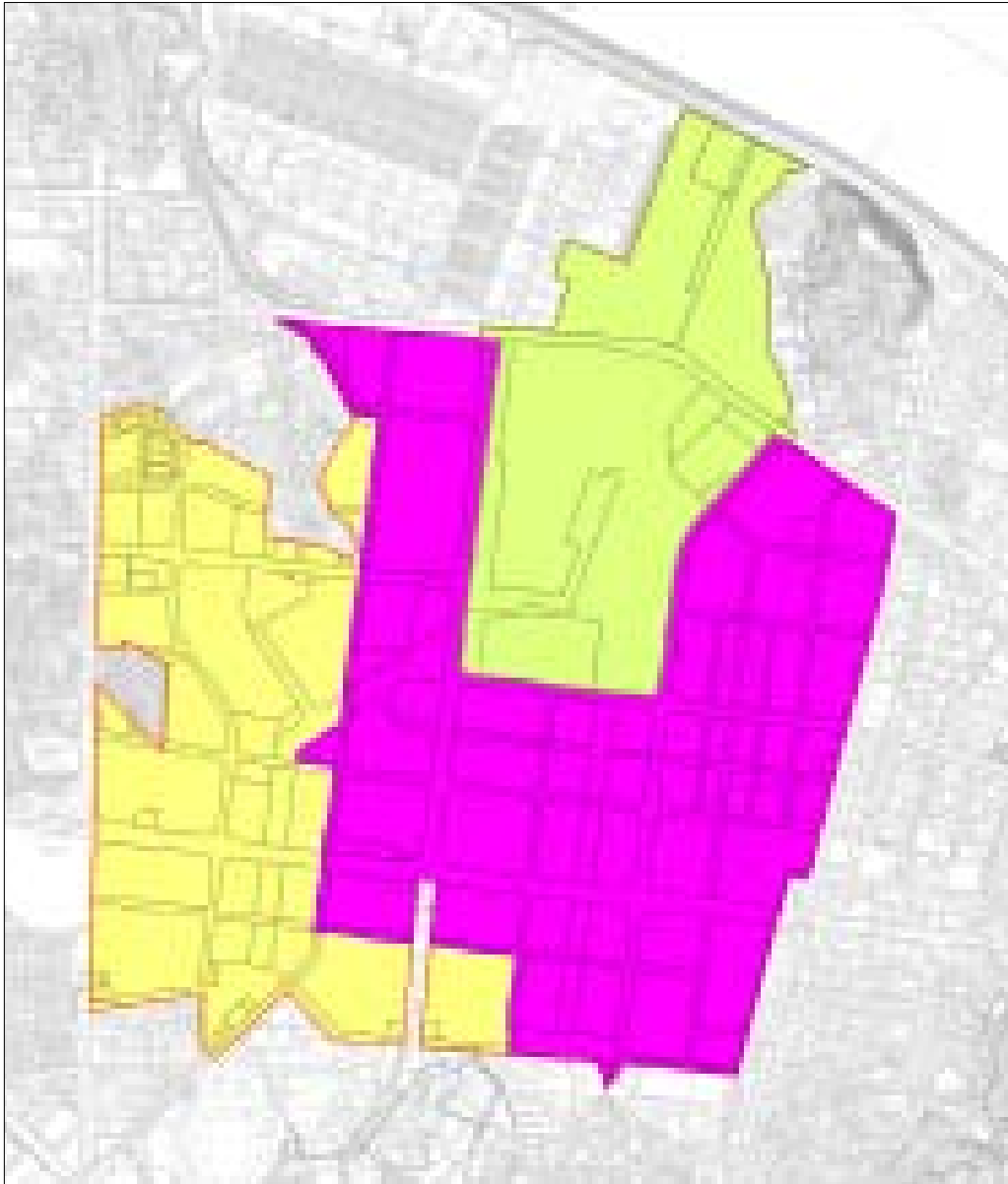
아파트용지	연구복합용지	대원	학교	전기공급설비	종교시설	철도용지
상업용지	공공청사	스포츠	방수설비	자원회수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업무용지	종합의료시설	환경	열공급설비	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유보지

□ 마곡 도시개발구역 1·2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도



아파트용지	연구복합용지	한림원	학교	전기공급설비	종교시설	철도용지
상업용지	관광정사	배지	방수설비	자원회수시설	사회복지시설	관광공지
업무용지	종합의료시설	광장	열공급설비	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유보지

□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구 분할(변경)도



1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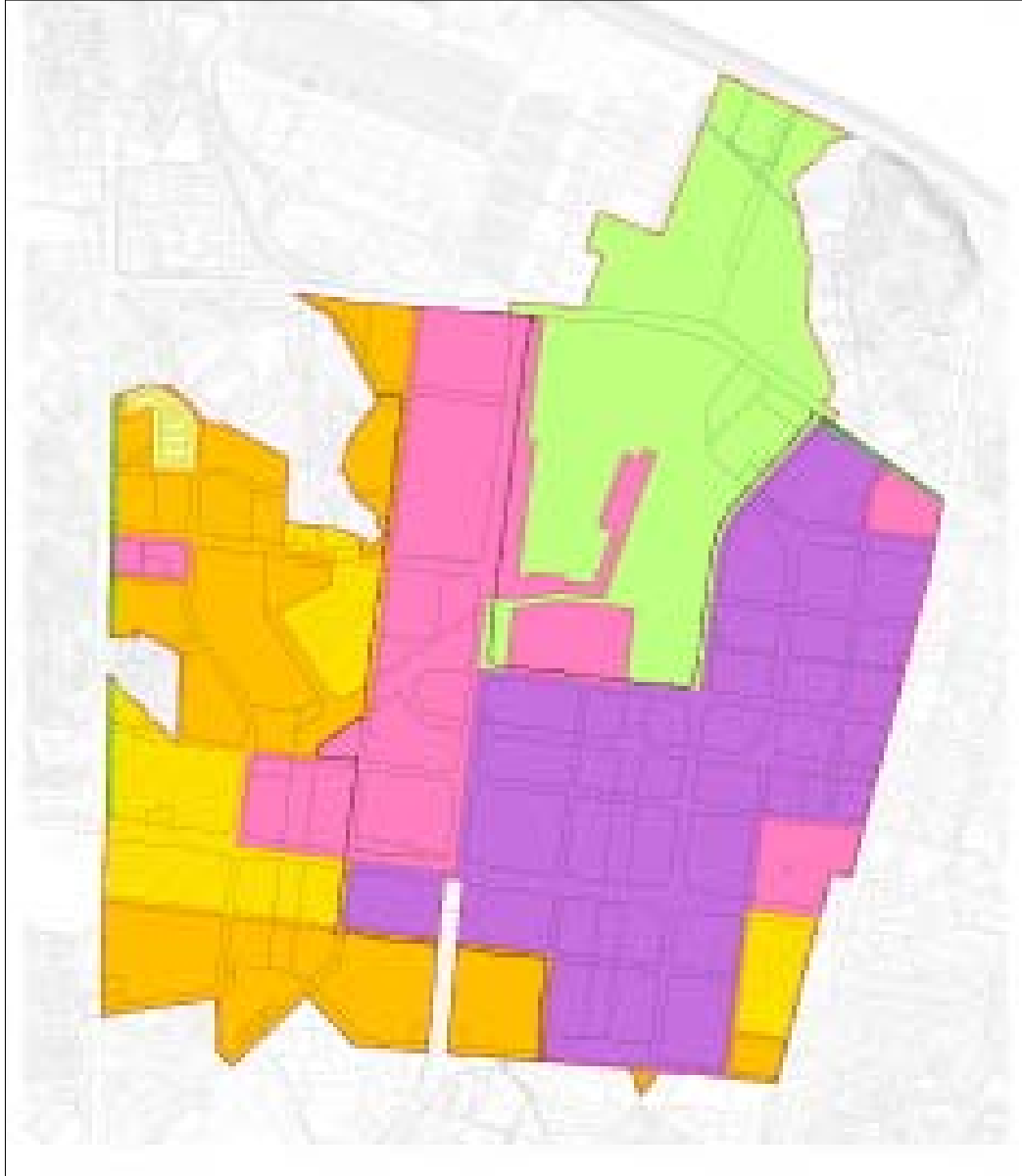


2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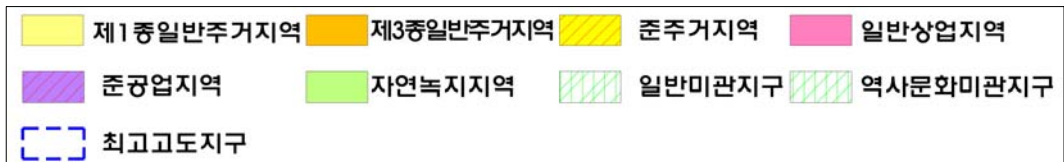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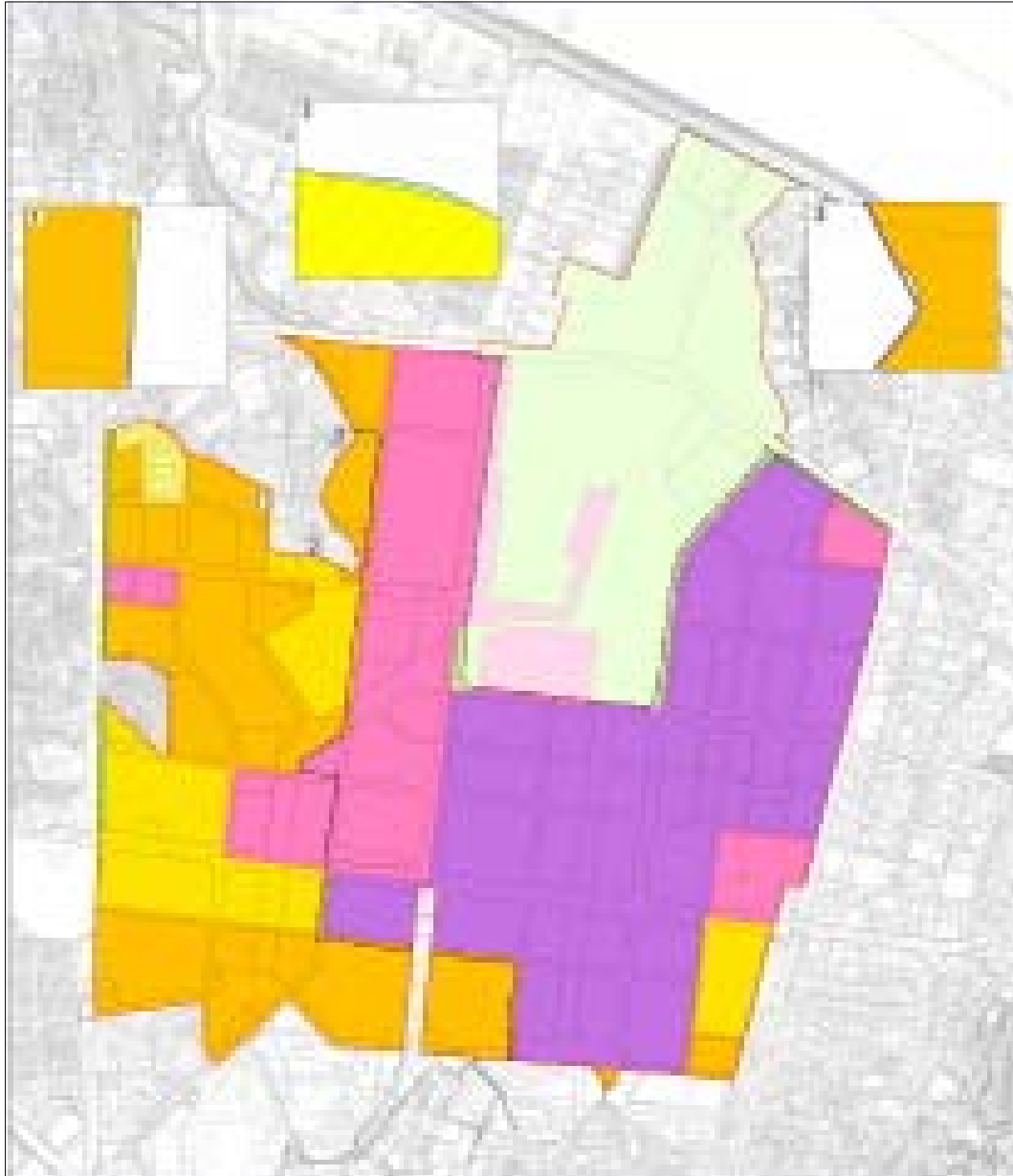
3 지구

□ 마곡 도시개발구역 1·2지구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 마곡 도시개발구역 1·2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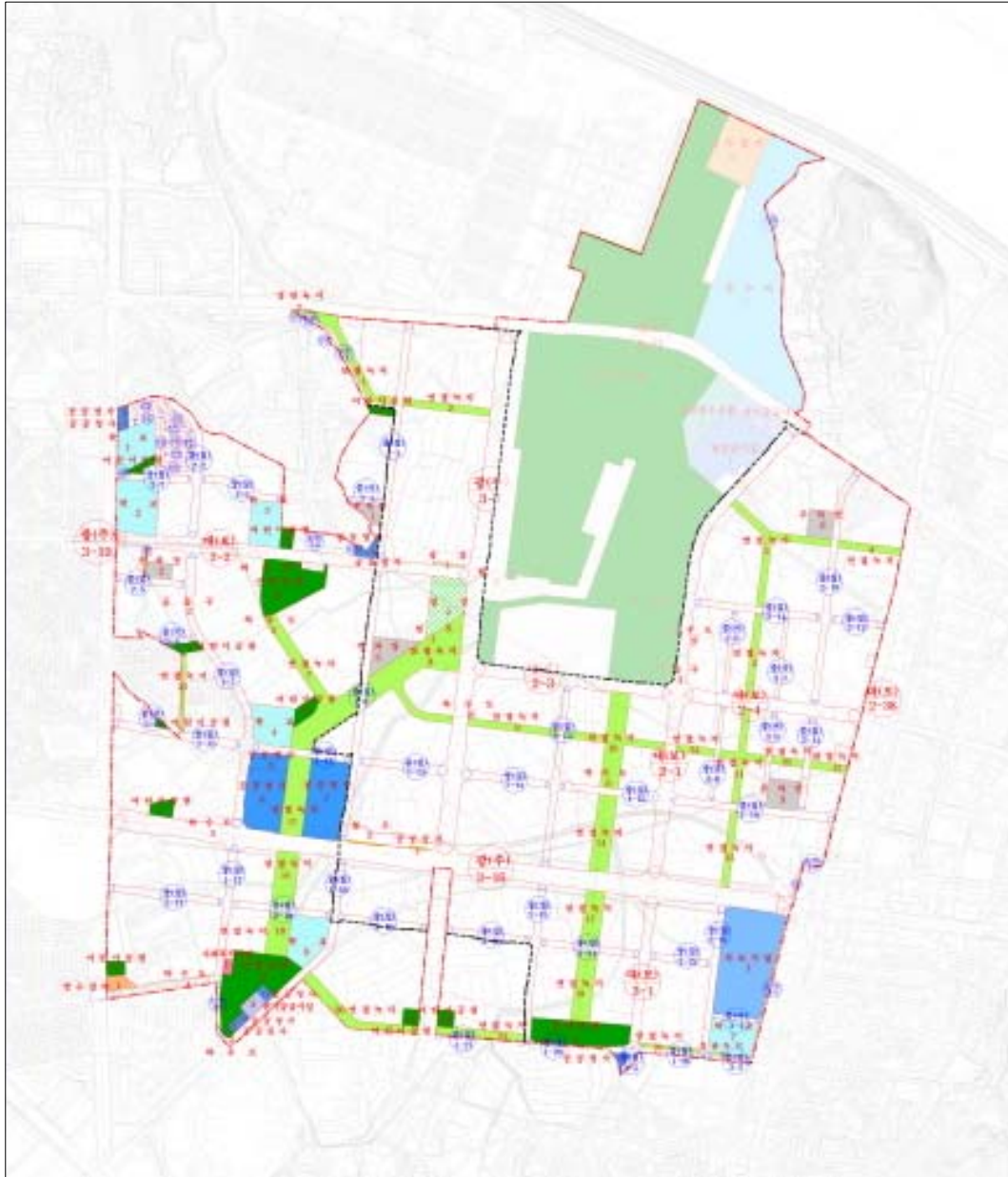


□ 마곡 도시개발구역 1·2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공원	녹지	광장	학교	공공청사	유수지
의료시설	주차장	복지시설	방수설비	공공공지	열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자원회수시설	철도	하수도	하수도	공통구
대로	중로	소로	보행자도로		

□ 마곡 도시개발구역 1·2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공 원	녹 지	광 장	학 교	공공청사	유 수 지
의료시설	주 차 장	복지시설	방수설비	공공공지	열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자원외수시설	철 도	하 수 도	하 수 도	하 수 도
하 수 도	하 수 도	하 수 도	하 수 도	하 수 도	하 수 도
하 수 도	하 수 도	하 수 도	하 수 도	하 수 도	하 수 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7호(2009.09.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5호(2010.09.0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5호(2009.12.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1호(2010.9.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이대 동대문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이대동대문근린공원 조성사업
3. 사업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 일대
4. 사업규모 : 도시공원(근린공원)조성 A = 11,519.7㎡
5.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6. 사업기간
 - 당초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11. 12. 31
 - 변경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12. 12. 31
7. 변경사유 :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등 : 생략(변동사항 없음)
9.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균형발전추진과 담당자 박학균 (전화 02 -2171-2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6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11번지, 개포동 1266번지 일대의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로 주변 및 지구내 여건변화에 대해 효율적 대처 및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개포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도곡동 411번지, 개포동 1266번지 일원	-	719,057	719,05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신설	①	개포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신설 : (면적: 719,057㎡) - 1-1지구 : 도곡동 411번지 일원(219,759㎡) - 1-2지구 : 개포동 1266번지일원(499,29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 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정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19,057	-	719,057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27,116	-	127,116	17.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25,781	-	225,781	36.1	
제2종일반주거지역	225,695	-	225,695	31.4	
제3종일반주거지역	106,465	-	106,465	14.8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세분	위 치	면 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 지구	일반미관지구	남부순환로(사당동 ~ 도곡동) (도곡동 411~도곡동 411-20)	148,800 (4,090)	6,200 (347)	양측 12	서고시373호 (90.11.7.)	
기정	②	미관 지구	일반미관지구	논현로(신사동580-7~도곡동448-2) (도곡동 411~도곡동448-2)	126,480 (5,377)	5,550 (514)	양측 12	서고시164호 (82.4.22.)	
기정	③	미관 지구	일반미관지구	도곡2동(벚꽃길)우면동 ~ 도곡동 (도곡동 518-14~도곡동 422-4)	62,400 (10,080)	2,600 (426)	양측 12	서고시373호 (90.11.7.)	
기정	④	미관 지구	조망가로 미관지구	논현로(개포동1239-14~개포동1163-8) (양재천~개포동1163-8)	14,400 (11,820)	1,200 (980)	편측 12	서고시431호 (08.12.4.)	
기정	⑤	미관 지구	일반미관지구	양재대로(양재1.C ~ 수서1.C) (개포동 1163-8~일원동645-13)	150,000 (12,856)	6,250 (1,074)	양측 12	서고시431호 (08.12.4.)	

주) 괄호 내용은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1) 도 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29	19,330.8	189,800	14	2,897	53,510	12	3,418	35,891	103	13,015.8	100,399
광로	2	800	36,750	1	475	23,750	0	0	0	1	325	13,000
대로	1	427	10,675	0	0	0	0	0	0	1	427	10,675
중로	5	2,491	37,987	1	554	11,080	2	1,221	18,315	2	716	8,592
소로	121	15,612.8	104,388	12	1,868	18,680	10	2,197	17,576	99	11,547.8	68,132

주) 1. 구역 내 면적(가감속차선, 가각제외)과 연장임.

2. 해당수치의 내용은 개포택지(단독주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결정(변경)조서 : (1-1지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광로	3	19	40	주간선	35,306 (325)	삼전동 (광2-28)	방화동 (중2-249)	일반 도로		건고시503 (69.8.27)	남부순환도로
변경	광로	3	19	40	주간선	35,306 (325)	삼전동 (도곡동179-1)	방화동 (도곡동산51-2)	일반 도로		건고시503 (69.8.27)	남부순환도로
기정	대로	3	77	25	보조 간선	998 (427)	광2-21 (대2-30)	중2-249	일반 도로		건고시503 (69.8.27)	논현로28길
기정	중로	2	250	15	집산 도로	840 (426)	광2-18	대2-30	일반 도로		건고시405 (81.12.24)	양재천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60	대2-3	중2-249	일반 도로		건고시405 (81.12.24)	새맛길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360	대2-30	중2-249	일반 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38길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48	중2-249	소3-11	일반 도로		건고시405 (81.12.24)	그림길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148	중2-249	소2-25	일반 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30길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143	대3-1	중2-250	일반 도로		건고시405 (81.12.24)	두로손길
변경	소로	2	13	8	국지 도로	143	대3-77	중2-250	일반 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6길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79	대3-1	중2-250	일반 도로		건고시405 (81.12.24)	꿈무리길
변경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79	대3-77	중2-250	일반 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6길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201	대3-1	중2-250	일반 도로		건고시405 (81.12.24)	소담길
변경	소로	2	16	8	국지 도로	201	대3-77	중2-250	일반 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6길
신설	소로	2	25	8	국지 도로	314	대2-30	대3-77	일반 도로			논현로26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소로	3	221	6	국지 도로	92	소2-1	영동 지구계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도곡언덕길
변경	소로	3	221	6	국지 도로	139	소2-1	소3-288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남부순환로 370길
기정	소로	3	222	6	국지 도로	70	소2-1	소3-22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
기정	소로	3	223	6	국지 도로	196	소3-221	소3-226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34길
기정	소로	3	224	6	국지 도로	95	소3-221	소3-22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36길
기정	소로	3	225	6	국지 도로	98	소3-222	소3-226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36길
기정	소로	3	226	6	국지 도로	96	소2-1	소2-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38길
기정	소로	3	227	6	국지 도로	82	소2-1	소2-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38길
기정	소로	3	228	6	국지 도로	76	소2-1	소2-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38길
기정	소로	3	229	6	국지 도로	83	중2-249	소2-16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6길
기정	소로	3	230	6	국지 도로	78	중2-249	소2-16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
기정	소로	3	231	6	국지 도로	120	소2-15	소2-16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6길
기정	소로	3	232	6	국지 도로	106	소3-231	소3-234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6길
기정	소로	3	233	6	국지 도로	114	소3-231	소3-234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6길
기정	소로	3	234	6	국지 도로	118	소2-15	소2-16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4길
기정	소로	3	235	6	국지 도로	125	소3-13	소2-15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우곡길
변경	소로	3	235	6	국지 도로	125	소2-13	소2-15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6길
기정	소로	3	236	6	국지 도로	70	소3-235	소3-238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6길
기정	소로	3	237	6	국지 도로	83	소2-235	소3-238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6길
기정	소로	3	238	6	국지 도로	121	소2-13	소2-15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6길
기정	소로	3	239	6	국지 도로	85	대2-30	소2-1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6길
기정	소로	3	240	6	국지 도로	102	소3-239	소2-1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4길
신설	소로	3	288	6	국지 도로	173	대2-30	소2-25	일반도로			논현로32길
신설	소로	3	289	4	국지 도로	88	소3-288	소2-25	일반도로			남부순환로 370길
신설	소로	3	290	6	국지 도로	46	대3-77	소2-25	일반도로			-

주) 연장의 괄호 내용은 개포택지(단독주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변경 사유서 : (1-1지구)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3-19	광로 3-19	· 기종점 위치 변경 - 기점 : 광2-28 → 도곡동 179-1 - 종점 : 중2-249 → 도곡동 산51-2	· 기종점 위치 오기 정정
소로 2-1	소로 2-1	· 기점위치 변경 - 기점: 대2-3 → 대2-30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조서상의 오류 정정
소로 2-2	소로 2-2	· 종점위치 변경 - 종점: 소3-11 → 소2-25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조서상의 오류 정정
소로 2-13	소로 2-13	· 기점위치 변경 - 기점: 대3-1 → 대3-77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조서상의 오류 정정
소로 2-15	소로 2-15	· 기점위치 변경 - 기점: 대3-1 → 대3-77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조서상의 오류 정정
소로 2-16	소로 2-16	· 기점위치 변경 - 기점: 대3-1 → 대3-77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조서상의 오류 정정
-	소로 2-25	· 신설(소로 2류) - 폭원 : 8m / 연장 : 314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누락되었던 도로명 부여
소로 3-221	소로 3-221	· 종점 변경 - 종점 : 영동지구계 → 소3-288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조서상의 오류 정정
소로 3-235	소로 3-235	· 기점위치 변경 - 기점: 소3-13 → 소2-13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조서상의 오류 정정
-	소로 3-288	· 신설(소로 3류) - 폭원 : 6m / 연장 : 173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누락되었던 도로명 부여
-	소로 3-289	· 신설(소로 3류) - 폭원 : 4m / 연장 : 88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누락되었던 도로명 부여
-	소로 3-290	· 신설(소로 3류) - 폭원 : 6m / 연장 : 46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누락되었던 도로명 부여

■ 도로결정(변경)조서 : (1-2지구)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광로	1	28	50	주간선	13,250 (475)	천호동103광장 (소3-359)	과천시구역계 (대2-30)	일반도로		서고시406 (87.6.9)	양재대로
기정	중로	1	237	20	보조 간선	840 (554)	광2-18	대2-30	일반도로		건고시296 (83.9.7)	개포동길
변경	중로	1	237	20	보조 간선	840 (554)	광2-18 (개포동1269)	대2-30	일반도로		건고시296 (83.9.7)	개포로
기정	중로	2	251	15	보조 간선	236	대2-30	중2-252	일반도로		건고시296 (83.9.7)	논현로10길
기정	중로	2	252	15	집산 도로	1,110 (795)	광2-18	중1-237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포이길
변경	중로	2	252	15	집산 도로	1,110 (795)	광2-18 (개포동1183-8)	중1-237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2길
기정	중로	3	178	12	집산 도로	238	대2-30	중2-25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6길
기정	중로	3	181	12	집산 도로	864 (478)	광2-18	대2-30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
변경	중로	3	181	12	집산 도로	864 (478)	광2-18 (개포동1266)	대2-30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2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 (m)								
기정	소로	1	9	10	집산 도로	100	중1-237	소3-10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문학길
변경	소로	1	9	10	집산 도로	100	중1-237	소2-10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5길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468 (134)	중3-178 (개포동1232)	중3-178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8길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334	중2-252	중1-237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2길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290	중2-251	중3-178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2길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118	중2-252	소1-1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2길
기정	소로	1	14	10	집산 도로	426	중2-251	소1-15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4길
기정	소로	1	15	10	국지 도로	92	중2-252	소3-15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한빛찬길
변경	소로	1	15	10	국지 도로	92	중2-252	소3-148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8길
기정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88	중3-181	소3-287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동산길
변경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88	개포동1266	소3-287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31길
기정	소로	1	39	10	국지 도로	103	개포동 1228-6호	개포동 1225-4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31길
변경	소로	1	39	10	국지 도로	103	대2-30	소1-1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4길
기정	소로	1	40	10	국지 도로	35	개포동 1223	개포동 1223-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아름나래길
변경	소로	1	40	10	국지 도로	35	소1-12	개포동1220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4길
기정	소로	1	41	10	국지 도로	44	개포동 1219-6	개포동 1219-7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4길
변경	소로	1	41	10	국지 도로	44	중2-252	소3-29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2길
기정	소로	1	42	10	국지 도로	104	개포동1203	개포동1203-6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아름나래길
변경	소로	1	42	10	국지 도로	104	중2-252	소3-296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2길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481	중1-237	소3-13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송죽길
변경	소로	2	10	8	국지 도로	361	소2-13	소3-13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17길
변경	소로	2	13	8	국지 도로	120	중1-237	소3-99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15길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245	소1-11	소3-119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4길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35	중2-252	달터 근린공원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체육관길
변경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26	중2-252	소3-296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2길
기정	소로	3	99	6	국지 도로	192	소2-10	소3-10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버들길
변경	소로	3	99	6	국지 도로	192	소3-106	소3-10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15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 (m)								
기정	소로	3	100	6	국지 도로	56	소2-10	소3-99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15길
기정	소로	3	101	6	국지 도로	72	소2-10	소3-99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15길
기정	소로	3	102	6	국지 도로	143	소2-10	중3-18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17길
기정	소로	3	103	6	국지 도로	330	소2-10	소3-105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1길
기정	소로	3	104	6	국지 도로	65	소3-105	소3-10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5길
기정	소로	3	105	6	국지 도로	126	소2-10	도곡201-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문학길
변경	소로	3	105	6	국지 도로	113	소2-10	개포동 1266-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5길
기정	소로	3	106	6	국지 도로	132	소2-10	소3-99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버들길
변경	소로	3	106	6	국지 도로	132	소2-13	소3-99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15길
기정	소로	3	107	6	국지 도로	104	소2-10	소3-109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솔나리길
변경	소로	3	107	6	국지 도로	104	소2-13	소3-109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17길
기정	소로	3	108	6	국지 도로	82	소2-10	소3-109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버들길
변경	소로	3	108	6	국지 도로	82	소2-13	소3-109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17길
기정	소로	3	109	6	국지 도로	110	중1-237	소2-10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못나무길
기정	소로	3	110	6	국지 도로	96	중1-237	소2-10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17길
기정	소로	3	111	6	국지 도로	94	소1-9	소3-110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5길
기정	소로	3	112	6	국지 도로	106	소1-9	소3-110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5길
기정	소로	3	116	6	국지 도로	142	소1-10	소3-118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8길
기정	소로	3	117	6	국지 도로	127	소1-10	소3-118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8길
기정	소로	3	118	6	국지 도로	118	소1-10	소1-10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0길
기정	소로	3	119	6	국지 도로	132	중2-252	소1-1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36길
기정	소로	3	120	6	국지 도로	172	소3-199	소3-12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남2로
변경	소로	3	120	6	국지 도로	172	소3-119	소3-12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6길
기정	소로	3	121	6	국지 도로	127	소1-11	소2-1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포이남1로 밀미리길
변경	소로	3	121	6	국지 도로	68	소1-11	소2-1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8길
기정	소로	3	122	6	국지 도로	188	중3-178	소1-1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6길
기정	소로	3	123	6	국지 도로	94	중3-178	소3-12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6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소로	3	124	6	국지 도로	252	중3-178	중3-178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6길
기정	소로	3	125	6	국지 도로	288	소1-12	소1-1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2길
기정	소로	3	126	6	국지 도로	100	소3-125	소3-125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2길
기정	소로	3	127	6	국지 도로	158	소1-12	소1-1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2길
기정	소로	3	128	6	국지 도로	68	소1-13	소3-127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2길
기정	소로	3	129	6	국지 도로	118	중2-252	소2-1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2길
기정	소로	3	130	6	국지 도로	80	소3-105	소3-13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31길
기정	소로	3	131	6	국지 도로	114	소1-9	소3-13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31길
기정	소로	3	132	6	국지 도로	132	소1-9	소3-13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31길
기정	소로	3	133	6	국지 도로	182	중1-237	소3-10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31길
기정	소로	3	134	6	국지 도로	324	중1-237	소1-1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38길
기정	소로	3	135	6	국지 도로	144	중1-237	소3-134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36길
기정	소로	3	136	6	국지 도로	67	소3-149	소3-137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
변정	소로	3	136	6	국지 도로	67	소1-11	소3-137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
기정	소로	3	137	6	국지 도로	150	소3-134	소3-146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32길
기정	소로	3	138	6	국지 도로	54	소1-14	대2-30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장별길
변경	소로	3	138	6	국지 도로	60	소1-14	소3-40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8길
기정	소로	3	139	6	국지 도로	216	소3-138	소3-14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8길
기정	소로	3	140	6	국지 도로	34	소2-13	소3-139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갯별길
변경	소로	3	140	6	국지 도로	34	소1-14	소3-139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6길
기정	소로	3	141	6	국지 도로	615	소1-14	광1-28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참행복길
변경	소로	3	141	6	국지 도로	605	소1-14	개포동1176- 29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2길
기정	소로	3	142	6	국지 도로	300	소1-14	소1-15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8길
기정	소로	3	143	6	국지 도로	38	중2-251	소3-14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0길
기정	소로	3	144	6	국지 도로	80	소1-14	소3-14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6길
기정	소로	3	145	6	국지 도로	30	소3-146	소3-135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36길
기정	소로	3	146	6	국지 도로	250	소3-134	소1-1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36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소로	3	147	6	국지 도로	140	소1-14	소3-14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8길
기정	소로	3	148	6	국지 도로	38	소1-15	소3-14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8길
기정	소로	3	149	6	국지 도로	155	소1-14	소3-14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남3로
변경	소로	3	149	6	국지 도로	155	소3-134	소3-146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30길
기정	소로	3	150	6	국지 도로	155	소1-14	소3-142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6길
기정	소로	3	151	6	국지 도로	34	소1-14	소3-14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6길
기정	소로	3	152	6	국지 도로	82	소1-14	소3-15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6길
기정	소로	3	153	6	국지 도로	238	소1-14	소1-14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갯벌길
변경	소로	3	153	6	국지 도로	184	소1-14	소3-360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6길
변경	소로	3	360	6	국지 도로	95	소1-14	소3-142	일반도로		-	논현로6길
기정	소로	3	154	6	국지 도로	82	소1-14	소3-15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6길
기정	소로	3	155	6	국지 도로	82	소1-14	소3-15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6길
기정	소로	3	212	6	국지 도로	74	소3-103	소3-105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5길
기정	소로	3	213	6	국지 도로	67	소1-11	소2-1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
기정	소로	3	214	6	국지 도로	112	소1-10	소3-118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18길
기정	소로	3	215	6	국지 도로	84	소1-14	소2-15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갯벌4로
변경	소로	3	215	6	국지 도로	84	소1-14	소3-15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6길
기정	소로	3	216	6	국지 도로	38	소1-14	소3-14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
기정	소로	3	217	6	국지 도로	38	소1-14	소3-14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
기정	소로	3	218	6	국지 도로	134	소1-15	녹도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장벌길
변경	소로	3	218	6	국지 도로	134	소1-15	소3-359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8길
기정	소로	3	219	6	국지 도로	75	소3-218	소3-14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8길
기정	소로	3	220	6	국지 도로	75	소3-218	소3-141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논현로8길
기정	소로	3	286	6	국지 도로	188	중1-237	소3-13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35길
기정	소로	3	287	6	국지 도로	430 (126)	중1-237	소3-103	일반도로		건고시405 (81.12.24)	개포로25길
신설	소로	3	291	6	국지 도로	40.4	소3-124	소3-127	일반도로			개포로20길
신설	소로	3	292	6	특수 도로	20	소3-125	대2-30	보행자 전용도로			논현로12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신설	소로	3	293	6	일반도로	20	대2-30	소3-139	일반도로			논현로6길
신설	소로	3	294	4	국지도로	77.4	소3-218	소3-141	일반도로			논현로8길
신설	소로	3	295	4	국지도로	76	소3-218	소3-141	일반도로			논현로8길
신설	소로	3	296	4	국지도로	97	소2-12	소1-11	일반도로			개포로28길
신설	소로	3	332	6	국지도로	15	소3-122	소1-39	일반도로			논현로16길
신설	소로	3	333	6	국지도로	15	소1-39	소3-125	일반도로			논현로12길
신설	소로	3	358	4	국지도로	27	소3-141	소3-359	일반도로			논현로2길
신설	소로	3	359	4	국지도로	212	광1-28	중2-252	일반도로			-

주) 연장의 괄호 내용은 개포택지(단독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변경 사유서 : (1-2지구)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237	중로 1-237	· 기점 위치 변경 - 기점: 광2-18 → 개포동1269	· 기점 위치 오기 정정
중로 2-252	중로 2-252	· 기점 위치 변경 - 기점: 광2-18 → 개포동1183-8	· 기점 위치 오기 정정
중로 3-181	중로 3-181	· 기점 위치 변경 - 기점: 광2-18 → 개포동1266	· 기점 위치 오기 정정
소로 1-9	소로 1-9	· 종점 위치 변경 - 종점: 소3-10 → 소2-10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
소로 1-15	소로 1-15	· 종점위치 변경 - 종점: 소3-151 → 소3-148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
소로 1-22	소로 1-22	· 기점 위치 변경 - 기점: 중3-181 → 개포동1266	· 기점 위치 오기 정정
소로 1-39	소로 1-39	· 가종점 위치 변경 -기점: 개포동1288-6호 → 대2-30 -종점: 개포동1255-4 → 소1-12	· 가종점 위치 오기 정정
소로 1-40	소로 1-40	· 가종점 위치 변경 -기점: 개포동1223 → 소1-12 -종점: 개포동1223-1 → 개포동1220	· 가종점 위치 오기 정정
소로 1-41	소로 1-41	· 가종점 위치 변경 -기점: 개포동1219-6 → 중2-252 -종점: 개포동1219-7 → 소3-291	· 가종점 위치 오기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1-42	소로 1-42	· 기종점 위치 변경 - 기점: 개포동1203 → 중2-252 - 종점: 개포동1203-6 → 소3-296	· 기종점 위치 오기 정정
소로 2-10	소로 2-10	· 연장 축소 - 연장: 481m → 361m(감 120m)	· 기존 도로 결정 선형이 불합리하여 도로 굴절부의 처리가 미흡하므로 노선 분리 하여 종점부의 결정 연장 120m 축소
	소로 2-13	· 신설(소로 2류) - 폭원 : 8m / 연장 : 120m	· 기존 도로 결정 선형이 불합리하여 노선 분리 후 폭원 8m, 연장 120m의 소로 2류 신설 결정
소로 2-12	소로 2-12	· 종점 위치 및 연장 변경 - 종점: 달터근린공원 → 소3-296 - 연장: 135m → 126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 및 연장 변경
소로 3-99	소로 3-99	· 기점위치 변경 - 기점: 소2-10 → 소3-106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
소로 3-105	소로 3-105	· 종점 위치 변경 - 종점: 도곡201-1 → 개포동 1266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
소로 3-106	소로 3-106	· 기점 위치 변경 - 기점: 소2-10 → 소2-13	· 기존 기점 소2-10의 노선분리로 인하여 소2-13으로 정정
소로 3-107	소로 3-107	· 기점 위치 변경 - 기점: 소2-10 → 소2-13	· 기존 기점 소2-10의 노선분리로 인하여 소2-13으로 정정
소로 3-108	소로 3-108	· 기점 위치 변경 - 기점: 소2-10 → 소2-13	· 기존 기점 소2-10의 노선분리로 인하여 소2-13으로 정정
소로 3-120	소로 3-120	· 기점 위치 변경 - 기점: 소3-199 → 소3-119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
소로 3-121	소로 3-121	· 연장 변경 - 127m → 68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
소로 3-136	소로 3-136	· 기점 위치 변경 - 기점: 소3-149 → 소1-11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
소로 3-138	소로 3-138	· 종점 위치변경 - 종점 : 대2-30 → 소3-403 · 연장 오류 정정(조서상) 및 연장 축소 - 54m → 49m, 65m → 60m (감5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 · 완충녹지와 일부 중복 결정된 종점부에 대하여 노선 분리 하여 기존 완충녹지 구간(일부폐지)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폐지하고, 종점부의 결정 연장 5m 축소
소로 3-140	소로 3-140	· 기점위치 변경 - 기점: 소2-13 → 소1-14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
소로 3-141	소로 3-141	· 기종점 위치 변경 - 기점: 소1-14 → 소1-15 - 종점: 광1-28 → 개포동1176-29	· 완충녹지와 일부 중복 결정된 종점부에 대하여 노선 분리 하여 기존 완충녹지구간(일부 폐지)은 보행자전용도로를 폐지하고, 종점부의 연장 10m 축소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149	소로 3-149	· 기/종점 위치 변경 - 기점: 소1-14 → 소3-134 - 종점: 소3-142 → 소3-146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
소로 3-153	소로 3-153	· 연장 오류 정정(조서상) - 238m → 279m · 연장 축소 - 연장: 279m → 184m(감 95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 · 기존 도로 결정 선형이 불합리하여 도로 굴절부의 처리가 미흡하므로 노선 분리 하여 종점부의 결정 연장 95m 축소
	소로 3-360	· 신설(소로 3류) - 폭원 : 6m / 연장 : 95m	· 기존 도로 결정 선형이 불합리하여 노선 분리 후 폭원 6m, 연장 95m의 소로 3류 신설 결정
소로 3-215	소로 3-215	· 종점위치 변경 - 종점: 소2-153 → 소3-153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
소로 3-218	소로 3-218	· 기점위치 변경 - 기점: 녹도 → 소3-359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오류 정정
-	소로 3-291	· 신설(소로 3류) - 폭원 : 6m / 연장 : 40.4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누락되었던 도로명 부여
-	소로 3-292	· 신설(소로 3류) - 폭원 : 6m / 연장 : 20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누락되었던 도로명 부여
-	소로 3-293	· 신설(소로 3류) - 폭원 : 6m / 연장 : 20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누락되었던 도로명 부여
-	소로 3-294	· 신설(소로 3류) - 폭원 : 4m / 연장 : 77.4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누락되었던 도로명 부여
-	소로 3-295	· 신설(소로 3류) - 폭원 : 4m / 연장 : 76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누락되었던 도로명 부여
-	소로 3-296	· 신설(소로 3류) - 폭원 : 4m / 연장 : 97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누락되었던 도로명 부여
-	소로 3-332	· 신설(소로 3류) - 폭원 : 6m / 연장 : 15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누락되었던 도로명 부여
-	소로 3-333	· 신설(소로 3류) - 폭원 : 6m / 연장 : 15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누락되었던 도로명 부여
-	소로 3-358	· 신설(소로 3류) - 폭원 : 4m / 연장 : 27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누락되었던 도로명 부여
-	소로 3-359	· 신설(소로 3류) - 폭원 : 4m / 연장 : 212m	·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누락되었던 도로명 부여

나. 공간시설

1) 녹 지

■ 녹지 결정조서 : (1-1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중로2-250남측 (양재천로변)	4,190 (2,185.6)	-	4,190 (2,185.6)	건고시253 (85.6.11)	
기정	⑩	녹지	완충녹지	광로3-19남측 (남부순환도로변)	25,500 (1,124)	-	25,500 (1,124)	88.12.21	

주) ()는 1-1지구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조서 : (1-2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광로1-28북측 (양재대로변)	1,700 (4,800)	-	17,000 (4,800)	건고시253 (85.6.11)	
기정	⑦	녹지	완충녹지	개포동1191-5일원 (논현로변)	5,577.5 (2,836.6)	-	5,577.5 (2,836.6)	건고시388 (84.9.28)	

주) ()는 1-2지구 면적임

■ 녹지 변경사유서 (1-2지구)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완충녹지	· 면적오류 정정 (조서상) - 면적 : 1,700 → 17,000m ²	· 개포 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상의 오 류정정에 의한 면적 변경

2) 공 원

■ 공원 결정조서 : (1-1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⑪	도곡목련	어린이공원	도곡동 415-3번지	1,709.2	-	1,709.2	- (88.12.31)	
기정	⑬	도곡까치	어린이공원	도곡동 455번지	1,793.8	-	1,793.8	건고시296 (83.9.10)	

■ 공원 결정(변경)조서 : (1-2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㉗	포이	근린공원	기정 도곡동 864-2번지 알대	12,984	3,234.4 (3,234.4)	16,811.4 (3,234.4)	건고시296 (83.9.7)	
				변경 개포동 1239-21번지 알대					
기정	㉙	개포은행 나무	어린이공원	개포동 1220번지	1,652.7	-	1,652.7	건고시253 (85.6.14)	
기정	㉚	개포목련	어린이공원	개포동 1176번지	1,639.1	-	1,639.1	- (88.12.31)	

주) ()는 1-2지구 면적임

■ 공원 변경사유서 (1-2지구)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㉗	포이근린공원	· 면적오류정정 (조서상) - 12,984→13,577㎡ · 위치오류정정 (조서상) - 도곡동 864-2알대 → 개포동 1239-21알대 · 면적증가 - 면적 : 12,984→16,811.4㎡ (3,234.4㎡)	· 개포 택지개발사업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상의 오류 면적 및 위치 정정 ·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아있는 연구시설②의 공원결정으로 인한 공원면적 증가

주) ()는 1-2구 면적임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 청사	강남 수도사업소	도곡동 459-4	3,718.4	-	3,718.4	서고시 367 (90.10.3)	1-1지구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①	강남 수도사업소	60%이하	150%이하	5층이하

2) 학교 결정조서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유치원	개포동 1222-6번지	999.5	-	999.5	서고시2007-442 81.12.21	1-2지구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①	유치원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3) 도서관

■ 도서관 결정조서 : (1-2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도서관	개포동 1266번지	12,632.3	-	12,632.3	건공고133 (81.4.11)	1-2지구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①	도서관	60%이하	150%이하	5층이하

4) 연구시설

■ 연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연구시설	개포동 1267번지	4,961.1	-	4,961.1	건고시296 (‘83.9.7)	1-2지구
폐지	②	연구시설	개포동 1267-1	3,234.8	감)3,234.4	-	건고296 (‘83.9.7)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①	연구시설	60%이하	150%이하	5층이하

■ 연구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연구시설	· 폐지	· 체비지로서 지구내 부족한 공원녹지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 공원으로 편입하고자 폐지

③ 획지(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가. 최소개발 및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구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	간선부
도면표시	R1	R2	R3	R4	R5
최소필지 규모	-				
최대개발 규모	1,000㎡				1,500㎡

주) 1. 기존 필지규모가 초과하는 경우 예외 적용

2.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최대개발규모 적용

나. 가구 계획

■ 1-1지구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A1	A1	8,648.6	도곡동 411대 외 20필지	■ 1-2지구			
A2	A2	6,541.9	도곡동 410대 외 16필지	B1	B1	12,632.3	개포동 1266대
A3	A3	5,343.6	도곡동 515-1대 외 7필지	B2	B2	4,961.1	개포동 1267대
A4	A4	3,161.1	도곡동 412대 외 7필지	B3	B3	6,753.9	개포동 1239대 외 20필지
A5	A5	2,952.5	도곡동 413대 외 11필지	B4	B4	2,354.0	개포동 1240대 외 8필지
A6	A6	8,264.6	도곡동 414대 외 20필지	B5	B5	2,019.5	개포동 1241대 외 5필지
A7	A7	2,544.9	도곡동 416대 외 10필지	B6	B6	1,997.4	개포동 1242대 외 5필지
A8	A8	1,284.9	도곡동 415대 외 6필지	B7	B7	3,048.3	개포동 1243대 외 10필지
A9	A9	3,338.5	도곡동 417대 외 12필지	B8	B8	2,027.1	개포동 1250대 외 7필지
A9	A9	3,338.5	도곡동 417대 외 12필지	B9	B9	2,549.9	개포동 1252대 외 10필지
A10	A10	2,662.6	도곡동 418대 외 7필지	B10	B10	1,350.5	개포동 1265대 외 4필지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A11	A11	2,620.8	도곡동 419대 외 9필지	B11	B11	1,542.9	개포동 1253대 외 6필지
A12	A12	5,504.2	도곡동 515-10대 외 7필지	B12	B12	1,798.5	개포동 1254대 외 13필지
A13	A13	5,867.3	도곡동 518-1대 외 12필지	B13	B13	2,139.0	개포동 1255대 외 11필지
A14	A14	6,288.0	도곡동 517-1대 외 12필지	B14	B14	1,632.0	개포동 1265-5대 외 8필지
A15	A15	4,801.4	도곡동 420대 외 13필지	B15	B15	1,828.1	개포동 1264대 외 13필지
A16	A16	2,300.9	도곡동 425대 외 8필지	B16	B16	2,284.0	개포동 1263대 외 7필지
A17	A17	4,303.7	도곡동 424대 외 16필지	B17	B17	3,916.8	개포동 1244대 외 14필지
A18	A18	4,377.1	도곡동 423대 외 14필지	B18	B18	3,226.5	개포동 1245대 외 12필지
A19	A19	3,042.1	도곡동 422대 외 9필지	B19	B19	1,616.1	개포동 1246대 외 4필지
A20	A20	4,439.0	도곡동 448대 외 4필지	B20	B20	1,643.9	개포동 1247대 외 5필지
A21	A21	2,147.7	도곡동 449대 외 10필지	B21	B21	1,051.3	개포동 1249대 외 4필지
A22	A22	2,332.0	도곡동 450대 외 9필지				
A23	A23	2,847.1	도곡동 451대 외 11필지				
A24	A24	3,292.4	도곡동 452대 외 13필지				
A25	A25	1,757.8	도곡동 455-1대 외 7필지				
A26	A26	3,972.0	도곡동 456대 외 15필지				
A27	A27	4,072.1	도곡동 457대 외 14필지				
A28	A28	2,456.0	도곡동 458대 외 10필지				
A29	A29	8,655.3	도곡동 459대 외 5필지				
A30	A30	4,294.6	도곡동 453대 외 17필지				
A31	A31	4,158.5	도곡동 454대 외 16필지				
B22	B22	2,937.7	개포동 1256대 외 10필지	B73	B73	1,634.7	개포동 1191대 외 4필지
B23	B23	3,443.6	개포동 1257대 외 12필지	B74	B74	2,761.9	개포동 1190대 외 11필지
B24	B24	2,247.2	개포동 1258대 외 6필지	B75	B75	3,358.9	개포동 1188대 외 10필지
B25	B25	3,402.3	개포동 1261대 외 8필지	B76	B76	3,354.8	개포동 1189대 외 11필지
B26	B26	4,222.8	개포동 1260대 외 11필지	B77	B77	1,507.6	개포동 1186대 외 4필지
B27	B27	2,861.5	개포동 1259대 외 8필지	B78	B78	2,816.8	개포동 1185대 외 3필지
B28	B28	5,074.6	개포동 1262대 외 16필지	B79	B79	4,783.2	개포동 1183대 외 18필지
B29	B29	3,778.8	개포동 1235대 외 21필지	B80	B80	3,042.2	개포동 1163대 외 8필지
B30	B30	3,209.9	개포동 1234대 외 17필지	B81	B81	4,341.7	개포동 1169대 외 9필지
B31	B31	2,848.9	개포동 1233대 외 24필지	B82	B82	2,107.5	개포동 1170대 외 9필지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B32	B32	2,598.9	개포동 1232대 외 10필지	B83	B83	2,109.3	개포동 1171대 외 11필지
B33	B33	3,819.6	개포동 1230대 외 12필지	B84	B84	2,025.9	개포동 1172대 외 11필지
B34	B34	7,258.4	개포동 1231대 외 23필지	B85	B85	3,362.9	개포동 1168대 외 11필지
B35	B35	2,444.3	개포동 1217대 외 6필지	B86	B86	2,107.8	개포동 1173대 외 17필지
B36	B36	3,495.2	개포동 1212대 외 8필지	B87	B87	2,108.0	개포동 1174대 외 17필지
B37	B37	8,650.5	개포동 1218대 외 30필지	B88	B88	2,029.0	개포동 1175대 외 10필지
B38	B38	2,883.2	개포동 1216대 외 10필지	B89	B89	3,218.6	개포동 1167대 외 4필지
B39	B39	2,168.4	개포동 1215대 외 7필지	B90	B90	1,067.8	개포동 1176-1대 외 3필지
B40	B40	2,578.7	개포동 1205대 외 9필지	B91	B91	2,241.0	개포동 1177대 외 9필지
B41	B41	2,582.1	개포동 1206대 외 8필지	B92	B92	2,527.9	개포동 1166대 외 9필지
B42	B42	2,358.3	개포동 1204대 외 9필지	B93	B93	1,844.4	개포동 1178대 외 9필지
B43	B43	2,781.0	개포동 1214대 외 10필지	B94	B94	1,754.2	개포동 1179대 외 9필지
B44	B44	1,911.9	개포동 1213대 외 8필지	B95	B95	1,817.1	개포동 1180대 외 9필지
B45	B45	2,727.2	개포동 1207대 외 11필지	B96	B96	1,805.2	개포동 1181대 외 9필지
B46	B46	2,685.8	개포동 1208대 외 12필지	B97	B97	4,286.2	개포동 1165대 외 12필지
B47	B47	4,128.4	개포동 1209대 외 18필지	B98	B98	1,274.3	개포동 1182대 외 7필지
B48	B48	3,553.8	개포동 1210대 외 14필지	B99	B99	9,786.3	개포동 1164대 외 28필지
B49	B49	4,576.2	개포동 1211대 외 10필지				
B50	B50	2,310.5	개포동 1228대 외 6필지				
B51	B51	3,374.4	개포동 1227대 외 11필지				
B52	B52	3,239.9	개포동 1226대 외 11필지				
B53	B53	1,139.5	개포동 1225대 외 4필지				
B54	B54	4,022.9	개포동 1222대 외 12필지				
B55	B55	3,286.1	개포동 1221대 외 9필지				
B56	B56	4,285.2	개포동 1219대 외 13필지				
B57	B57	2,508.3	개포동 1194대 외 7필지				
B58	B58	1,139.7	개포동 1224대 외 4필지				
B59	B59	3,720.2	개포동 1195대 외 12필지				
B60	B60	3,572.0	개포동 1196대 외 13필지				
B61	B61	3,716.2	개포동 1193대 외 11필지				
B62	B62	518.8	개포동 1223대 외 1필지				
B63	B63	2,478.9	개포동 1198대 외 9필지				
B64	B64	2,478.2	개포동 1199대 외 5필지				
B65	B65	3,463.0	개포동 1200대 외 10필지				
B66	B66	7,699.8	개포동 1197대 외 5필지				
B67	B67	1,628.5	개포동 1203대 외 6필지				
B68	B68	2,260.4	개포동 1202대 외 9필지				
B69	B69	2,512.6	개포동 1201대 외 9필지				
B70	B70	2,175.6	개포동 1192대 외 7필지				
B71	B71	3,238.6	개포동 1187대 외 11필지				
B72	B72	7,639.4	개포동 1184대 외 24필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지정용도

구분	도면 표시	용 도	비고
지정용도	a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 적용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R3)

주 : 1) 판매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않음

2) 기 입지하여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인정

2) 불허용도

구분		도면 표시	용 도	비고
불허 용도	전층	A	· 공동주택(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 시설, 종교시설(기존 종교시설 제외) 등	· 적용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R1)
		B	· 공동주택(아파트), 운수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식물 관련시설(화초·분재 등의 온실 제외) 등	· 적용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R2)
		C	· 공동주택(아파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식물 관련 시설(화초·분재 등의 온실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 리시설 등	· 적용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R3)
		D	· 공동주택(아파트),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 외), 동식물 관련시설(화초·분재등의 온실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 적용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R4)
		E	· 공동주택(아파트),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식물 관련시설(화초·분재 등의 온실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 적용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부(R5)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 미관지구 내 불허용도	· 적용구역 - 전 구역
		지하층		· 주거 또는 교육용도

주)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3) 권장용도

구분		도면 표시	용 도	비고
권장 용도	전층	1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문화 및 집 회시설중 전시장 등	· 적용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R3)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R4)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부(R5)

주 : 1) 권장용도 인센티브 : 전층 권장용도는 건축물 연면적(부속시설 제외)의 20%이상

2)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1) 건폐율계획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고
R1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적용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R1)
R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적용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R2)
R3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적용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R3)
R4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부)	50% 이하	· 적용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R4)
R5	제3종일반주거지역(간선부)		· 적용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R5)

주)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2) 용적률 계획

(1) 용적률 적용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R1	제1종일반주거지역	130% 이하	150% 이하	· 적용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R1)
R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0% 이하	200% 이하	· 적용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R2)
R3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적용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R3)
R4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부)	220% 이하	250% 이하	· 적용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R4)
R5	제3종일반주거지역(간선부)			· 적용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R5)

주)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2)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 ①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 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 ④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권장용도의 면적은
- 전층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해당 면적)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 특정층(1층 등) 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해당면적)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⑥ 미관지구내 건축선 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
- ⑦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 ⑧ 환경친화적 건축물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목	세분	산정방식	비고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A	• A=(R2,R3지역 : 0.2, R4,R5지역 : 0.25) 적용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A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A=(R2,R3지역 : 0.2, R4,R5지역 : 0.25) 적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0.05												
	중수도시설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수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은 제외											
	빗물관리시설설치 (저류·침투·이용)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설계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되도록 설치											
	신재생에너지사용	기준용적률×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	기준용적률×α (1등급 α=0.08, 2등급 α=0.05)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에너지 절감율</th><th>에너지 성능지표</th><th>친환경 건축물인증</th></tr> <tr> <td>1등급</td><td>33.5%이상</td><td>81점이상</td><td>85점 이상</td></tr> <tr> <td>2등급</td><td>23.5~33.5%미만</td><td>74~81점미만</td><td>75~85점 미만</td></tr> </table>	구분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 성능지표	친환경 건축물인증	1등급	33.5%이상	81점이상	85점 이상	2등급	23.5~33.5%미만	74~81점미만
구분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 성능지표	친환경 건축물인증											
1등급	33.5%이상	81점이상	85점 이상											
2등급	23.5~33.5%미만	74~81점미만	75~85점 미만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제2종일반주거지역)(R2,R3)

구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유도형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권장용도연면적/주차장제외연면적) ×0.15	-
	빚지형/침상형 공지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최소 25㎡기준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
규제형	건축한계선		· 인센티브 정량(10%) 부여	-
의무형	환경친화적 건축물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참조	-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제3종일반주거지역)(R4,R5)

구 분	항 목	세 분	완화기준		비고
유도형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권장용도연면적/주차장제외연면적)	×0.15	-
	쌈지형/침상형 공지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0.3	최소 25㎡기준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0.15	-
규제형	건축한계선		· 인센티브 정량(15%) 부여	-	-
의무형	환경친화적 건축물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참조	-	자연지반 대지면적 10%기준 옥상녹화 대지면적 20%기준

주) 상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5-3 (1)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을 일부 정량화한 사항임

3) 높이 계획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고
R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층수 : 4층 이하	
R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층수 : 7층 이하	
R3	제2종일반주거지역	· 층수 : 12층 이하	
R4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부)	-	
R5	제3종일반주거지역(간선부)	-	

주)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주) 도시계획시설은 건축범위 결정을 따름

4)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제어기준	
배치 (건축선)	건축 한계선	· 간선도로 및 주요 이면도로변	· 보행공간 조성 - 폭원 3m	
		· 주요 이면도로변	· 보행공간 조성 - 폭원 2m	
		· 기타 이면도로변	· 보행공간 조성 - 폭원 1m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제 어 기 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일반주거지역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는 가로변 보행환경 제고를 목적으로 보행공간으로 조성 - 폭원 : 1m~3m	
	쌈지형 공지	· 주요 보행결절점	· 주요 보행결절점에 쌈지형 공지 지정 - 25㎡이상 확보(최소폭 5m이상)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제 어 기 준	
차량 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 · 간선도로 중 완충녹지 등이 조성된 구간 제외 · 대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활성화를 위하여 간선도로에서 개별 필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 불허	
주차 계획	공동주차 출입구	· 간선변에 접한 필지	· 간선변의 잦은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지가 간선변에만 접한 필지는 이웃하는 필지와 공동주차통로 설치(최소 1.5m+1.5m=3m)	
	필지별 주차출입	· 2면 이상이 도로와 면한 필지	·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를 위하여 폭이 좁은 도로에서 차량진출입 유도	
	부설 주차장설치	· 전 구역	· 주차장관련 법령 및 규정 준용	
	주차장 설치방식	· 전 구역	· 지침에서 규정한 주차장의 전체를 지하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1층부 전체를 필로티 형태로 조성할 것을 권장	

다.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제 어 기 준	
보행 동선	보행자 우선도로	· 기존 불합리한 보행자 전용도로	· 현황 상 불합리한 기존의 보행자전용도로(특수도로)의 사용형태를 보행환경의 쾌적성, 안전성 확보 및 지구전체 보행동선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 지정	
	공공 보행통로	· 노면로변, 양재대로변	· 인근 상가의 활성화와 보행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한계선 내에 공공보행통로 3m 조성	

라.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제 어 기 준	
옥상녹화	· 전구역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 및 “서울특별시 건축물 옥상 녹화 시스템 유형 결정과 관리 매뉴얼”내용 준수	
벽면녹화	· 전구역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생태면적률	· 전구역	· 건축물의 신축시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적용편람(2004.6)’ 및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2007.12)’ 내용 준수.	
옥외광고물	· 전구역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조례’ 및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강남구고시 제2008-33호)’를 준용	
빗물이용시설	· 전구역	· 서울특별시 빗물 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서울시 ‘친환경지구단위계획실현제고방안(2007.12)’내용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신재생 에너지시설	· 전구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자부고시 제2007-52), 서울시 ‘친환경지구단위계획실현제고 방안(2007.12)’내용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조명	· 전구역	· 상업지역 간선변 10층이상 건축물은 건물전면 및 옥상부에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환경조형물의 경우에도 야간경관 조명 설치 권장	

주) 옥외 광고물의 설치제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2004-158호)」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한다.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권한 : 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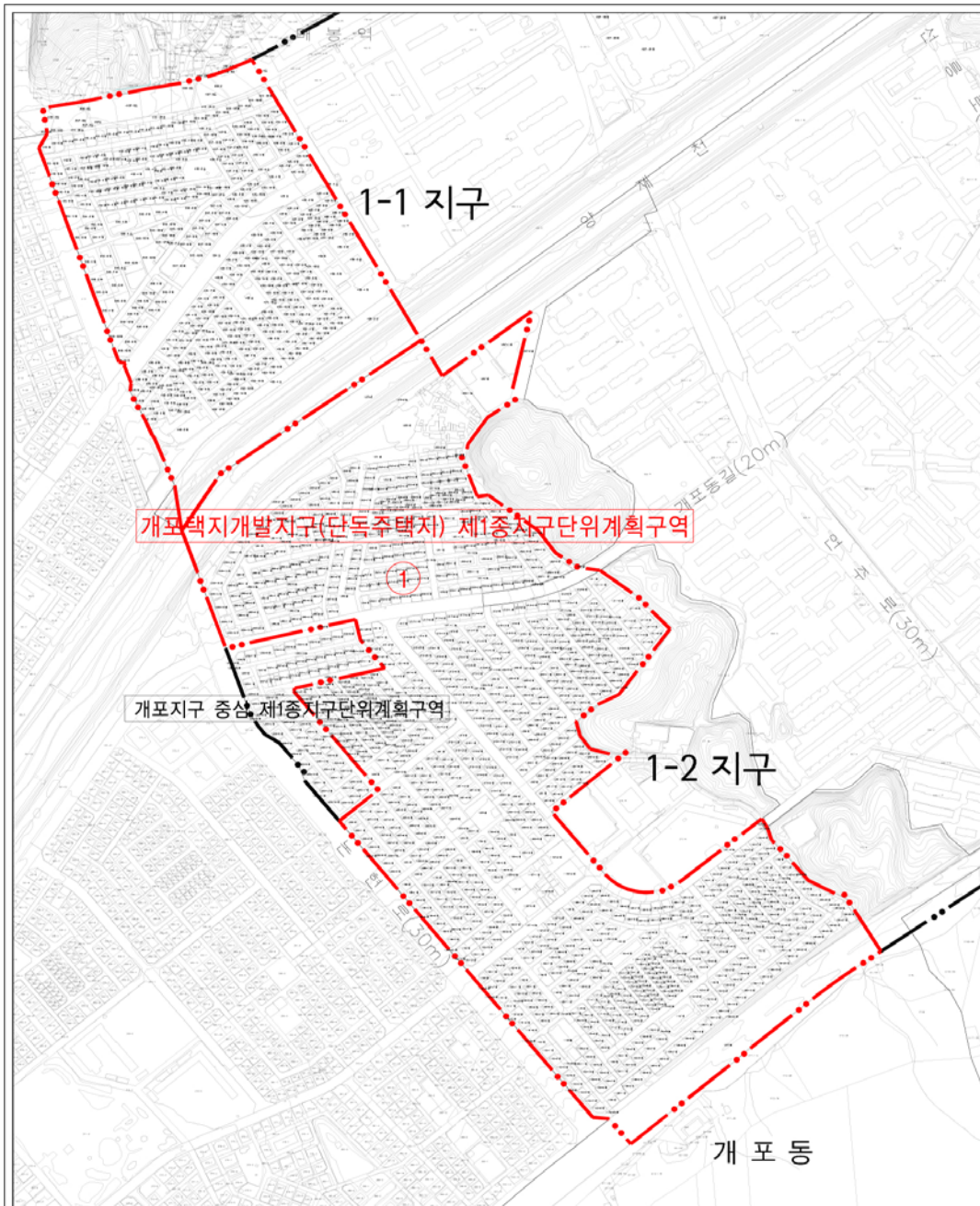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썸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4. 수종·조경시설물(공개공지, 썸지형공지, 전면공지에 한함)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관련법규상 경미한 변경범위내에 한함)

3.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 1-1지구, 1-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49), 강남구 도시계획과(☎02-2104-1836)에 관계 도서를 비치합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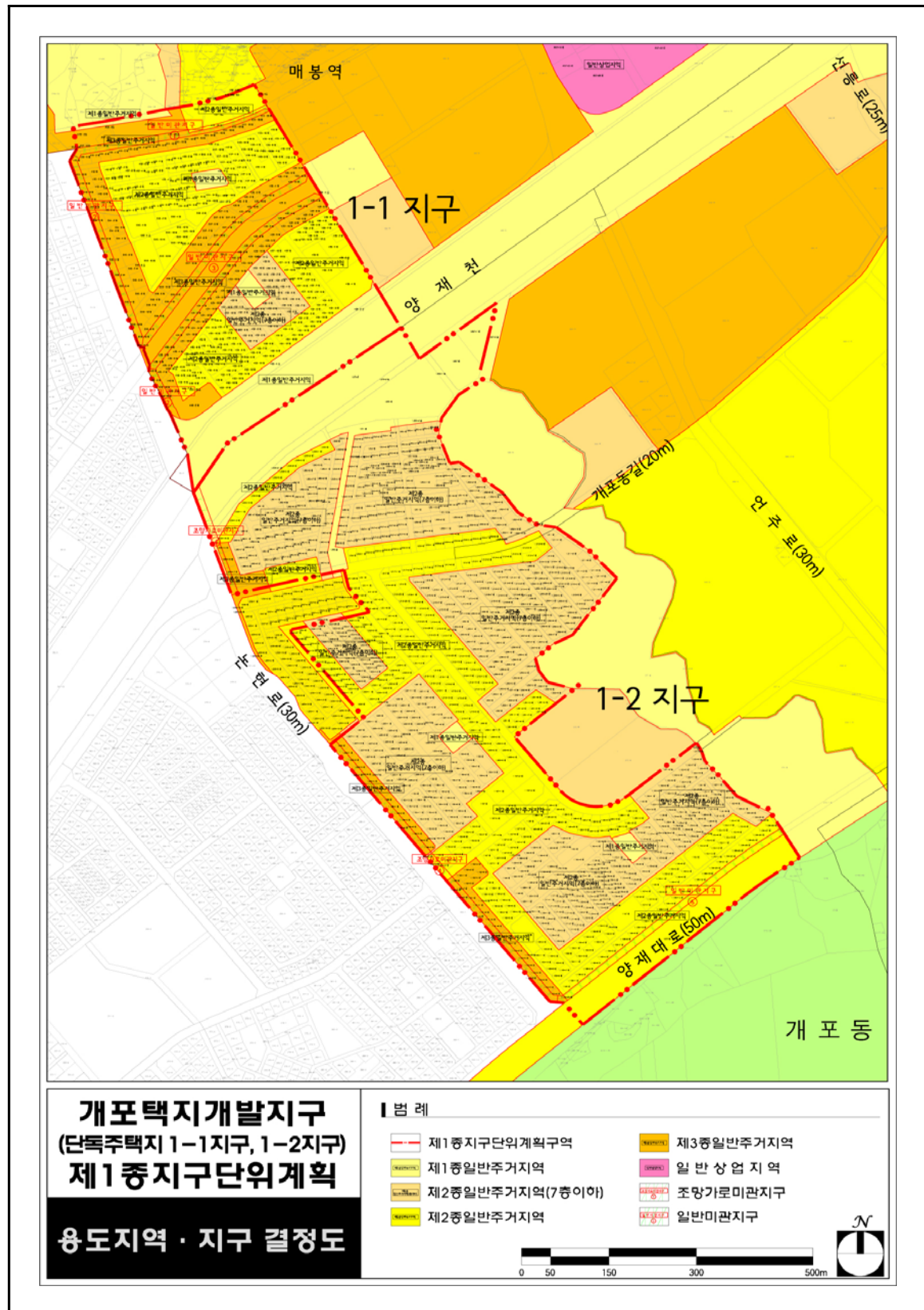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도(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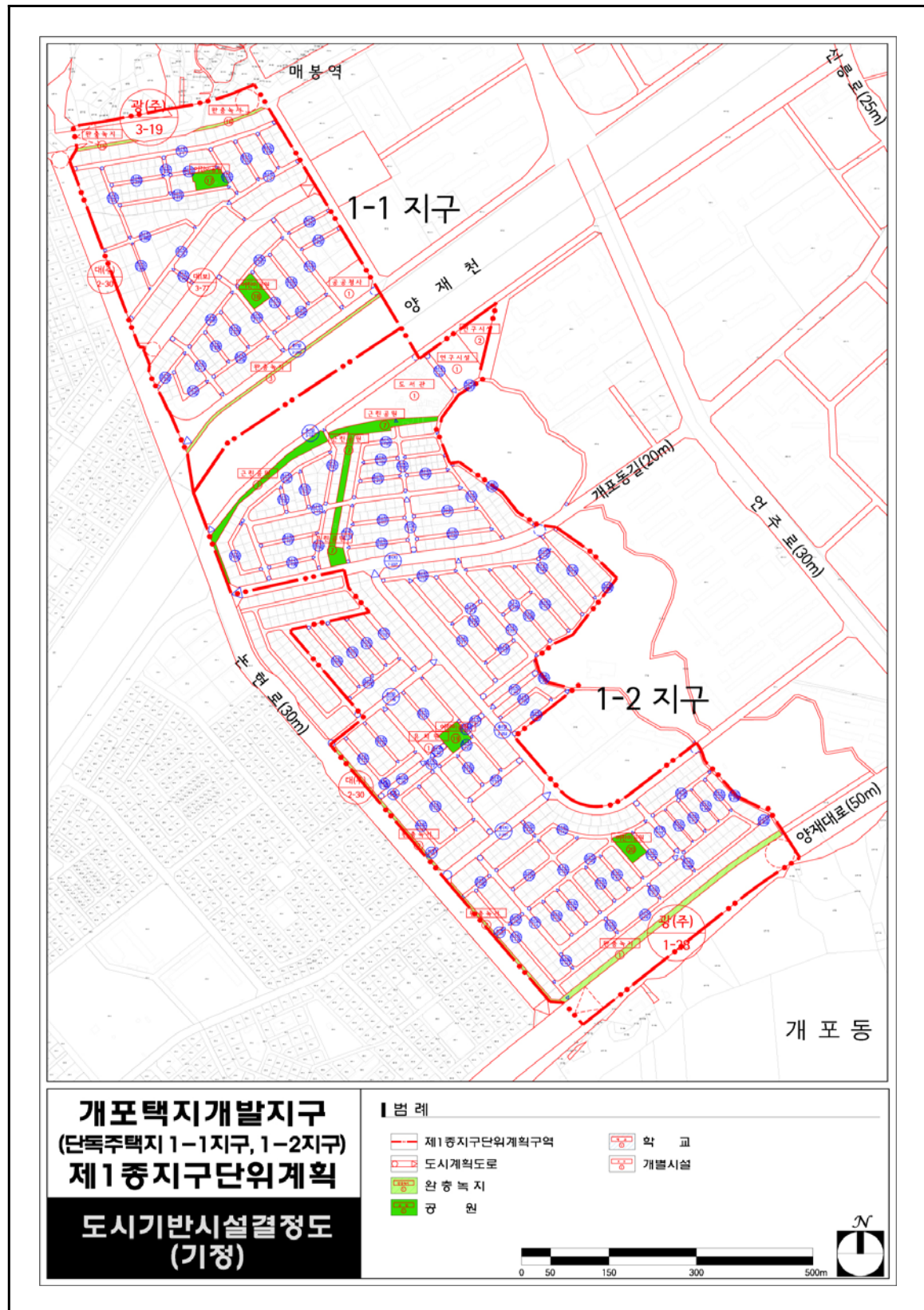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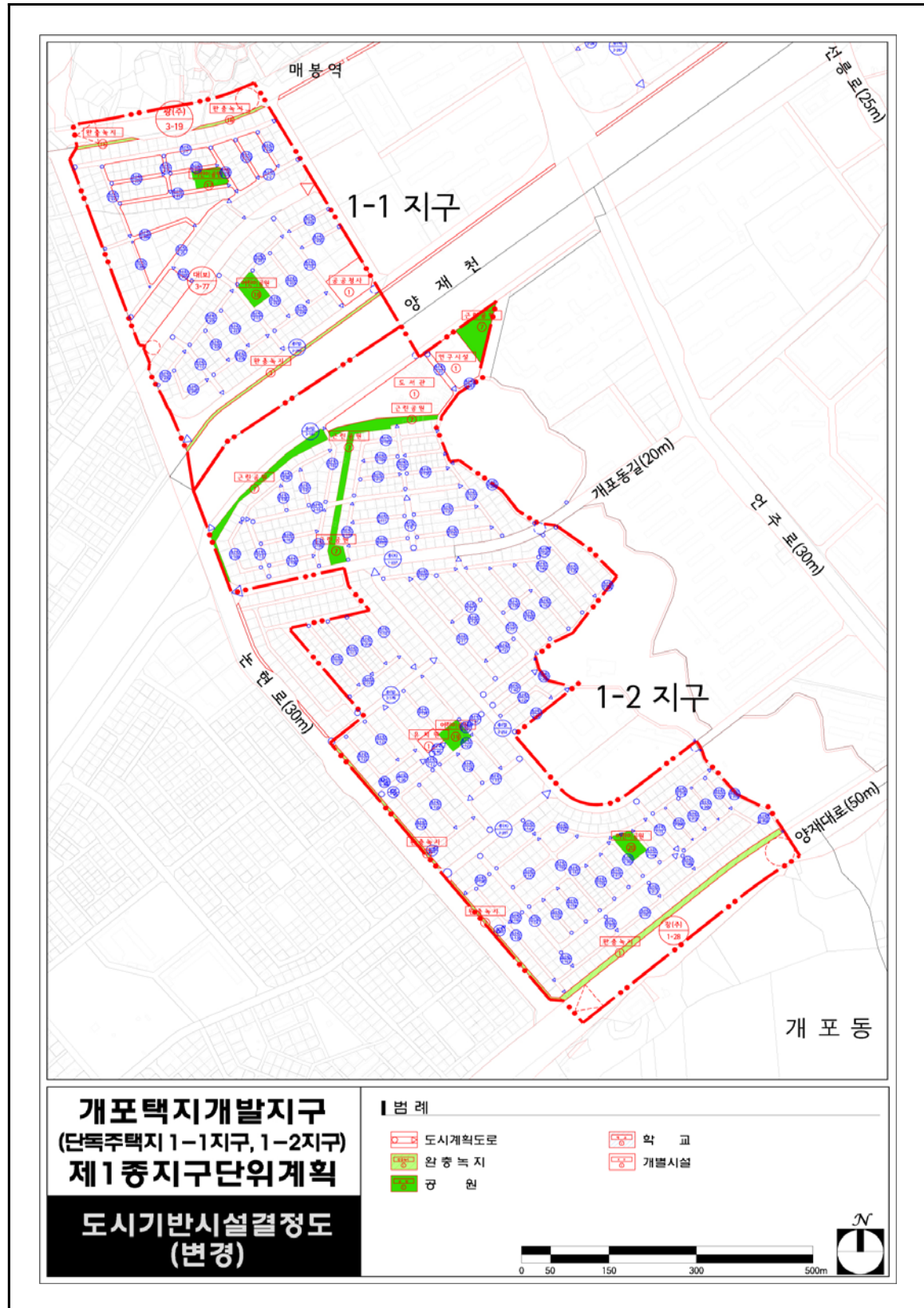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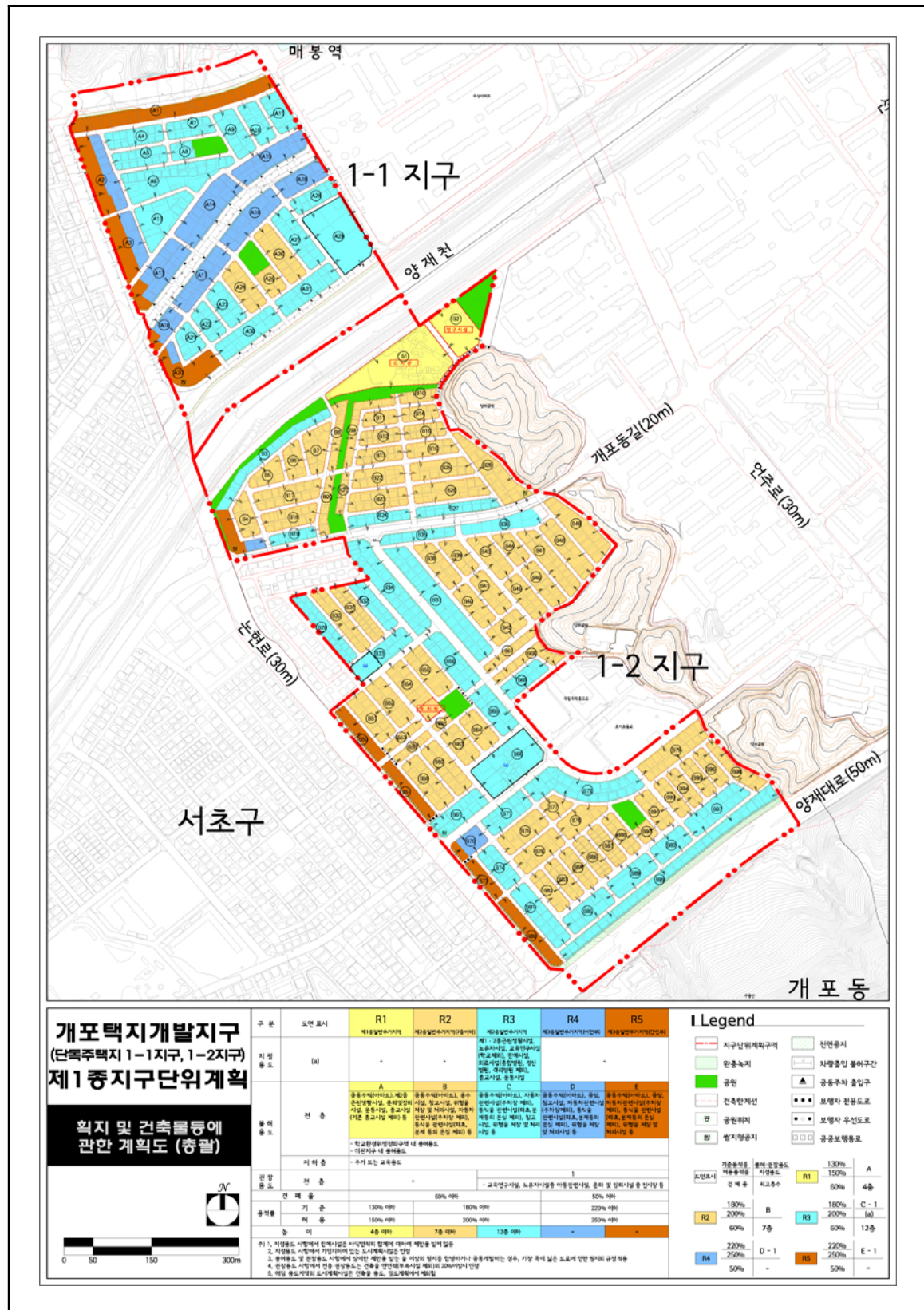
0 50 150 300 50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7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9.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신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1) 계획의 개요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준연도	목표연도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1,468,936.7	-	1,468,936.7	2006	2015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 대상지 특성에 부합하는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기반시설과 난개발을 방지하여 환경친화적인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함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68,936.7	-	1,468,936.7	100.0	
계 획 기 반 시 설	소 계	505,465.7	-	505,465.7	34.4	
	공공청사	4,687.0	-	4,687.0	0.3	
	문화/복지시설	9,479.9	-	9,479.9	0.7	
	학교시설	105,619.2	-	105,619.2	7.2	
	공원녹지	147,079.8	감) 1,660.1	145,419.7	9.9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획 기 반 시 설	공공공지	701.2	-	701.2	0.05	
	주차장	676.3	-	676.3	0.05	
	도 로	237,189.3	증) 1,660.1	238,849.4	16.2	
	철 도	33.0	-	33.0	-	
주 거 용 지	소 계	775,876.9	-	775,876.9	52.8	
	공동주택(아파트)	771,523.9	-	771,523.9	52.5	
	주상복합	4,353.0	-	4,353.0	0.3	
상업/업무		135,739.3	-	135,739.3	9.3	
기타 종교시설 등		51,854.8	-	51,854.8	3.5	

※ 신길6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에 따른 변경

2) 인구·주택수용계획 : 51,097인 / 18,926세대

구 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존치지역	개별주택	1,987	-	1,987	5,364	-	5,364	존치지역 및 상업지역 주택
	공동주택	2,621	-	2,621	7,076	-	7,076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 계	14,221	증) 97	14,318	38,396	증) 261	38,657	
	40㎡이하	963	증) 6	969	2,599	증) 16	2,615	
	40㎡~60㎡	3,357	증) 77	3,434	9,065	증) 207	9,272	
	60㎡~85㎡	5,864	증) 128	5,992	15,831	증) 345	16,176	
	85㎡초과	4,037	감) 114	3,923	10,901	감) 307	10,594	
계		18,829	증) 97	18,926	50,836	증) 261	51,097	

※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규정 적용에 따른 세대수 증가

※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 반영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나.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명시(변경없음)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	115,099.1	-	115,099.1	
교육 시설	소 계	7	105,619.2	-	105,619.2	
	초등학교	4	95,620.0	-	95,620.0	기설치(대영중·고 면적 포함)
	중학교	2	9,999.2	-	9,999.2	1개소 신설, 1개소 기설치 (대영중은 대영초에 포함)
	고등학교	1	-	-	-	기설치(대영고는 대영초에 포함)
문화 · 복지 시설	소 계	6	9,479.9	-	9,479.9	
	문화시설	2	2,235.6	-	2,235.6	신설
	도서관	1	2,300.3	-	2,300.3	신설(구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3	4,944.0	-	4,944.0	2개소 신설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녹지 시설	소 계	62	65	144,597.8	감) 983.8	143,614.0	
	근린공원	5	5	66,054.5	감) 22.6	66,031.9	기 설치 2개소, 3개소 신설, (면적 오기정정)
	어린이공원	3	3	7,078.0	-	7,078.0	기 설치 1개소, 2개소 신설
	소공원	16	19	31,188.8	증) 698.9	31,887.7	19개소 신설, (면적 오기정정)
	녹 지	38	38	40,276.5	감) 1,660.1	38,616.4	38개소 신설

※ 신길6촌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에 따른 녹지시설 변경

※ 신길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신길8재정비촉진계획 내용 중 공원면적 오기 정정

5) 교통계획 : 생략 (결정도서로 같음)

6) 경관계획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나.6) 경관계획)에 명시(변경없음)

7)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 고
합 계			896,264.7		기 정
합 계			896,264.7		변 경
재정비 촉진구역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7-26일대	62,696.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05-69일대	61,971.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45-40일대	38,502.9	주택재개발사업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4914-9일대	52,112.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83-1일대	76,601.9	주택재개발사업	
	신길6존치정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510일대	36,266.0	주택재개발사업	기 정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510일대	36,266.0	주택재개발사업	변 경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039일대	93,728.5	주택재개발사업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63일대	32,168.1	주택재개발사업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40-16일대	73,135.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590일대	36,635.0	주택재건축사업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29-94일대	50,759.3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일대	52,716.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40-1일대	15,120.0	주택재건축사업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47-50일대	27,848.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76-1일대	105,733.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4-4일대	80,272.0	주택재개발사업	

※ 신길6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에 따른 변경

8)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신길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25호(2010.4.8)로 변경
- 신길4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5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69호(2010.7.15)로 변경
- 신길6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6,266	-	36,266	100.0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7층)	35,734	감) 35,734	-	-
	2종일반주거지역	289	증) 35,734	36,023	99.3
	3종일반주거지역	243	-	243	0.7

※ 신길6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에 따른 변경

-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47호(2009.9.10)로 변경
- 신길8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93호(2011.4.14)로 변경
- 신길9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1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3호(2009.8.13)로 변경
- 신길1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56호(2010.1.7)로 변경
-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14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15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16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9)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분	구역명	주 용 도	상한용적률 (%)	건폐율(%)	높이계획		비고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22 / 35	121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18 / 25	91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20 / 32	11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18 / 31	109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40%이하	60%이하	20 / 26	94	

구분	구역명	주 용 도	상한용적률 (%)	건폐율(%)	높이계획		비고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재정비 촉진구역	신길6존치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40%이하	60%이하	18 / 26	94	기정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0 / 26	94	변경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40%이하	60%이하	22 / 27	97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7%이하	60%이하	22 / 25	91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5%이하	60%이하	22 / 29	103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250%이하	50%이하	- / 26	94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2%이하	60%이하	19 / 25	91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40%이하	60%이하	19 / 29	103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250%이하	50%이하	- / 22	82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20 / 26	94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22 / 34	118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20 / 30	106	

※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높이계획 반영

※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상한용적률(300%)은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임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가이드라인'에 따름)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 분	구역 면적 (㎡)	기반시설면적(㎡)					비고
		계획 기반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2,696.0	14,996.0	996.0	6,394.0	-	7,606.0 (12.1%)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1,971.0	15,101.0	4,056.0	3,698.0	-	7,347.0 (11.9%)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8,502.9	7,723.0	1,121.0	1,621.0	-	4,981.0 (12.9%)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112.0	14,599.0	1,797.0	6,741.0	-	6,061.0 (11.6%)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6,601.9	17,136.1	470.0	4,805.0	-	11,861.1 (15.5%)	
신길6존치정비구역	36,266.0	10,576.0	897.0	4,489.0	-	5,190.0 (14.3%)	기정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6,266.0	10,576.0	1,441.0 (증) 544	3,945.0 (감) 544	-	5,190.0 (14.3%)	변경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3,728.5	21,524.1	439.0	4,003.0	4,200.0	12,882.1 (13.7%)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2,168.1	6,566.8	316.1	1,510.9	-	4,739.8 (14.7%)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3,135.0	20,032.0	3,442.0	7,162.0	-	9,428.0 (12.9%)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36,635.0	8,569.0	3,269.0	1,219.0	-	4,081.0 (11.1%)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0,759.3	10,996.7	1,493.0	2,564.0	-	6,939.7 (13.7%)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716.0	14,727.3	2,138.5	5,247.0	-	7,341.8 (13.9%)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15,120.0	2,569.0	247.0	547.0	-	1,775.0 (11.7%)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7,848.0	4,994.0	334.0	1,059.0	-	3,601.0 (12.9%)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5,733.0	23,417.0	3,867.0	6,792.0	-	12,758.0 (12.1%)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80,272.0	19,006.0	4,731.0	4,585.0	-	9,690.0 (12.1%)	
계	896,264.7	212,533.0	29,613.6	62,436.9	4,200.0	116,282.5 (13.0%)	기정
계	896,264.7	212,533.0	30,157.6 (증) 544	61,892.9 (감) 544	4,200.0	116,282.5 (13.0%)	변경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임대주택수	2,400	증) 17	2,417	-

※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추가공급

※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 반영

※ 세부적 기준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나.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에 명시

12)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 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사업구역	2007~2012			신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신길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신길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2단계 사업구역	2009~2014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3단계 사업구역	2011	2013.6이후	2015.12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단계별 추진계획은 각 단계의 총량의 범위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인지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

※ 단계별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적 운용방안은 영등포구에서 수립한 운용기준을 따름(4,000세대가 넘지 않는 범위 내)

1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에 명시(변경없음)

14)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나.14)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에 명시

가) 존치정비구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신길6존치정비구역이 2010년 촉진구역지정 요건에 충족되어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여 촉진계획 수립

나) 존치관리구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제1종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9.8))에 따름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구역별 정비계획

구 분	구역면적 (㎡)	대지면적 (㎡)	기준(계획)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비고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2,696.0	47,700.0	190	230	16.28	229.39	22 / 35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1,971.0	45,565.0	190	230	20.35	229.83	18 / 25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8,502.9	30,779.9	190	230	25이하	229.97이하	20 / 3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112.0	37,513.0	190	230	21.24	229.91	18 / 31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6,601.9	59,073.8	190	240	25이하	239.59이하	20 / 26	
신길6존치정비구역	36,266.0	25,690.0	190	240	24.26	239.90	18 / 26	기정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6,266.0	25,690.0	210	300	30.0이하	265.1이하	20 / 26	변경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3,728.5	70,576.7	190	240	25이하	239.98이하	22/27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2,168.1	24,914.3	190	237	25이하	236.99이하	22 / 25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3,135.0	52,267.0	190	235	16.42	234.55	22 / 29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36,635.0	28,066.0	210	250	20.32	249.71	- / 26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0,759.3	39,762.6	190	232	25이하	232이하	19 / 25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716.0	35,921.6	190	240	25이하	240이하	19 / 29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15,120.0	12,551.0	210	250	20.84	248.61	- / 22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7,848.0	22,854.0	190	230	18.87	228.91	20 / 26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5,733.0	79,514.0	190	230	15.85	229.63	22 / 34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80,272.0	60,107.0	190	230	15.97	229.82	20 / 30	

○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합 계	일반분양(전용면적)				임대주택(전용면적)				비고
		소 계	85㎡초과	60~85㎡	60㎡이하	소 계	40㎡이하	40~50㎡	50~60㎡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85	806	292	394	120	179	74	74	31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41	771	280	377	114	170	71	71	28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58	539	150	305	84	119	54	52	13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76	637	231	312	94	139	58	58	23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236	1,006	364	530	112	230	108	94	28	
신길6촌치정비구역	556	455	164	223	68	101	42	42	17	기정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35 (증)79	520 (증)65	163 (감)1	221 (감)2	136 (증)68	115 (증)14	47 (증)5	47 (증)5	21 (증)4	변경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521	1,391	397	661	333	130	55	54	21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33	435	129	250	56	98	43	40	15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104	905	330	442	133	199	83	83	33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646	561	112	281	168	85	-	-	85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836	685	249	335	101	151	61	71	19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93	649	228	318	103	144	61	61	22	기정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811 (증)18	664 (증)15	115 (감)113	448 (증)130	101 (감)2	147 (증)3	62 (증)1	61 (-)	24 (증)2	변경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266	217	104	87	26	49	-	-	49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75	389	141	190	58	86	36	36	14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649	1,352	493	660	199	297	124	124	49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246	1,023	373	499	151	223	93	93	37	
합 계	14,221	11,821	4,037	5,864	1,920	2,400	963	953	484	기정
합 계	14,318 (증)97	11,901 (증)80	3,923 (감)114	5,992 (증)128	1,986 (증)66	2,417 (증)17	969 (증)6	958 (증)5	490 (증)6	변경
비율(%)	100.0	83.1	28.4	41.2	13.5	16.9	6.8	6.7	3.4	기정
비율(%)	100.0	83.1	27.4 (감)1.0	41.8 (증)0.6	13.9 (증)0.4	16.9	6.8	6.7	3.4	변경

가. 신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에 명시

나. 신길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에 명시

다. 신길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에 명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25호(2010.4.8)로 변경

라.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에 명시

마.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76,601.9	-	76,601.9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735.5	-	13,735.5	17.9	-
	도 로	5,815.4	(증) 14.1	5,829.5	7.6	기부채납
	공 원	3,606.1	-	3,606.1	4.7	
	녹 지	3,651.7	(감) 14.1	3,637.6	4.7	
	보행자도로	662.3	-	662.3	0.9	
택 지 (획 지)	소 계	62,866.4	-	62,866.4	82.1	-
	5-1	45,490.4	-	45,490.4	59.4	공동주택
	5-2	13,583.4	-	13,583.4	17.7	공동주택
	5-3	1,777.2	-	1,777.2	2.3	학교시설 (기부채납, 대토 392㎡)
	5-4	958.7	-	958.7	1.3	
	5-5	29.1	-	29.1	0.1	
	5-6	1,027.6	-	1,027.6	1.3	문화시설 (기부채납)

※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출입구 조정에 따른 변경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34	25	간선 도로	1,000 (591)	신길동382 (신길동 740)	신길동 235-2	일반 도로		서고378 (78.7.31)	가마산길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359 (173)	신길동 638 (신길동 518)	신길동 2093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변경	중로	2	2	15	집산 도로	357 (173)	신길동 638 (신길동 518)	신길동 2093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6구역 출입구 선형정리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263	신길동 518	신길동 167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3	5	4	특수 도로	165	신길동 541	신길동 1637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445 (07.11.29)	

※ 연장 및 위치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세부적인 구역편입현황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출입구 조정에 따른 변경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	어린이 공원	신길동 541 일대	1,981.0	-	1,981.0	서고445 (07.11.29)	-
기정	5	-	소공원	신길동 2296 일대	1,479.9	-	1,479.9	서고445 (07.11.29)	-
기정	6	-	소공원	신길동 2306 일대 (신길동 2305 일대)	1,636.2 (145.2)	-	1,636.2 (145.2)	서고445 (07.11.29)	6구역: 1,491㎡

※ 위치 및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다)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964 일대	3,390.2		3,390.2	서고445 (07.11.29)	-
변경	1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77 일대	1,789.1 (29.1)	감) 385	1,404.1 (29.1)	서고445 (07.11.29)	6구역: 1,375㎡
변경	1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560 일대	1,294.4 (232.4)	감) 447.1 (감) 14.1)	847.3 (218.3)	서고445 (07.11.29)	6구역: 629㎡

※ 위치 및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출입구 조정에 따른 변경

라)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신길7동 550 일대 (신길동 1588, 531, 1190)	22,273.0 (2,765)	-	22,273.0 (2,765)	서교위76 (88.12.21)	대방

※ 위치 및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마) 문화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문화시설	-	신길동 549일대	1,027.6	-	1,027.6	서교445 (07.11.29)	

※ 위치 및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7)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8)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0)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규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510번지 일대	-	증) 36,266	36,266	

※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6,266	-	36,266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0,520	-	10,520	29.0	-
	도 로	3,736	(증) 1,646	5,382	14.8	기부채납
	공 원	1,491	-	1,491	4.1	
	녹 지	5,229	(감) 1,646	3,583	9.9	
	공공공지	64	-	64	0.2	
택 지 (획 지)	소 계	25,746	-	25,746	71.0	-
	6-1	25,690	-	25,690	70.8	공동주택
	6-2	56	-	56	0.2	학교 (기부채납)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359 (210)	신길동 638	신길동 2093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변경	중로	2	2	15	집산 도로	357 (210)	신길동 638	신길동 2093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선형정리
기정	소로	2	5	8	집산 도로	294 (180)	신길동 621-5 (신길동 510-2)	신길동 2363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
변경	중로	3	6	12	집산 도로	291	신길동 621-5 (신길동 510-2)	신길동 2363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폭원확장
신설	중로	3	7	12	집산 도로	112	신길동 625-3	신길동 626	일반도로	-	-	폭원확장 및 시설번호부여

※ 연장 및 위치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세부적인 구역편입현황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나)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	소공원	신길동 2306 일대	1,636.2 (1,491)	-	1,636.2 (1,491)	서고445 (07.11.29)	5구역 :145.2㎡

※ 위치 및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다)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66 일대	1,360	감) 530	830.0	서고445 (07.11.29)	서고445 (07.11.29)
변경	1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77 일대	1,789.1 (1,760)	감) 385	1,404.1 (1,375)	서고445 (07.11.29)	서고445 (07.11.29)
변경	1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560 일대	1,294.4 (1,062)	감) 447.1 (감) 433)	847.3 (629)	서고445 (07.11.29)	서고445 (07.11.29)
변경	1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335 일대	1,047	감) 298	749.0	서고445 (07.11.29)	서고445 (07.11.29)

※ 위치 및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라)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6	공공공지	신길동 567 일대	269 (64)	-	269 (64)	서고445 (07.11.29)	-

※ 위치 및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마)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신길7동 550 일대 (신길동 568)	22,273.0 (56)	-	22,273.0 (56)	서교위76 (88.12.21)	대방

※ 위치 및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510번지 일대	150	-	150	법적기준 이상 확보
	주민공동시설		570	-	570	
	문고		100	-	100	
	보육시설		200	-	200	
	경로당		180	-	180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신길6 재정비촉진구역	36,266	-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510번지 일대	194	-	-	194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1)연면적(㎡)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 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신길6 존치 정비구역	36,266	6-1	25,690	영등포구 신길동 510번지 일대	61,630.3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26	239.90	18 / 2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구 분	합 계	분 양(전용면적, ㎡)				임 대(전용면적, ㎡)			
					소 계	109.50	84.94	59.95	소 계	39.98	49.70	59.95
			세대수	556	455	164	223	68	101	42	42	17
			비율	100.00	81.84	29.50	40.11	12.23	18.16	7.55	7.55	3.06
			• 건설비용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용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 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신길6 재정비 촉진구역	36,266	6-1	25,690	영등포구 신길동 510번지 일대	68,104.19 이하 중) 6,473.8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0 이하	265.1 이하	20 / 26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구 분	합 계	분 양(전용면적)				임 대(전용면적)		
				소 계	85㎡초과	60~85㎡	60㎡이하	소 계	40㎡이하	40~50㎡	50~60㎡	
세대수				635 중) 79	520 중) 65	163 감) 1	221 감) 2	136 중) 68	115 중) 14	47 중) 5	47 중) 5	21 중) 4
비율				100.00	81.89 중) 0.05	25.67 감) 3.83	34.80 감) 5.31	21.42 중) 9.19	18.11 감) 0.05	7.40 감) 0.15	7.40 감) 0.15	3.31 중) 0.25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1)연면적(㎡)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 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건설비용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용 <table><tr><td>평 형</td><td>전용면적 40㎡이하</td><td>전용면적 40~50㎡이하</td><td>전용면적 50~60㎡이하</td></tr><tr><td>배분비</td><td>40~50%</td><td>40~50%</td><td>10~20%</td></tr></table>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부분은 17%이상 확보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길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주1)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기준용적률 20%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부분은 주택규모 60㎡(전용면적) 이하로 건설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름)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조합	-	-	-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	면적(㎡)	획지			비고
		구분	위치	면적(㎡)	
6	25,746	6-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510번지 일대	25,690	공동주택
		6-2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568번지 일대	56	학교편입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	-	-	6,880.82	101	40㎡이하, 40~50㎡, 50㎡~60㎡	기정
-	-	-	7,736.9 이상	115	40㎡이하, 40~50㎡, 50㎡~60㎡	변경

※ 임대주택 건립비용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 등 배분
- ※ 기준용적률 20%상향에 따른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부분은 17% 이상 확보
- ※ 임대주택 연면적은 기준용적률 20%상향으로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임
- ※ 임대주택 평형배분 계획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사. 신길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에 명시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47호(2009.9.10)로 변경

아. 신길8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에 명시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93호(2011.4.14)로 변경

자. 신길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에 명시

차.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에 명시

카.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에 명시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3호(2009.8.13)로 변경

타.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52,716.0	-	52,716.0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52,716.0	-	52,716.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1,837.3	-	11,837.3	22.5	-
	도 로	5,754.5	-	5,754.5	10.9	기부채납
	공 원	2,906.8	-	2,906.8	5.5	
	녹 지	3,113.1	-	3,113.1	5.9	
	공공공지	62.9	-	62.9	0.2	
택 지 (획 지)	소 계	40,878.7	-	40,878.7	77.5	-
	12-1	35,921.6	-	35,921.6	68.1	공동주택
	12-2	2,067.1	-	2,067.1	3.8	종교시설
	12-3	2,890.0	-	2,890.0	5.5	복지시설(기부채납)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	13	집산 도로	314 (250)	신길동 337-390 (신길동 337-268)	신길동 335-17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71	12	집산 도로	471 (275)	신길동 426-3 (신길동 336-239)	신길동 336-2	일반 도로	-	서고105 (83.2.24)	-
기정	중로	3	63	12~20	집산 도로	268 (20)	신길동 335-17	신길동 342-88 (신길동 335-24)	일반 도로	-	서고683 (87.9.24)	-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321 (35)	신길동 253-318 (신길동 142-18)	신길동 337-255 (신길동 337-23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7	8	집산 도로	243	신길동 337-209	신길동 253-330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

※ 연장 및 위치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세부적인 구역편입현황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나) 공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신길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426-3 (신길동 425-31)	19,503.9 (255.9)	-	19,503.9 (255.9)	건고258 (82.7.12)	S-
기정	12	-	소공원	신길동 336-317 일대	2,650.9	-	2,650.9	서고445 (07.11.29)	-

※ 위치 및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다)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6 일대	306.4	감) 23.7	282.7	서고445 (07.11.29)	-
변경	2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04 일대	1,436.5	증) 23.7	1,460.2	서고445 (07.11.29)	-
기정	2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57 일대	787.6	-	787.6	서고445 (07.11.29)	-
기정	2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400 일대	582.6	-	582.6	서고445 (07.11.29)	-

※ 위치 및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

라) 공공공지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7	공공공지	신길동 425-28	62.9	-	62.9	서고445 (07.11.29)	-

마)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339-34 일대	2,890.0	-	2,890.0	서고445 (07.11.29)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공동 이용시설	관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320	-	320	법적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함
	주민공동시설		1,090	-	1,090	
	문 고		100	-	100	
	보육시설		200	-	200	
	경로당		180	-	180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길12 재정비촉진구역	52,716.0	-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 번지 일대	413	-	-	413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1)연면적(㎡)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신길12 재정비 촉진구역	52,716.0	12-1	35,921.6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86,211.84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40이하	19이하/ 29이하		
			12-2	2,067.1	영등포구 신길동 337-312번지 일대	4,134.2이하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12-3	2,890	영등포구 신길동 339-36번지 일대	5,780이하	복지시설	60이하	20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합 계	분 양(전용면적)			임 대(전용면적)				
			세대수	793	소 계	85㎡초과	60~85㎡	60㎡이하	소 계	40㎡이하	40~50㎡	50~60㎡
			비율	100.00	81.84	28.75	40.10	12.99	18.16	7.69	7.69	2.78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율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변경	신길12 재정비 촉진구역	52,716.0	12-1	35,921.6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86,037.71이하 (감)174.1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40이하	19이하/ 29이하		
			12-2	2,067.1	영등포구 신길동 337-312번지 일대	4,134.2이하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12-3	2,890	영등포구 신길동 339-36번지 일대	5,780이하	복지시설	60이하	200이하	-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1)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구분	합계	분양(전용면적)				임대(전용면적)			
					소계	85㎡초과	60~85㎡	60㎡이하	소계	40㎡이하	40~50㎡	50~60㎡
			세대수	811 (중)18	664 (중)15	115 (감)113	448 (중)130	101 (감)2	147 (중)3	62 (중)1	61 -	24 (중)2
			비율	100.00	81.87 (중)0.03	14.18 (감)14.57	55.24 (중)15.14	12.45 (감)0.54	18.13 (감)0.03	7.64 (감)0.05	7.52 (감)0.17	2.97 (중)0.19
			• 건설비용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용									
			평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길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주1)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

(6)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조합	-	-	-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구	면적(㎡)			획지					비고
				구분	위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12	40,878.7	-	40,878.7	12-1	신길동 336-383 일대	35,921.6	-	35,921.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2	신길동 337-312 일대	2,067.1	-	2,067.1	종교시설
				12-3	신길동 339-1일대	2,890.0	-	2,890.0	복지시설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	-	-	9,677.48이상	144	40㎡이하, 40~50㎡이하, 50~60㎡이하	기 정
-	-	-	9,677.48이상	147 (증)3	40㎡이하, 40~50㎡이하, 50~60㎡이하	변 경

※ 임대주택 건립비율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임대주택 평형배분 계획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파.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에 명시

하.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에 명시

거.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에 명시

너.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에 명시

16)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68,936.7	-	1,468,936.7	100.0
주거 지역	소 계		1,420,816.7	-	1,420,816.7	96.7
	일 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3,607.0	-	33,607.0	2.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58,846.0	감) 38,724	220,122.0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894,912.7	증) 38,724	933,636.7	63.6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174.0	-	196,174.0	13.3
	준주거지역		37,277.0	-	37,277.0	2.5
근린상업지역			48,120.0	-	48,120.0	3.3

○ 변경사유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510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	38,724	- 재정비촉진계획의 실현성 강화 및 주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적정개발규모 유도를 위한 합리적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코자 함 - 촉진구역 주변 도로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조정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54-7번지 일대	207,847	-	207,847	서고 제2011-258호 (2011.9.8)

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53	35	간선 도로	1,550 (795)	문래동 광장 (신길동 363-6)	신길동 광장 (신길동 426)	일반 도로		건고393 (78.12.7)	도림로
기정	대로	2	54	30	간선 도로	3,050 (710)	신길동 대로3-28	구로공단 (신길동 347-65)	일반 도로		건고393 (78.12.7)	가마산길
기정	대로	3	23	25	보조 간선	4,250	신길동 (대1-6)	구로동 (중1-220)	일반 도로		건고542 (71.9.13)	도신로
기정	대로	3	28	25~ 30	주간 선로	2,780 (1,203)	영등포동 (신길동 220-35)	신도림동 (신길동 3599-3)	일반 도로		건고177 (62.12.8)	신길로
기정	대로	3	134	25	간선 도로	1,000 (591)	신길동382 (신길동 740)	신길동 235-2	일반 도로		서고378 (78.7.31)	

※ 연장 및 위치내()는 촉진지구내 수치임. 세부적인 구역편입현황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인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14	신길동 337-390	신길동 335-17	일반 도로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359	신길동 638	신길동 209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변경	중로	2	2	15	집산 도로	357	신길동 638	신길동 209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선형정리
기정	중로	2	3	15	집산 도로	398	신길동 222-4	신길동 318-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4	15~1 8	집산 도로	110	신길동 335-23	신길동 325-49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32	15	집산 도로	293	신길동 325-78	신길동 296-12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중로	2	34	13.5 ~15	보조 간선	1,650	신길동 115-1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건고2493 (66.6.21)	선형(폭)변경: B=15→13.5m L=100m (신길동 2001-3~2001-5)
기정	중로	2	36	15	보조 간선	1,200 (310)	영등포동 634-1 (신길동 289-6)	신길동 321-13	일반 도로		건고177 (62.12.8)	
기정	중로	2	37	15	집산 도로	152	신길동 318-2	신길동 314-38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중로	2	108	15	집산 도로	572	신길동 136	신길동 223-33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중로	2	151	15	집산 도로	571	신길동 2099	신길동 3517	일반 도로		서고156 (91.5.31)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46	신길동 205-84	신길동 159-35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544	신길동 1795-31	신길동 209-98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3	12~ 14	집산 도로	280	신길동 2857	신길동 318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263	신길동 518	신길동 167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78	신길동 281-20	신길동 287-1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63	12~2 0	집산 도로	268	신길동 335-17	신길동 342-88	일반 도로		서고683 (87.9.24)	
기정	중로	3	71	12	집산 도로	471	신길동 426-3	신길동 336-2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기정	중로	3	152	12	집산 도로	299	신길동 3183-28	신길동 242-14	일반 도로		서고156 (91.5.31)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58	신길동 235-7	신길동 4902-5	일반 도로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131	신길동 255-1	신길동 232-81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1	3	10	집산 도로	221	신길동 287-42	신길동 298-28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1	4	10	집산 도로	269	신길동 329-57	신길동 263-5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 연장 및 위치내()는 축진지구내 수치임. 세부적인 구역편입현황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20	신길동 329-59	신길동 259-6	일반 도로		서고56 (06.2.16)	
기정	소로	1	6	10	특수 도로	22	신길동 232-65	신길동 254-5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258 (11.9.8)	
기정	소로	1	44	10	집산 도로	95	신길동 260-3	신길동 257-29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1	45	10	집산 도로	134	신길동 233-1	신길동 257-41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1	47	10	집산 도로	107	신길동 254-7	신길동 258-22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1	48	10	집산 도로	62	신길동 254-1	신길동 233-4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1	65	10	집산 도로	28	신길동 252-9	신길동 252-11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356	신길동 209-112	신길동 196-24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321	신길동 253-318	신길동 337-255	일반 도로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205	신길동 260-5	신길동 319-6	일반 도로		서고56 (06.2.16)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2	4	8	집산 도로	159	신길동 4934-3	신길동 205-1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5	8	집산 도로	294	신길동 621-5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변경	중로	3	6	12	집산 도로	291	신길동 621-5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폭원확장
기정	소로	2	6	8	집산 도로	128	신길동 2372	신길동 2340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7	8	집산 도로	243	신길동 337-209	신길동 253-330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8	8	집산 도로	155	신길동 424-3	신길동 340-1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9	8	집산 도로	54	신길동 162-19	신길동 155-6	일반 도로		서고7 (72.1.7)	신길1 생활권
기정	소로	2	12	8	집산 도로	180	신길동 237	신길동 242	일반 도로		서고51 (8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2	30	8	집산 도로	20	신길동 288-2	신길동 287-4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33	8	집산 도로	151	신길동 298-32	신길동 296-42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2	57	8	집산 도로	272	신길동 115-7	신길동 159-38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2	69	8~ 9.5	집산 도로	114	신길동 253-69	신길동 329-57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기정	소로	2	106	8	집산 도로	86	신길동 117-1	신길동 117-19	일반 도로			신길1 생활권, 재정비촉진지구내 기폐지[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109	8	집산 도로	341	신길동 4934-4	신길동 205-220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2	153	8	집산 도로	162	신길동 341-1	신길동 400-16	일반 도로		서고331 (90.9.2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1	4.5~6	집산 도로	208	신길동 355-535	신길동 294-8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3	2	4	집산 도로	146	신길동 4934-8	신길동 201-65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기정	소로	3	3	6	집산 도로	97	신길동 4903-21	신길동 232-1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3	4	6~8	집산 도로	110	신길동 2862	신길동 3580	일반 도로		서고228 (02.6.18)	
기정	소로	3	5	4	특수 도로	165	신길동 541	신길동 1637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445 (07.11.29)	보행자전용도로 반영
기정	소로	3	6	6	집산 도로	36	신길동 347-295	신길동 324-18	일반 도로		서고258 (11.9.8)	
기정	소로	3	7	4	집산 도로	170	신길동 342-161	신길동 342-142	일반 도로		서고258 (11.9.8)	
기정	소로	3	11	6	집산 도로	35	신길동 4902-16	신길동 4902-14	일반 도로		서고51 (8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3	38	6	집산 도로	151	신길동 323-2	신길동 325-65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3	46	6	집산 도로	30	신길동 262-54	신길동 236-37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3	64	6	집산 도로	25	신길동 254-4	신길동 252-5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3	70	6	집산 도로	32	신길동 252-9	신길동 253-126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3	102	6	집산 도로	47	신길동 197-6	신길동 196-6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3	104	6	집산 도로	40	신길동 160-28	신길동 159-62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신설	중로	3	7	12	집산 도로	112	신길동 625-3	신길동 626	일반 도로		-	폭원확장 및 시설번호 부여

※ 연장 및 위치내()는 축진지구내 수치임. 세부적인 구역편입현황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 변경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2	중로 2-2	-	신길6구역 주출입구 부근 선형정리
소로 2-5	중로 3-6	B=8 → 12m	대방초등학교, 지하철역과 연계 가능한 보행동선 확보
-	중로 3-7	B=8 → 12m	대방초등학교, 지하철역과 연계 가능한 보행동선 확보

(2) 철 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7호선)	성동구 화양6일대	온수동 산2-1일대	-	43,760	-	서고77 (93.3.18)	7호선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신풍역)	신길동 3599 일대	6,591	-	6,591	서고77 (93.3.18)	신풍역
기정	2	철도	고속철도 (보라매역)	신길동 508 일대	8,317.6	-	8,317.6	서고77 (93.3.18)	보라매역

(3) 주 차 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신길동 232-51 일원	2,977	-	2,977	영고51(03.10.2)	지하주차장
기정	2	주차장	신길동 236-10	676.3	-	676.3	서고258(11.9.8)	

(4) 공 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메나골	근린공원	신길동 895 일대	57,703.6	-	57,703.6	건고138 (77.7.9)	
기정	2	신길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426-3	19,503.9	-	19,503.9	건고258 (82.7.12)	
기정	3	-	근린공원	신길동 223-17 일대	10,259.0	-	10,259.0	서고445 (07.11.29)	
기정	4	-	근린공원	신길동 243-58 일대	14,123.4	-	14,123.4	서고445 (07.11.29)	
기정	5	-	근린공원	신길동 314-33 일대	9,089.0	-	9,089.0	서고445 (07.11.29)	
기정	1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신길동 337-88	1,633.0	-	1,633.0	-	
기정	2	-	어린이 공원	신길동 541 일대	1,981.0		1,981.0	서고445 (07.11.29)	
기정	3	-	어린이 공원	신길동 281-6 일대	3,464.0	-	3,464.0	서고445 (07.11.29)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	소공원	신길동 202-73 일대	5,901.0	-	5,901.0	서고445 (07.11.29)	
기정	2	-	소공원	신길동 205-63 일대	1,015.0	-	1,015.0	서고445 (07.11.29)	
기정	3	-	소공원	신길동 201-84 일대	513.0	-	513.0	서고445 (07.11.29)	
기정	4	-	소공원	신길동 4903-16 일대	1,188.0	-	1,188.0	서고445 (07.11.29)	
기정	5	-	소공원	신길동 2296 일대	1,479.9	-	1,479.9	서고445 (07.11.29)	
기정	6	-	소공원	신길동 2306 일대	1,636.2	-	1,636.2	서고445 (07.11.29)	
기정	7	-	소공원	신길동 2135 일대	1,024.1	-	1,024.1	서고445 (07.11.29)	
기정	8	-	소공원	신길동 3584 일대	4,046.3	-	4,046.3	서고445 (07.11.29)	
기정	9	-	소공원	신길동 3126 일대	2,348.5	-	2,348.5	서고445 (07.11.29)	
기정	10	-	소공원	신길동 3403 일대	2,133.0	-	2,133.0	서고445 (07.11.29)	
기정	11	-	소공원	신길동 3591 일대	527.0	-	527.0	서고445 (07.11.29)	
기정	12	-	소공원	신길동 336-317 일대	2,650.9	-	2,650.9	서고445 (07.11.29)	
기정	13	-	소공원	신길동 335-10 일대	1,661.4	-	1,661.4	서고445 (07.11.29)	
기정	14	-	소공원	신길동 335-34 일대	2,003.4	-	2,003.4	서고445 (07.11.29)	
기정	15	-	소공원	신길동 285-9 일대	912.0	-	912.0	서고445 (07.11.29)	
기정	16	-	소공원	신길동 279-1 일대	1,279.0	-	1,279.0	서고445 (07.11.29)	
기정	17	-	소공원	신길동 296-65 일대	331.0	-	331.0	서고258 (11.9.8))	
기정	18	-	소공원	신길동 159-35 일대	433.0	-	433.0	서고258 (11.9.8))	
기정	19	-	소공원	신길동 3599 일대	805.0	-	805.0	서고258 (11.9.8))	

(5) 녹지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9-1 일대	1,004.0	-	1,004.0	서고445 (07.11.29)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5-163 일대	1,000.0	-	1,000.0	서고445 (07.11.29)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5-143 일대	803.0	-	803.0	서고445 (07.11.29)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99-31 일대	1,701.0	-	1,701.0	서고445 (07.11.29)	
기정	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2-125 일대	614.0	-	614.0	서고445 (07.11.29)	
기정	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6-20 일대	568.0	-	568.0	서고445 (07.11.29)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2-109 일대	726.3	-	726.3	서고445 (07.11.29)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6-18 일대	709.8	-	709.8	서고445 (07.11.29)	
기정	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0-6 일대	1,274.3	-	1,274.3	서고445 (07.11.29)	
기정	1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2-9 일대	731.7	-	731.7	서고445 (07.11.29)	
기정	1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4921-1 일대	2,722.0	-	2,722.0	서고445 (07.11.29)	
기정	1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964 일대	3,390.2	-	3,390.2	서고445 (07.11.29)	
변경	1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66 일대	1,360	감) 530	830.0	서고445 (07.11.29)	
변경	1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77 일대	1,789.1	감) 385	1,404.1	서고445 (07.11.29)	
변경	1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560 일대	1,294.4	감) 447.1	847.3	서고445 (07.11.29)	
변경	1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335 일대	1,047	감) 298	749.0	서고445 (07.11.29)	
기정	1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121 일대	1,226.6	-	1,226.6	서고445 (07.11.29)	
기정	1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241 일대	1,621.0	-	1,621.0	서고445 (07.11.29)	
기정	1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88 일대	1,210.7	-	1,210.7	서고445 (07.11.29)	
기정	2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35 일대	314.5	-	314.5	서고445 (07.11.29)	
기정	2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83-156 일대	811.2	-	811.2	서고445 (07.11.29)	
기정	2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516 일대	1,699.0	-	1,699.0	서고445 (07.11.29)	
기정	2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491 일대	535.0	-	535.0	서고445 (07.11.29)	
기정	2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94 일대	638.0	-	638.0	서고445 (07.11.29)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40-1 일대	1,602.0	-	1,602.0	서고445 (07.11.29)	
변경	2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6 일대	306.4	(감) 23.7	282.7	서고445 (07.11.29)	
변경	2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04 일대	1,436.5	(증) 23.7	1,460.2	서고445 (07.11.29)	
기정	2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57 일대	787.6	-	787.6	서고445 (07.11.29)	
기정	2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400 일대	582.6	-	582.6	서고445 (07.11.29)	
기정	3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6 일대	170.7	-	170.7	서고445 (07.11.29)	
기정	3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5-43 일대	250.0	-	250.0	서고445 (07.11.29)	
기정	3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9 일대	1,295.9	-	1,295.9	서고445 (07.11.29)	
기정	3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5-94 일대	409.0	-	409.0	서고445 (07.11.29)	
기정	3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1-3 일대	1,250.0	-	1,250.0	서고445 (07.11.29)	
기정	3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8-3 일대	664.0	-	664.0	서고445 (07.11.29)	
기정	3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68-3 일대	1,277.0	-	1,277.0	서고445 (07.11.29)	
기정	3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76-44 일대	920.0	-	920.0	서고445 (07.11.29)	
기정	3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24-20 일대	534.0	-	534.0	서고445 (07.11.29)	

□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연결녹지	면적 : 감) 530㎡ - 기정 : 1,360.0㎡ - 변경 : 830.0㎡	도로 확폭에 따른 연결녹지 폭원 축소 (17m→13m)
14	연결녹지	면적 : 감) 385㎡ - 기정 : 1,789.1㎡ - 변경 : 1,404.1㎡	도로 확폭에 따른 연결녹지 폭원 축소 (17m→13m)
15	연결녹지	면적 : 감) 447.1㎡ - 기정 : 1,294.4㎡ - 변경 : 847.3㎡	도로 확폭에 따른 연결녹지 폭원 축소 (17m→13m)
16	연결녹지	면적 : 감) 298㎡ - 기정 : 1,047.0㎡ - 변경 : 749.0㎡	도로 확폭에 따른 연결녹지 폭원 축소 (17m→13m)
26	연결녹지	면적 : 감) 23.7㎡ - 기정 : 306.4㎡ - 변경 : 282.7㎡	단지 출입구 위치 조정에 따라 녹지 일부조정 (증감 23.7㎡)
27	연결녹지	면적 : 증) 23.7㎡ - 기정 : 1,436.5㎡ - 변경 : 1,460.2㎡	

(6)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공공공지	신길동 253-312 일대	153.0	-	153.0	-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14	공공공지	신길동 201-65	37.0	-	37.0	서고445 (07.11.29)	
기정	15	공공공지	신길동 202-28	382.0	-	382.0	서고445 (07.11.29)	
기정	16	공공공지	신길동 567 일대	269.0	-	269.0	서고445 (07.11.29)	
기정	17	공공공지	신길동 425-28	62.9	-	62.9	서고445 (07.11.29)	

(7) 시 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시장	정기시장	신길동 255-9	2,580.0	-	2,580.0	서고370 (83.7.20)	신영 사려가
기정	2	시장	정기시장	신길동 259-4외 6	781.0	-	781.0	서고5 (83.1.7)	신동

(8)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신길동 253-251	2,980.0	-	2,980.0	서고127 (97.11.10)	대림 (변전시설)

(9)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공 청사	-	신길동 223-7 일대	1,444.0	-	1,444.0	서고445 (07.11.29)	신길4 동주민센터
기정	2	공공 청사	-	신길동 302-5 일대	1,561.0	-	1,561.0	서고445 (07.11.29)	신길3 동주민센터
기정	3	공공 청사	-	신길동 232-79 일대	163.0	-	163.0	서고445 (07.11.29)	파출소
기정	4	공공 청사	-	신길동 340-4 일대	118.0	-	118.0	서고445 (07.11.29)	파출소
기정	5	공공 청사	-	신길동 349-3 일대	101.0	-	101.0	서고445 (07.11.29)	파출소

(10) 학 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신길4동 210	21,940.0	-	21,940.0	서고373 (78.7.27)	우신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신길7동 550 일대	22,273.0	-	22,273.0	서교위76 (88.12.21)	대방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신길5동 341-1	32,344.0	-	32,344.0	서고683 (87.9.24)	대영
	4	학교	중학교	신길5동 342-49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46 (85.7.10)	대영
	5	학교	고등학교	신길5동 342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6 (85.7.10)	대영
기정	6	학교	초등학교	신길3동 285-1	19,063.0	-	19,063.0	서교위76 (88.12.21)	도림
기정	7	학교	중학교	신길동 2064 일대	9,999.2	-	9,999.2	서고445 (07.11.29)	

(11) 문화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문화시설	-	신길동 158-20 일대	1,208.0	-	1,208.0	서고445 (07.11.29)	
변경	2	문화시설	-	신길동 549 일대	1,027.6	-	1,027.6	서고445 (07.11.29)	

(12) 도 서 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도서관	신길동 252-11 일대	2,300.3	-	2,300.3	서고445 (07.11.29)	구립 도서관

(1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232-51 일원	873.0	-	873.0	영고51 (03.10.2)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339-34 일대	2,890.0	-	2,890.0	서고445 (07.11.29)	
기정	3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224-24 일대	1,181.0	-	1,181.0	서고445 (07.11.29)	

- 17) 광고물 관리계획 : 「신길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7) 광고물관리계획)에 명시(변경없음)
- 1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8)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변경없음)
- 19) 방재계획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19) 방재계획)에 명시(변경없음)
- 20) 정보화계획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20) 정보화계획)에 명시(변경없음)
- 21) 에너지순환계획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21) 에너지순환계획)에 명시(변경없음)
- 22) 특성화계획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I .나.22) 에너지순환계획)에 명시(변경없음)

22) 기 타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17	C	신길동	200-2	6.3	190%	-	60%	2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신길 1구역
기정	18	C	신길동	208-30	6.1	190%	-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신길 2구역
기정	19	C	신길동	144	3.8	190%	-	60%	2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신길 3구역
기정	20	C	신길동	336-383	5.3	190%	-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신길 12구역
기정	26	C	신길동	329-94	5.1	190%	-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신길 11구역
기정	22	C	신길동	3450	7.3	190%	-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신길 9구역
기정	23	C	신길동	3137	3.2	190%	-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신길 8구역
기정	24	C	신길동	2661	9.5	190%	-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신길 7구역
기정	25	C	신길동	1970	7.7	190%	-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신길 5구역
기정	27	C	신길동	314-4	8.0	190%	-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신길 16구역
기정	28	C	신길동	276-1	10.5	190%	-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신길 15구역
기정	29	C	신길동	4914-9	5.2	190%	-	60%	2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신길 4구역
기정	30	C	신길동	347-50	2.8	190%	-	60%	2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신길 14구역
신설	31	C	신길동	510	3.6	190%	-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신길 6구역

※ 추진단계 : 1단계(2004년 이후), 2단계(2006년 이후), 3단계(2008년 이후)

(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변경없음)

(다)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에 명시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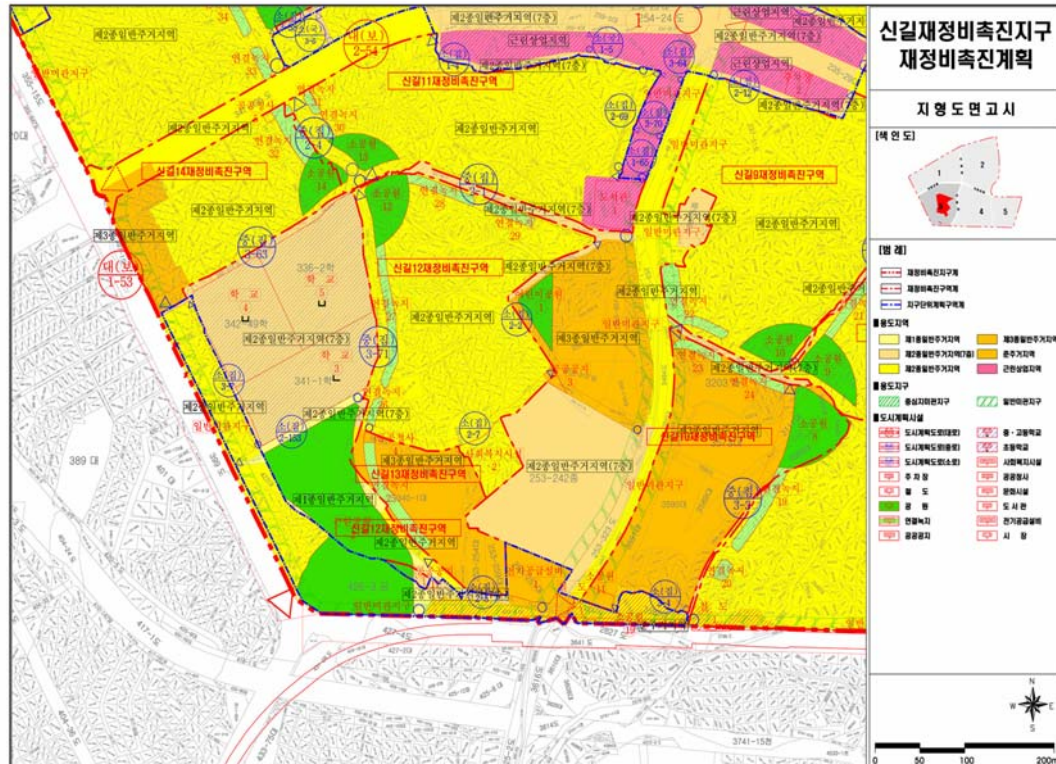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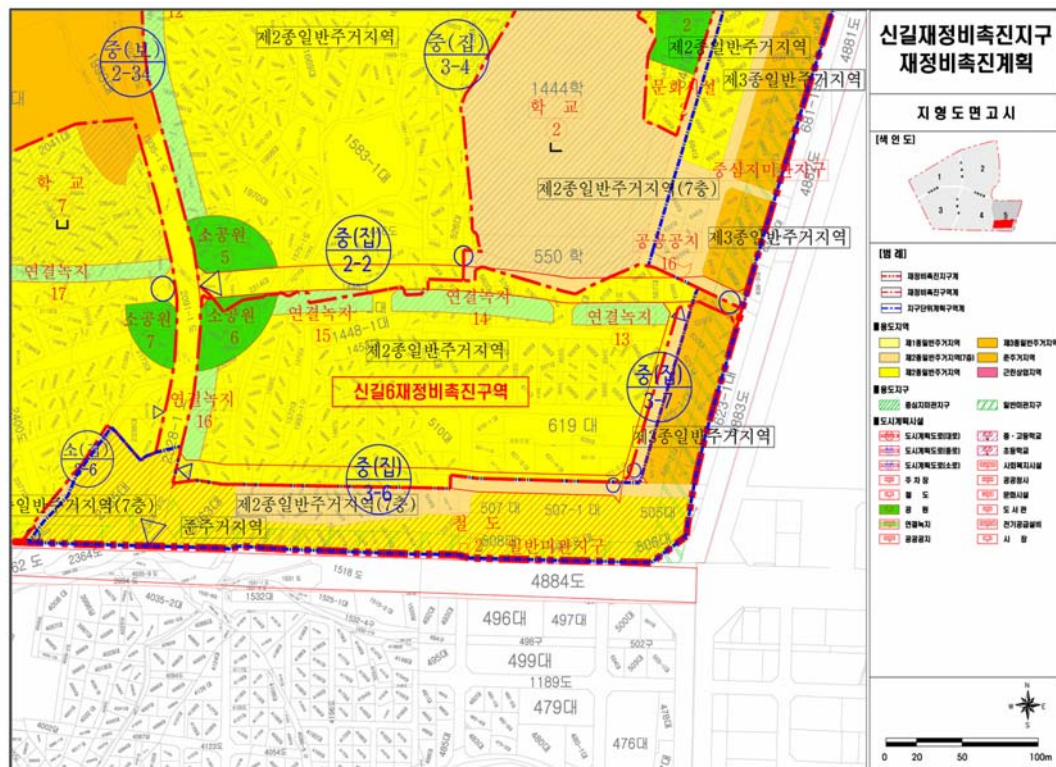
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시 조건부 사항(단계별사업추진계획, 교통처리계획, 폐기물처리·에너지순환·정보화계획, 경미한 사항에 관한계획, 주택본부 건축심의 기준 반영)에 대해서는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에 관련 항목 및 지침에 보완 반영된 내용을 따름

라. 관계 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과(☎02)2171-2060) 및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 2670-3526~3529)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9호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건설부고시 제347호(1979.9.24)로 사업계획결정 이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37호(2006.01.05)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된 동자동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동자동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	10,533.0	-	10,533.0	구역면적 변경없음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533.0	10,533.0	100.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588.8	2,588.8	24.58	24.58	순부담면적 : 2,306㎡(22.49%)
	도 로	1,679.0	1,671.8	15.94	15.87	
	공원	909.8	917.0	8.64	8.71	
대지(획지)		7,944.2	7,944.2	75.42	75.42	-

※ 변경사항은 동자동 및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26호)에 따라 도로와 공원간 면적변경 사항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0,533.0	-	10,533.0	100.0	-
일반상업지역	10,533.0	-	10,533.0	100.0	

3)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9	45	주간선	4,000	서울역앞 광장	한강제1 인도교복단	-	일반 도로	총고757 (1939.9.18)	-
기정	중로	2	197	15	집산	362	동자동2-1	동자동5-82	-	일반 도로	건고357 (1979.9.24)	-
기정	중로	2	198	15	집산	106	동자동17-4	동자동14-85	-	일반 도로	건고357 (1979.9.24)	-

나) 공원

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	동자동 18-32번지 일대	2,721.7 (909.8)	- (증) 7.2)	2,721.7 (917.0)	건고347 (1979.9.28)	-

※ 변경사항은 동자동 및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26호)에 따라 도로와 공
원간 면적변경 사항임

※ ()는 대상지내 면적, 면적은 추후 측량성가에 따름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보상후 철거	
기정	동자동 제2구역	10,533.0	동자동 15-1번지 일대	11	-	-	-	11	-
변경	동자동 제2구역	10,533.0	동자동 15-1번지 일대	4	-	-	-	4	-

5)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연면적)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기정	동자동 제2구역	10,533.0	획지1	7,944.2	동자동15-1 번지 일대	숙박시설, 공동주택	54.43 이하	996.51 이하	135 이하 39층 이하	126,780 이하
변경	동자동 제2구역	10,533.0	획지1	7,944.2	동자동15-1 번지 일대	숙박시설	60.00 이하	1,100 이하	135 이하	120,000 이하
용도별 시설면적 계획			기정	• 숙박 : 50.65%, 공동주택 : 49.35%						
			변경	• 숙박 : 41.32%, 업무 : 39.79%, 문화 및 집회 : 11.11%, 판매 : 7.79%						
심의완화 사항			■ 공공기여시설 : 용적률=200%							
			목 적		인센티브대상		요건		완화량	
			도심 활성화		가로활성화용도 (저층부상업용도)		1,2층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1층 1/2설치 의무)		50%p	
			관광인프라구축		호텔(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상 3급이상 호텔 40%이상		100%p	
			공공기여시설 설치		지하보행통로 (지하철 연결통로)		건축계획 반영		50%p	
			■ 공공시설부지 및 공개공지 초과 제공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용적률 = 306.53%							
			①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 $[1.3 \times ((2,588.8 - 282.8) / 7,944.2)] \times 800\% = 301.89\%$							
			② 공개공지 추가 제공시 인센티브 = $[(840.50 - 794.42) / 7,944.2] \times 800\% = 4.64\%$							
			• 건축한계선 = 남측도로 및 3-1, 3-2 지구 경계 : 3m							
			• 건축지정선 = 서측 45m도로 한강로변 : 5m							
			• 고층부벽면한계선 = 서측 45m도로 한강로변 : 10m							

2. 변경사유

- 당해구역은 1979년 최초 도심재개발구역(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 11. 30)으로 지정되어 이후 정비구역(변경)지정(서울시고시 제2005-437호, 2006.1.5) 되었으나 2020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도입용도의 변경(호텔 / 주거 → 호텔 / 업무)과 인센티브 기준이 변경 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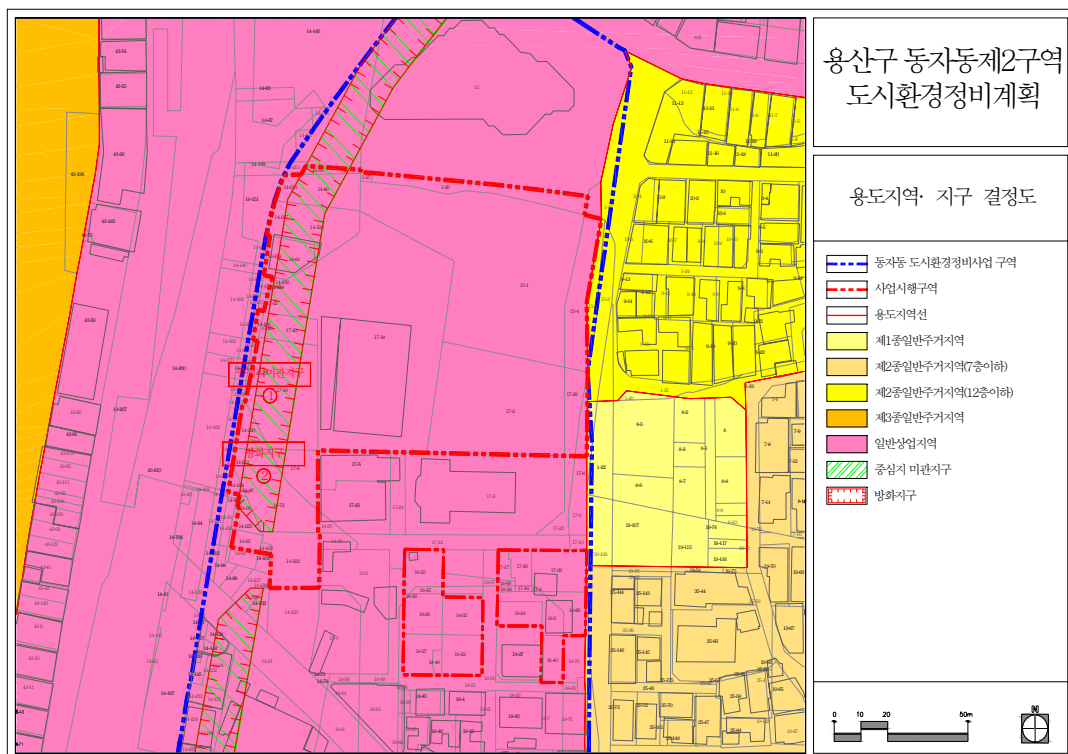
- 동자동 및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서울시고시 제2007-126호, 2007.5.10)에 따라 동자동제2구역 기반시설(공원, 도로) 면적에 대한 조정이 있어, 이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변경 지정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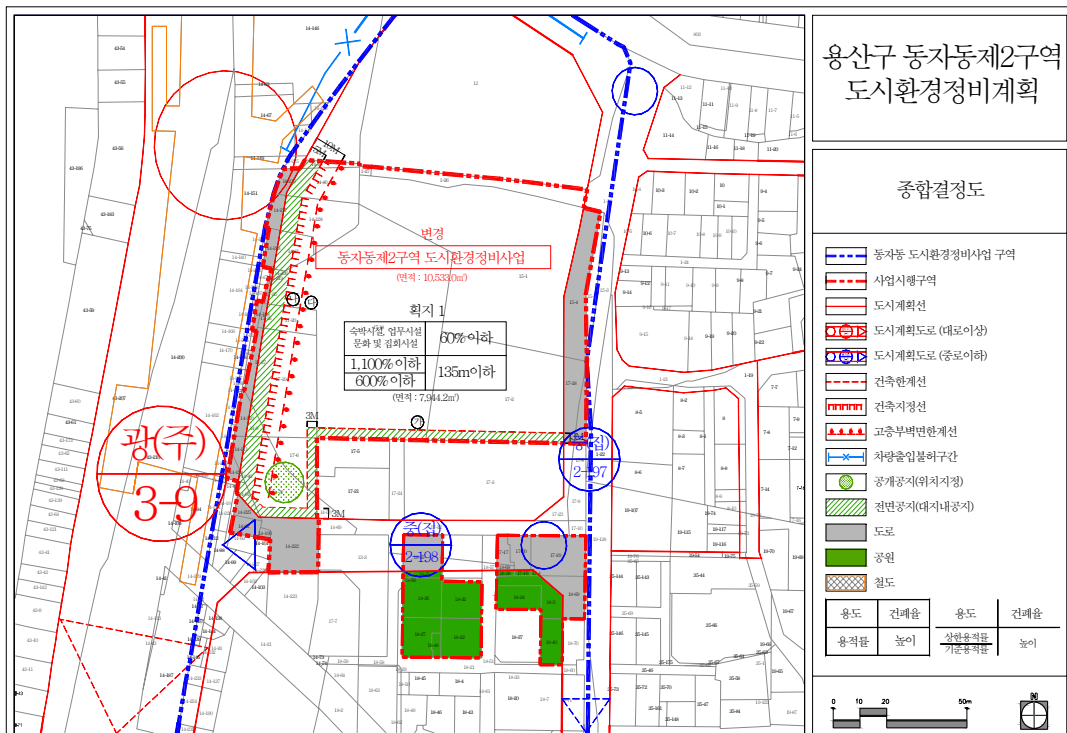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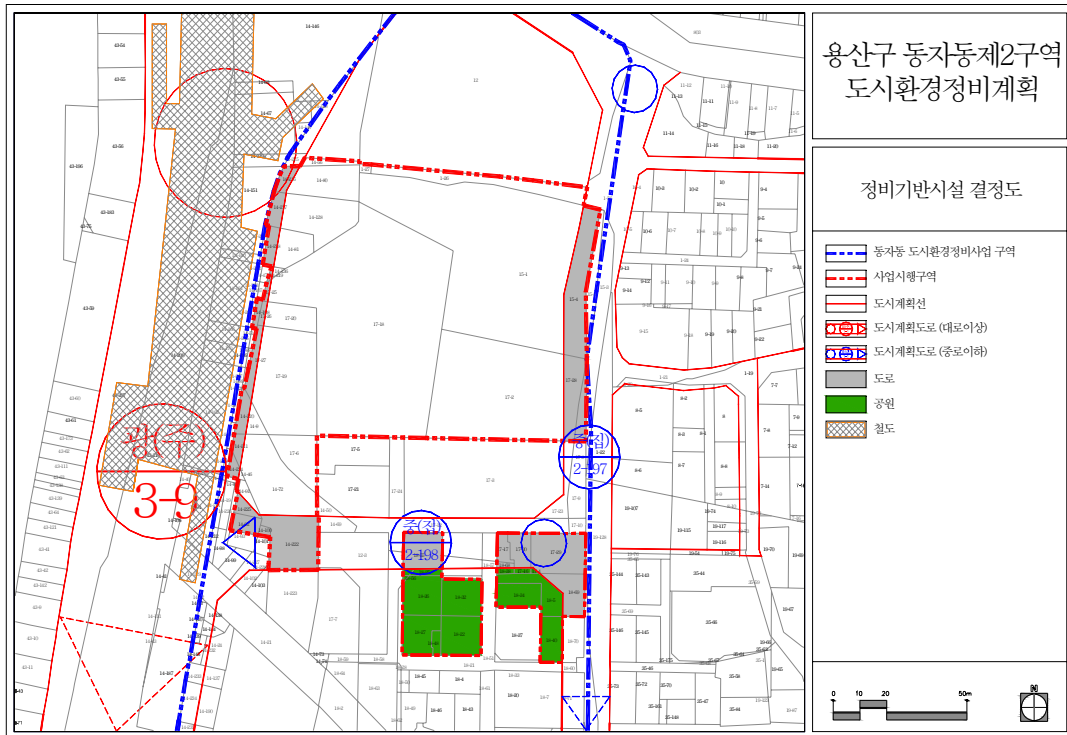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결정도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도서 참조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2171-2512)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2199-7404)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7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평화재단에 대한 기부금품모집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 집 자	소 재 지	모집목적	모집금액	모집기간 (사용기한)	모 집 지 역	모집방법
제2011-41호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마포구 창전동 169-2	동아프리카 가뭄 긴급구호 지원	금 1억원 (현금,,물품)	2011.8. ~ 2012.8.31. 2011.8.~ 2013.8.31.	전국	온라인, 방송, 광고, ARS후원전화, DM, TM,, 가두시민캠페인 등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02-731-662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76호

일반측량업등록공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 측량업 신규등록 현황

업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 록 일
일반측량업 (02-01-2128)	(주)대동지적측량원	고영택	서울특별시 충민로 52 가든파이버웍스 B동 202호	2011.9.14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시민고객담당관(02-6361-305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8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의 이사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공고기간 : 2011. 09. 22 ~ 2011. 10. 6

1. 공시송달(공고)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트라이튼테크 대표 김동열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70-5 우림비즈니스센터 1차 308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2011.4.22일자로 서울시 「2011년도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 포기('11.7.12)로 인한 계약해지('11.7.18)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항 6호(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별표2 제8호 가목					
6. 의견 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	서수련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전화번호	02-731-6983
		전자우편 주소	records4u@seoul.go.kr			모사전송	02-731-6829
	제출기한		2011년 10월 14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83호
2011년도 제16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미술장식품심의위

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가. 심의일시 : 2011. 9. 9(금) 14:00 ~ 16:15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13층 소회의실②

다. 심의작품

○ 총 11건 21작품(조각 13, 회화 4, 설치 3, 미디어아트 1)

라. 심의결과

○ 승인 : 15작품(조각 8, 회화 4, 설치 3)

○ 재심 : 5작품(조각 5)

○ 보류 : 1작품(미디어아트 1)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기획과(☎ 02-6361-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제16차 미술장식품별 심의결과

□ 2011년 제16차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재심	
1-1	서울국제금융센터	미디어 아트	별무리(Constellation)			보류(동영상자료 제출)
1-2		조각	조용한 증식(Silent Propagation)	○		
1-3		조각	꿈(Dream)	○		
1-4		회화	메탈리카	○		
1-5		설치	오피리아의 모험	○		
1-6		설치	White	○		
1-7		설치	Looking Beyond	○		
2-1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조각	버들선생	○		
2-2		조각	현대인의 초상	○		
2-3		회화	잔칫날	○		
2-4		회화	Light 2010-1C	○		
2-5		회화	Rose garden	○		
3	광장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각	물놀이(우리동네놀이대장)	○		
4	LIG건설아파트	조각	명상(Meditation)	○		
5	신월동 미성연합재건축	조각	무한상생		○	조형성, 예술성 결여
6	휘경4구역 브라운스톤	조각	반영(Reflection)-자연의 노래		○	복합함, 예술성 결여
7	응암7구역힐스테이아파트	조각	밝은 빛 누리 예	○		
8	응암8구역 힐스테이트	조각	희망이라는 짝이나는 두 손	○		[승인조건] 전체적으로 20% 확대, 높이 3.5m이상 확보 요함
9	대성 유니드 아파트	조각	봄-피어나다		○	예술성 결여
10	삼모 더 프라임타워	조각	씨앗		○	독창성, 조형성 결여
11	동일하이빌 주상복합	조각	인간과 환경		○	가격적정성 결여, 예술성 부족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8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0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석천식	서울 도봉구 도봉동 198-1 예성연립 B301	일시 : 2011-08-02 11:17 장소 : 성동구 성수동1가 삼표레미콘 앞 부근 도로 내용 : 서울06가5955차량 축하중 제4축 1.6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김일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434번지 1층	일시 : 2011-08-11 10:04 장소 : 성동구 성수동1가 삼표레미콘 앞 부근 도로 내용 : 서울06타5521차량 축하중 제3축 1.3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길문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15-61	일시 : 2011-08-17 07:20 장소 :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 앞 부근 도로 내용 : 서울06차8547차량 축하중 제2축 .35톤 초과	과태료 7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공고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20일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준용),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와 함께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나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도로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담당자: 임창수(전자우편: 201103096@seoul.go.kr)
- 전화번호: 02-2210-1522, 팩스번호: 02-2210-156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8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1514	2011.8.2	(주)하이어솔루션즈 이승엽 110111-2169070	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 656-1683 두앤캐하우스4F
2	201515	2011.8.2	로버무트(주) 송태화 110111-2415738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27-1 3층
3	201516	2011.8.3	태영전자 유도순 106-10-95177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1209호(가산동)
4	201517	2011.8.8	노키아씨멘스네트웍스코 리아(주) 원재준 110111-3566936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20층(역삼동 메리츠타워)
5	201518	2011.8.8	(주)효성정보통신 김도건 110111-4632314	서울 용산구 원효로 200, 2층(원효로2가)
6	201519	2011.8.8	(주)씨큐넷 전지윤 110111-4570423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37, 3층(연희동)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7	201520	2011.8.10	퓨렌스(주) 신현삼 110111-3628306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604호 (가산동,한라시그마벨리)
8	201521	2011.8.16	(주)제너시스시스템즈 강용구 110111-1885099	서울 강남구 언주로 620, 3~4층,(논현동)
9	201522	2011.8.16	(주)유토닉스 박찬호 110111-2550394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 601호 (파트너스타워1차, 가산동)
10	201523	2011.8.16	(주)비즈아이시스템 김성환 110111-4116384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93, 3813호 (현대41타워,목동)
11	201524	2011.8.18	에스디지컴(주) 간태경 110111-1826770	서울 금천구 벚꽃로 286, 413호(가산동)
12	201525	2011.8.29	(주)큐앤아이티 허선준 110111-4565739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81-1, 2층
13	201526	2011.8.29	(주)디지털홍일 박수봉 110111-1535066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99, 406호(가산동)
14	201527	2011.8.31	(주)컴스정보기술 김응관 110111-4487470	서울 송파구 총민로 66, 8층(문정동)
15	201528	2011.8.31	유토피아정보기술(주) 안종섭 110111-4206474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9, 2층(방배동)
16	201529	2011.8.31	(주)엑스오비스 김용민 110111-1910929	서울 강남구 학동로 23길 17, 3층(논현동)
17	201530	2011.8.31	(주)시큐에이스 김종하 110111-1221467	서울 송파구 중대로 105, 1302호(가락동)

1.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2. 공사등록 일자 : 2011.8.1 ~ 2011.8.31
-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02-6360-499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1. 서울특별시강동구고시 제2011-48호(2011.08.04)로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 도로, 수도)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된 「암사대교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예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암사동147-78~암사동 산1-13번지간 (대로1-64호선)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암사대교 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암사IC 진출입로 545m 설치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 2)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번지 동아일보빌딩 12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번지 동아일보빌딩 12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토지조서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3708-25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암사대교 건설공사

인 별 번호	동명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주 소	관리관계	
1	암사동	73-10	대	15	15	박만송	경기도 군포군 군포읍 문암리 산59				73-4에서 분할
2	암사동	96-10	하천	66	66	서울특별시					96-4에서 분할
3	암사동	96-11	하천	787	787	서울특별시					96-4에서 분할
4	암사동	98-30	전	352	352	백계윤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281-25 황지클래스17차 비-302	강동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87-33	근저당	98-12에서 분할
5	암사동	98-31	전	153	153	강동구					98-19에서 분할
6	암사동	98-32	전	824	824	김평군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56-59				98-22에서 분할
7	암사동	147-10	제방	19,220	3,470	서울특별시					
8	암사동	147-50	제방	16	16	국					
9	암사동	147-51	제방	45	45	국					
10	암사동	147-59	하천	5	5	국					
11	암사동	147-61	전	2	2	강동구					
12	암사동	147-63	전	16	16	강동구					

인력 일련 번호	동명	지 번	지목	지적 (㎡)	평면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관계	
13	암사동	147-76	하천	1	1	서울특별시						147-7에서 분할
14	암사동	147-77	하천	4	4	국						147-53에서 분할
15	암사동	147-78	제방	70	70	서울특별시						147-56에서 분할
16	암사동	147-79	전	21	21	강동구						147-60에서 분할
17	암사동	147-80	전	35	35	강동구						147-62에서 분할
18	암사동	147-81	전	6	6	서울특별시						147-71에서 분할
19	암사동	산1-2	제방	38,511	57	서울특별시						
20	암사동	산1-13	임야	14	14	서울특별시						산1-11에서 분할
21	암사동	산2	임야	130	90	서울특별시						
22	암사동	산2-1	임야	228	228	함양식 목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848-1 등보령스아파트901-805		서기섭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21-150	근저당	
23	암사동	산2-3	도로	64	17	서울특별시						
24	암사동	산2-6	임야	127	127	서울특별시						산2-5에서 분할

인력 관리 번호	동명	지 번	지목	지적 (㎡)	편인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5	암사동	산4	임야	10	10㎡중 11분의2	서순미	안산시 월피동439-11				
					10㎡중 11분의3	고명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47-5 삼성빌라101호				
					10㎡중 11분의2	서학필	경기도 가평군 기평읍 복장리273 다세대주택202호				
					10㎡중 11분의2	서재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47-5 삼성빌라101호				
					10㎡중 11분의2	서택영	광주시 남구 주월동449-11	구영숙	광주광역시 서구 마록동 287-1	근저당	
26	암사동	산4-16	임야	905	905	서울특별시					
27	암사동	산4-22	임야	1,185	1,185㎡중 11분의2	서순미	안산시 월피동439-11				산4-1에서 분할
					1,185㎡중 11분의3	고명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47-5 삼성빌라101호				
					1,185㎡중 11분의2	박순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연리 103-1 동화5차옥시준 아파트 508-301				

인력 일련 번호	동명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관계	
27	암사동	산4-22	임야	1,185	1,185㎡중 11분의2	서재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47-5 삼성빌라101호				
						서택영	광주시 남구 주월동449-11	구영숙	광주광역시 서구 마록동 287-1	근저당	
28	암사동	산4-23	임야	167	167	서울특별시					산4-2에서 분할
29	암사동	산4-24	임야	25	25	서울특별시					산4-7에서 분할
30	암사동	산4-25	임야	201	201	오정애	미합중국 네바다주 라스베이 스 크렌부룩가 4420				산4-13에서 분할
31	암사동	산4-26	임야	271	271	서울특별시					산4-17에서 분할
32	암사동	산4-27	임야	281	281㎡중 11분의2	서순미	안산시 월피동439-11				산4-18에서 분할
						고영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47-5 삼성빌라101호				
					281㎡중 11분의2	서학필	경기도 가평군 기평읍 북강 리273 다세대주택202호				

인력 일련 번호	동명	지 번	지목	지적 (㎡)	평면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32	암사동	산4-27	임야	281	281㎡중 11분의2	서재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47-5 삼성빌라101호				
						서택영	광주시 남구 주월동49-11	구영숙	광주광역시 서구 마록동 287-1	근저당	
								조희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48 무등파크아파트205-203	근저당	
33	암사동	산4-28	임야	18	18	오정애	미합중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스 크레븐북가4420				산4-21에서 분할

물 건 조 서

□ 사업명 : 암사대교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면적 (㎡)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암사동	98-30	비닐하우스 (농업용)	파이프/비닐	19㎡	백계윤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281-25 항지클래스17차 비-302					
			비닐하우스 (거주및창고)	파이프/비닐	67㎡							
			비닐하우스 (농업용)	파이프/비닐	131㎡							
2	암사동	98-32	비닐하우스 (농업용)	파이프/비닐	279㎡	차대식	강동구 암사동608-8					
			비닐하우스 (농업용)	파이프/비닐	271㎡							
			비닐하우스 (농업용)	파이프/비닐	24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92호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도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운행을 제한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도 로 의 종 류	서울특별시도	
노 선 명	남부순환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한 의 대 상	○ 총중량 32t을 초과하거나 축중량 10t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제원 폭 2.5m, 길이 16.7m, 높이 4.0m이상을 초과하는 차량 ○ 기타 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	
구 간	시설물명	구로고가차도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40
	규 모	폭 18.5m, 연장 153m
기 간	2011. 09. 22. 00시 ~ 별도 공고시까지	
이 유	○ 도로시설물 등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의 위험 방지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교량관리과 (☎ 02-3707-9697) ○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02-2657-7974)	
위 치 도	○ (생략)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에 도면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93호
박물관 신규 등록공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구 분	등 록 번 호	종류및유형	대 표 자	소 재 지	등 록 일 자
인도박물관	제100호	제1종 전문박물관	김 양 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4-21 2층	2011. 9.16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과(☎02-2171-259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94호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비 고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694호	주식회사 신택바이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길 6 해암빌딩 5층 (사당동 1031-26) (070-7435-7070)	에드워드예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6-18 고운빌딩 6층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길 6 해암빌딩 5층 (사당동 1031-26)	2011.9. 1.

신 고 인				변 경 내 역			비 고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726호	락히네트웍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1차 907호 (디지털로 288) (02-853-5200)	김 희 진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1차 409호 (디지털로 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1차 907호 (디지털로 288)	2011.8. 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02-3707-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97호

회계관계공무원 폐기직인 등록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개편된 회계관계공무원 폐기직인 등록 하고 동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사유

- 1) 폐기인영 등록 사유 :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소속 재배치('11. 09. 09일자)에 따른 조직변동
 - 8개 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 일상경비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 폐기

2. 폐기 직인의 폐기연월일 : 2011. 09. 08

3. 회계관계공무원의 폐기 직인등록 인영(따로붙임)

폐기직인명	인 영	폐기직인명	인 영
서부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일상경비출납원		서부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분임물품출납원	
규격 : 세로 1.8cm, 가로 1.8cm 자체 : 한글전서체		규격 : 세로 1.8cm, 가로1.8cm 자체 : 한글전서체	
폐기직인명	인 영	폐기직인명	인 영
동부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일상경비출납원		동부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분임물품출납원	
규격 : 세로 1.8cm, 가로 1.8cm 자체 : 한글전서체		규격 : 세로 1.8cm, 가로1.8cm 자체 : 한글전서체	
폐기직인명	인 영	폐기직인명	인 영
북부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일상경비출납원		북부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분임물품출납원	
규격 : 세로 1.8cm, 가로 1.8cm 자체 : 한글전서체		규격 : 세로 1.8cm, 가로1.8cm 자체 : 한글전서체	
폐기직인명	인 영	폐기직인명	인 영
중부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일상경비출납원		중부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분임물품출납원	
규격 : 세로 1.8cm, 가로 1.8cm 자체 : 한글전서체		규격 : 세로 1.8cm, 가로1.8cm 자체 : 한글전서체	

폐기직인명	인 영	폐기직인명	인 영
강서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일상경비출납원		강서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분임물품출납원	
규격 : 세로 1.8cm, 가로 1.8cm 자체 : 한글전서체		규격 : 세로 1.8cm, 가로1.8cm 자체 : 한글전서체	
폐기직인명	인 영	폐기직인명	인 영
남부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일상경비출납원		남부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분임물품출납원	
규격 : 세로 1.8cm, 가로 1.8cm 자체 : 한글전서체		규격 : 세로 1.8cm, 가로1.8cm 자체 : 한글전서체	
폐기직인명	인 영	폐기직인명	인 영
강남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일상경비출납원		강남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분임물품출납원	
규격 : 세로 1.8cm, 가로 1.8cm 자체 : 한글전서체		규격 : 세로 1.8cm, 가로1.8cm 자체 : 한글전서체	
폐기직인명	인 영	폐기직인명	인 영
강동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일상경비출납원		강동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분임물품출납원	
규격 : 세로 1.8cm, 가로 1.8cm 자체 : 한글전서체		규격 : 세로 1.8cm, 가로1.8cm 자체 : 한글전서체	

◆ 서울특별시공고 2011-1498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 행정처분 등 공시송달

2011년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업체에 대한 일제점검결과 행정처분 및 등록취소 업체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1. 제 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 행정처분 등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일자 : 2011. 9. 22.
3. 처분사유 : 등록기준위반업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4.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공관리과(☎02-6361-362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행정처분 등 대상업체 명단

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 소	처분내용	적용법규
1	2003-18	(주)리컨앤시티	김표관	강남구 대치동 891-23 대우아아빌명문가 435	등록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
2	2004-33	(주)태완디앤시	박종구	강남구 논현동 59-8 구산빌딩 4층	“	“
3	2004-39	이지도시개발(주)	최병환	강남구 역삼동 832-3 영신빌딩 9층	“	“
4	2004-72	(주)고려도시정비 사업단	강민호	중구 소공동 117 한국YMCA 502호	“	“
5	2004-76	에스에이치디(주)	박상훈	강남구 역삼동 831-47 (광성빌딩1101호)	“	“
6	2004-84	(주)키워드이앤디	김기종 김영순	동대문구 이문동 256-246	“	“
7	2004-103	(주)동안에스앤에스	김옥자	성북구 하월곡동 67-132 경동빌딩 3층	“	“
8	2004-117	(주)펠리체씨엠씨	김철수	성동구 성수2가3동 277-17 성수아카데미타워 816호	“	“
9	2004-133	(주)우남씨앤씨	안수영	성북구 장위동 65-192 우남빌딩 302호	“	“
10	2004-141	(주)창하도시정비개발	이승열	서초구 방배동 815-20 타래빌딩 302-2층	“	“
11	2005-19	(주)씨티앤스페이스	허우영	마포구 서교동 329-33 서교제일빌딩 202호	“	“
12	2005-34	(주)한양도시과학원	허우영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IT,BT1107호	“	“
13	2006-35	(주)유러너스피디엠	강희영	서초구 양재동 320-4 농산빌딩 3층	“	“
14	2007-15	(주)원필드씨앤씨	김용진	서초구 방배동 837-4 세림빌딩 4층 401호	“	“
15	2007-36	한스씨피(주)	한은주	강북구 수유1동 51-64 수유프라자 402호	“	“
16	2008-23	(주)킨시티	김애경	광진구 광장동 148-8 301호	“	“

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 소	내용	적용법규
17	2009-8	(주)참누리도시개발	황재호	강남구 역삼동 770-21 2층 202호	등록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
18	2010- 3	(주)씨알에프	문 광	광진구 자양동 680-24 태림빌딩 나동 3층	“	“
19	2003-9	(주)동은씨엠코리아	최병환	송파구 석촌동 213 송암빌딩 301호	“	“
20	2010-18	태동정비사업단(주)	박주영	서초구 서초동 1445-14 더샵서초 103-609	“	
21	2008-21	(주)퍼시픽 에셋어드바이저	이훈근	강남구 대치동 947-7 삼환빌딩 5층	“	“
22	2008-16	(주)원플러스 도시개발	장필근	서대문구 연희동 132-1 커뮤니티빌딩 1층	업무정지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4호
23	2008-22	(주)빛세움건설	최종탁	강동구 길동 345-1-1 201	등록취소	자진반납
24	2009-10	(주)그린시티디앤디	황평하	성동구 용답동 225-13 한전빌딩 2층	“	“
25	2010-11	(주)이랑이티피	정도현	중구 을지로6가 17-2 케레스타빌딩 1503호	“	“
26	2011-4	동신종합건설	이정현	강남구 역삼동 694-10 동신빌딩 2층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500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거: ‘도로법’ 제10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최재홍	인천 계양구 계산동 348-11 하나아파트 14동 603호	일시: 2011. 3. 23. 14:00 장소: 신월입체교차로(IC) 내용: 제한 총중량 6.7톤 초과	과태료 80만원 부과
오세철	서울 강서구 방화1동 608-16	일시: 2011. 7. 8 10:45 장소: 개화육갑문 내용: 제한 축하중 1.9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조봉수	서울 강서구 화곡2동 882-42 지선주택 301호	일시: 2011. 7. 18. 15:51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4.7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주완용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99-11 선경빌라 B동 103호	일시: 2011. 7. 18. 13:00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12톤 초과	과태료 70만원 부과
최병택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155-6	일시: 2011. 7. 26. 16:16 장소: 올림픽대로 염창IC 내용: 제한 높이 0.22m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임선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64-15 203호	일시: 2011. 1. 20. 11:15 장소: 가양대교 남단 내용: 제한 축하중 1.15톤 초과	처분일: 2011. 5. 27. 과태료: 50만원 납기일: 2011. 7. 31.
염동명	서울 양천구 신월동 491-1 신월대림아파트 101동 905호	일시: 2011. 4. 14. 15:05 장소: 올림픽대로 여의하류IC 내용: 제한 축하중 1.6톤 초과	처분일: 2011. 5. 27. 과태료: 70만원 납기일: 2011. 7. 31.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11. 10.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67-1)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담당자: 윤성일(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501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기간 연장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 및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수상후보자 추천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추천과 성원을 바랍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시상분야 : 14개
 - 가. 인문과학분야 :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윤리학, 철학, 언어학 등 인문사회과학분야
 - 나. 자연과학분야 : 기초과학, 지구환경과학, 생명과학 등 자연과학분야
 - 다. 문학분야 :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과 그에 관한 번역 등 문학분야
 - 라. 미술분야 : 회화, 판화, 사진, 서예, 공예, 조각 등 미술분야
 - 마. 국악분야 : 연주, 창작, 평론 등 국악분야
 - 바. 서양음악분야 : 연주, 창작, 평론 등 서양음악분야
 - 사. 연극분야 : 연극, 뮤지컬 등
 - 아. 무용분야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자. 대중예술분야 : 영상(영화, 뉴미디어 등), 대중음악, 연예 등 대중예술분야

- 차. 문 화 산 업 분 야 : 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콘텐츠 등 문화산업분야
 카. 언 론 분 야 :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분야
 타. 문 화 재 분 야 : 문화재 발굴, 보존, 연구, 전통문화 등 문화재분야
 파. 관 광 분 야 : 관광업, 호텔업, 관광요식업 등 관광분야
 하. 체 육 분 야 :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 체육분야

2. 시상인원 : 분야별 각 1명씩 총 14명(본상 14명)

3. 시상내용 : 상패, 메달

4. 수상후보 추천권자 : 제1호의 해당분야별 관계기관·단체 또는 개인
 ※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10인 이상이 연서로 하여야 합니다.

5. 수상자격 : 제1호의 해당분야별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

6. 구비서류

- 가. 추 천 서(소정서식) 1부
 나. 공 적 서(소정서식 1부 및 공적 수록된 CD 또는 USB 1매) 1부
 다. 사 진(4.5cm×6cm 컬러) 5매
 라.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1부
 (자료에 따라 사진·모형·투시도·청사진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 을지로별관 3층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우 100-842)
 ※ 인편 또는 우편 제출

8. 제출기간 : 2011. 9. 26(월) ~ 10. 7(금) (2011.10.7 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 당초 : 2011. 8. 12(금) ~ 9. 15(목) (2011.9.15 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9. 심사 및 발표 : 2011. 11 ~ 12월중

10.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추천서, 공적서는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에서 배부 받으시거나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culture.seoul.go.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시,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함

수 있습니다.

- 마.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적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수상분야, 직업)과 공적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비공개를 원하는 분은 별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바. 이 상의 시상은 2011년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02-2171-25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성동구고시 제2011-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1-48호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1-569호(2011.08.16)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 열람 공고한 「마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및 도로정비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교통지도과(☎2286-57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9월 22일
성 동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22-1번지 외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마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및 도로정비공사
 다. 사업면적 : 882.6㎡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바. 토지 및 건물조서 : 별첨

■ 토지 및 건축물조서 (이해관계인 포함)

연번	소유자	물건지	지목	건물(㎡)		토지(㎡)			주소	비고
				유허가	무허가	면적	편입 면적	총편입 면적		
계	기획재정부외 5인	마장동 522-1	대	1	5	882.60	882.60	882.60	강남구 역삼동 814번지 외 5	
1	기획재정부 (한국자산 관리공사)	마장동 522-1	대	324.70	251.10	882.60	882.60	882.60	강남구 역삼동 814	대륭공업(주) 대표:박승자 (이해관계인)
2	윤도임	마장동 500	도로		12.60				노원구 중계3동 무지개아파트 203-913	
3	이효순	마장동 500	도로		16.70				동대문구 용두1동 39-411 4층	
4	김안순	마장동 500	도로		14.50				성동구 성수1가동 13-72	
5	손옥기	마장동 500	도로		22.20				성동구 마장동 513-9	
6	최월분	마장동 500	도로		23.30				성동구 사근동 190-53	

◆ 광진구고시 제2011-30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425호(2003.12.2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82호(2005.12.08)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5길 25-1번지(광장동 353번지 외 1필지)상 아래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5길 25-1번지(광장동 353, 359-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2) 사업의 명칭: 장로회신학대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사업시행면적 : 56,424.0㎡
 - 2) 사업규모(건축허가 신청)
 - 기존규모: 연면적 40,179.73㎡
 - 변경규모: 연면적 46,684.71㎡
- 【금회증축: 지하3층/지상7층, 연면적 6,504.72㎡, 기숙사】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1) 성명: 학교법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 2)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5길 25-1번지(광장동 353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년월일: 허가일(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2012.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생략

사.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생략

아. 관계도서: 생략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건축과(☎450-772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강서구고시 제2011-4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9호(1997.2.6)로 최초 조성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6호(2008.12.26)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2.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11-881호(2011. 8.25)로 열람공고를 마친 도시계획시설 펑고개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펑고개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강서구 방화동 산135-1번지 외 5필지

다. 사업의규모 : 토지 210㎡, 분묘 11기

라. 사업의내용 : 가로공원, 체력단련장, 휴게소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바.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3.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첨부

아. 관련서류 비치 : 서울시청 공원조성과(☎2115-7595), 강서구청 공원녹지과(☎2600-4183)

☐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용	
계			903	210							
1	방화동 332-27	임야	10	10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38-214	이은광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5 대림아파트 102동 1104호	박영은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5 대림아파트 102동 1104호	박윤희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6-17	이촌2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설정		근 저당권자
2	방화동 산135-1	임야	893	200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45 우장산롯데캐슬 304동 401호	권순직					

☐ 지장물건조서(분묘)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및 구조	수량	소유자(연고자)		비고
					주소	성명	
계				11기			
1	강서구 방화동	산136-6	분묘	2기	서울시 양천구 목1동 신시가지APT 708동 203호	권영찬	
2	강서구 방화동	산136-6	분묘	2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백송마을 풍림아파트 2730동 1001호	권혁준	
3	강서구 방화동	산136-6	분묘	1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한빛아파트 101동 1202호	권영세	
4	강서구 방화동	산136-6	분묘	1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한빛아파트 101동 1202호	권영세	
5	강서구 방화동	산102-1	분묘	3기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17-20 고은빌 A동 201호	윤동길	
6	강서구 방화동	산102-2	분묘	1기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17-20 고은빌 A동 201호	윤동길	
7	강서구 방화동	산99-7	분묘	1기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17-20 고은빌 A동 201호	윤동길	

◆ 관악구고시 제2011-60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0호(2002.06.22.)로 결정(변경)된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2호(2008.02.28.)로 결정(변경)된 「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중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건축(개발)]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신림동 530-6, 11호와 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봉천동 867-15, 16호 토지소유자간 선택적 공동건축(개발)을 위하여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지번	면적 (㎡)	계획내용	지번	면적 (㎡)	계획내용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530-6,11	530-6	161.7	단독건축	530-6 530-11	301.9	선택적 공동건축	
		530-11	140.2	단독건축				

나.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지번	면적 (㎡)	계획내용	지번	면적 (㎡)	계획내용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봉천동 867-15, 16	867-15	202.60	단독개발	867-15 867-16	398.30	선택적 공동개발	
		867-16	195.70	단독개발				

※ 선택적 공동개발(건축)에 따른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음.

※ 기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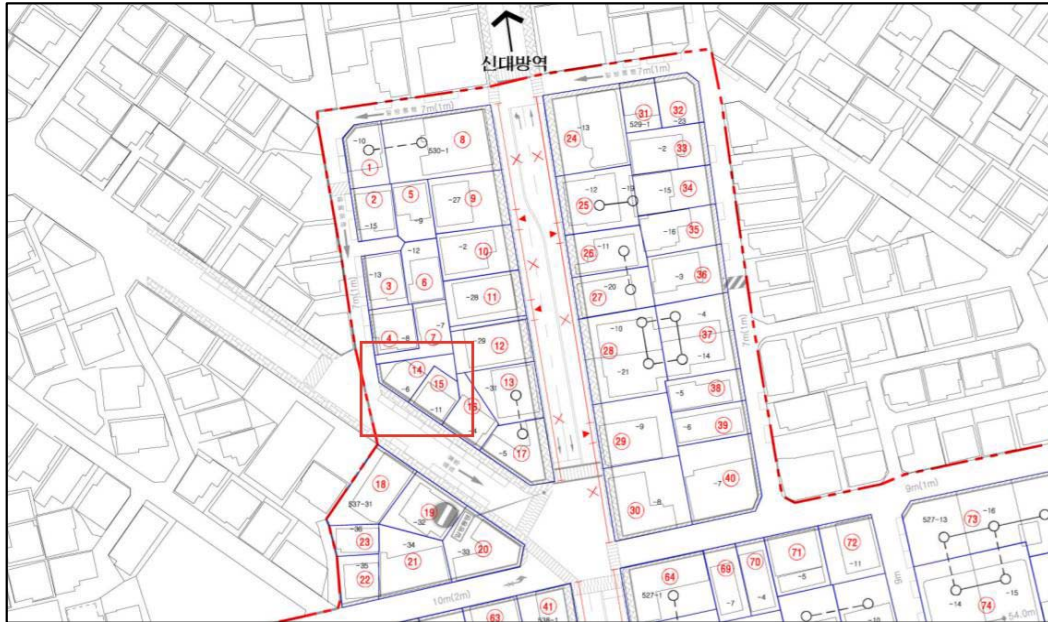
5. 열람장소 :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02-880-359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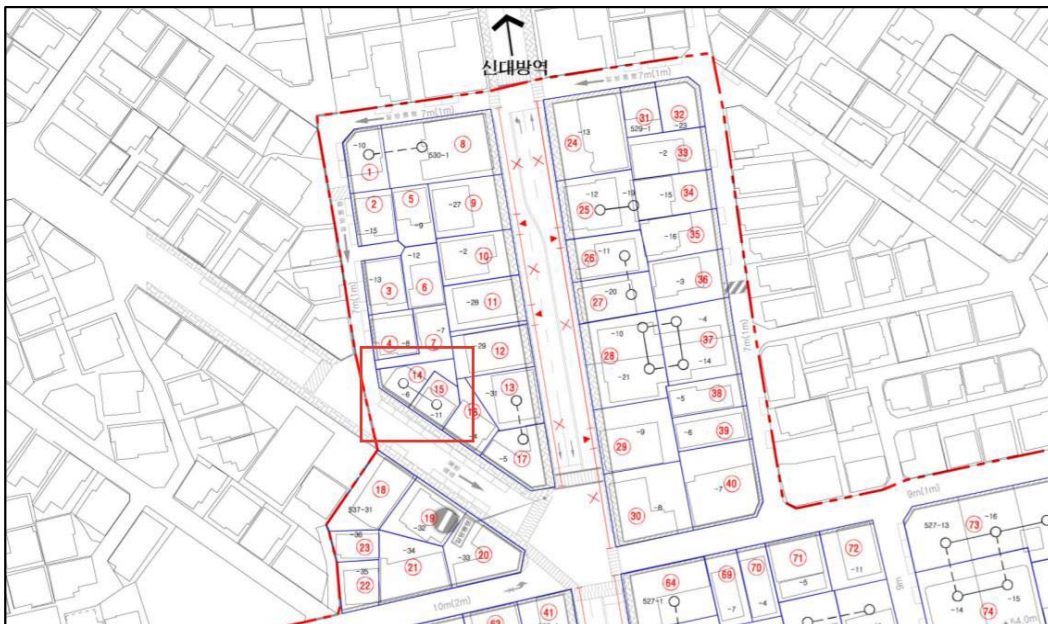
첨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가.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면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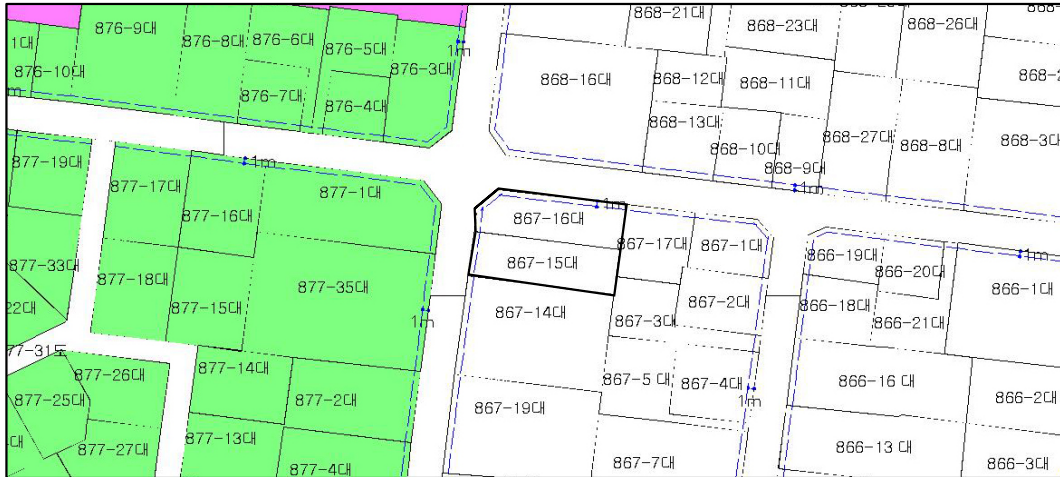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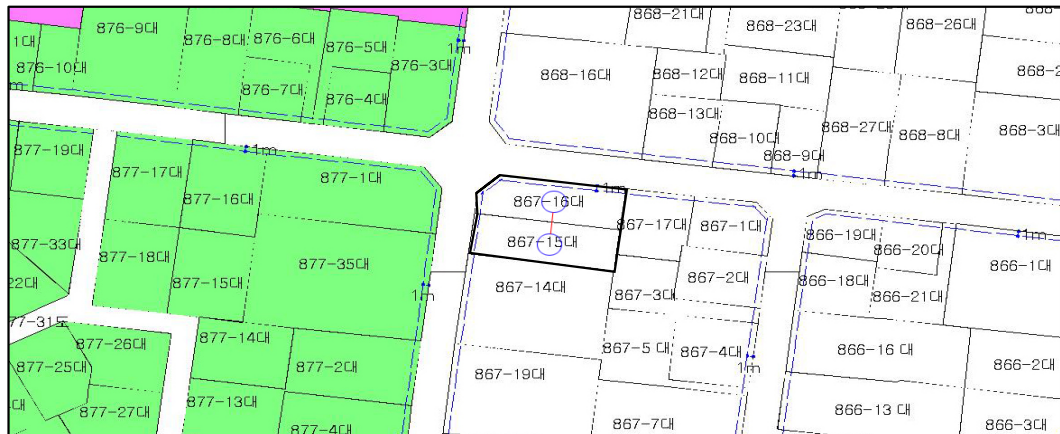


나. 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기 정



변 경



구 공 고

◆ 성북구공고 제2011-862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공사완료 공고

1. 성북구 돈암동 173-1호 일대 통행로 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하고,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재생과(☎920-37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9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73-1호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통행로 개선)
- 2) 사업의 명칭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1관 후면 통행로 개선공사

다. 사업완료내용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	사업의 규모
성신여자대학교조형1관후면 통행로개선공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73-1번지	○ B=2.5~3.5m ○ L=47m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73-1호일대
- 2) 성 명 : 학교법인 성신학원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1) 사업착수일 : 2011.04.19
- 2) 준 공 일 : 2011.08.30.

바. 위치도 및 완료도면 : 성북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

◆ 구로구공고 제2011-71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27호(2005.07.26)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05-64호(2005.08.05)로 지형도면 작성·승인고시, 구로구고시 제2011-32호(2011.07.07)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08-24호(2008.04.10)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작성(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

2009-3호(2009.1.15)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10-46호(2010.7.29)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 (변경)작성(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11-11호(2011.3.31)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11-20호(2011.5.19)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인가) 고시, 구로구고시 제2011-45호(2011.8.11)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인가) 고시된 구로구 천왕동 12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완료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120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2) 명칭 : 서울남부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사업 면적 : 229,192.1㎡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계		229,192.1	
교 정 시 설	소 계	111,033	
	시설부지	80,842	
	주차장	11,833	
	도로	18,358	
보 존 녹 지	소 계	70,158.1	
	A	55,392.1	
	B	14,766	
차 폐 녹 지	소 계	48,001	
	차폐녹지	39,694	
	사면녹지	8,307	

3) 시설계획

구 분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34,625.15㎡	
연 면 적	79,025.91㎡	- 교도소 : 36,806.91㎡
		지하1층/지상3층
		- 구치소 : 36,154.21㎡
		지하1층/지상3층
		- 기 타 : 6,064.79㎡
		지하0층/지상4층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대행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구로구청장 이 성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마. 사업시행기간 : 2008.4.10(실시계획 작성고시일) ~ 2011.8.31.

바. 준공 관계도서 :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개발과(☎860-21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11-613호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62-11 제비어린이공원 어울림조성공사와 관련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4조에 의거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62-11

나. 공원면적 : 1,813.9㎡

다. 조성계획(안)

○ 조성개요 : 녹지조성 757.83㎡(전체면적의 41.78%), 시설물설치, 포장 등 1,056.07㎡(전체면적의 58.22%)

○ 주요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주민휴게시설, 다목적마당 등

라. 열람기간 : 열람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마. 열람장소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820-9845)

바.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11-77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정거장))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고시 제2010-31호(2010.2.4)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 구역Ⅱ 세부 개발계획에서 지하철2호선 서초역정거장 3번·4번 출입구를 특별계획구역Ⅱ내로 이전 결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정거장)) 변경 결정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1. 입안사유

- 지하철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정거장 출입구 3번·4번을 서초동 1541-1번지 신축부지 안으로 위치 변경 및 지상냉각탑을 지하로 이전하고,
- 서초역정거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이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내용과 면적이 상이하여 정정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안)

가.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철도	도시철도 (서초동 정차장)	서초동 산170-1번지 앞	205	6,617	건고 제214호 (1978.8.2)	폭원: 23m
변경	-	철도	도시철도 (서초역 정거장)	서초동 1748-7번지 일원	218	6,711		폭원: 25m

나.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입체적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철도 (도시철도) 서초역 정거장	서초동 1748-7번지 일원	길이	-	4.67~14.92m	4.67~14.92m	-	3번 출입구 (면적: 85.5㎡)
				폭	-	6.70~8.61m	6.70~8.61m		
				높이	-	23.58~34.0m	23.58~34.0m	-	4번 출입구 (면적: 72.4㎡)
				길이	-	10.64~17.32m	10.64~17.32m		
				폭	-	4.57~5.51m	4.57~5.51m		
				높이	-	26.19~37.10m	26.19~37.10m		

주) 높이는 평균해수면기준임.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
5.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6.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강동구공고 제2011-9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9호(2009.12.03)로 도시관리계획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C2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강동구 고시 제2011-36호(2011.06.08)로 사업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54호(2011.08.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천호동 C2특별계획구역 민영주택건설사업」에 포함하여 의제 처리된 「중로(보)1-천호3 외 2개 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변경사항 등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에스엘디엔씨(주)(☎3453-1673) 및 강동구청 도로과(☎480-1405)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서는 열람기간내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2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중로1-천호3 : 강동구 천호동 449~천호동 166-43(C2특별계획구역내)
- 중로1-456 : 강동구 천호동 161-3~천호동 448-47
- 중로1-412 : 강동구 길동 413-45~천호동 550-6(C2특별계획구역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 천호동 C2 특별계획구역 중로(보)1-천호3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도로)-변경없음

규 모				기 능	연장(m)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중로	1	천호3	20	보조 간선도로	195 (195)	C2특별계획구역내
중로	1	456	20	집산도로	170 (170)	
중로	1	412	20	보조 간선도로	1,065 (178)	C2특별계획구역내

※ () 금회 시행구간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6-90(전화 : 02-3453-1673)
- 성명 : 에스엘디엔씨(주) 피인찬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6. 06(변경없음)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사. 열람장소 : 에스엘디엔씨(주)(☎3453-1673), 강동구청 도로과(☎480-1405)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변경 조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적용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함에 따라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시행 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시설

구 분	면 적	편입면적		기부채납	비 고
		기정	변경		
중(집)1-456	3,209㎡	3,209㎡	3,209㎡	○	
중(보)1-412	1,200.10㎡	1,200.10㎡	1,200㎡	○	
중(보)1-천호3	3,088.90㎡	3,088.90㎡	3,089㎡	○	

- 시설의 시행자 및 관리자

- 시 행 자 : 에스엘디엔씨(주) 피인찬
- 관 리 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및 이외의 권리 명세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잔여면적 (㎡)	면적면적 (㎡)	중(경) 1-456	중(보) 1-412	중(보) 1-원호3	건축물 연면적	소유자			관계인		변경사유
		본번	부번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1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0	대	344	153	153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2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1	대	139	131	131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3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2	대	139	133	133	30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4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3	대	139	135	135	106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5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4	대	145	143	143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6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41	도	826	49	49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7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33	대	162	162	162	171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8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34	대	136	136	136	162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9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35	대	139	139	139	162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10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36	대	126	126	126	116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11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38	대	132	132	132	152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12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39	도	50	50	50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13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47	갑	42	42	42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잔여면적 (㎡)	면적 (㎡)	중(길) 1-456	중(보) 1-412	중(보) 1-천호3	건축물 연면적	소유자			관계인		반경사유
		본번	부번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14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46	도	96	96				강 동 구 청					
15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43	도	588	588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66-90))			
16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68	대	194	150		42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66-90))			
17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84	대	310	287		198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66-90))			
18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132	대	47	47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66-90))			
19	서울특별시 천호동	161	22	대	69	69		130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66-90))			
20	서울특별시 천호동	161	39	도	251	251	26			강 동 구 청					
21	서울특별시 천호동	161	10	대	96	96	2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66-90))			
22	서울특별시 천호동	161	9	대	30	30	4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66-90))			
23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108	대	7	7	4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66-90))			
24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7	대	119	85	37	84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66-90))			
25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3	대	136	49	49	45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66-90))			
26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4	대	177	90	90	30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66-90))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잔여면적 (㎡)	면적 (㎡)	중(길) 1-456	중(보) 1-412	중(보) 1-천호3	건축물 연면적	소유자			관계인			반경사유
		본번	부번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기정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5	대	59	54.1	54.1	49		이병옥	3/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4-5				
										유경관	2/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95-9				
										유경준	2/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4-5				
										유경수	2/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48-5 광남캐스텔아파트 1002호	구천새마을 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56-3	근자당	지적분할측량 상과에따른 면적변경
변경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5	대	54	54	54	63		이병옥	3/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4-5				
										유경관	2/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95-9				
										유경준	2/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4-5				
										유경수	2/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48-5 광남캐스텔아파트 1002호	구천새마을 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56-3	근자당	
28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6	대	105	58	58	174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 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 166-90)				
29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8	대	7	2	2	35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 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 166-90)				
30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19	대	155	29	29	29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 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 166-90)				
31	서울특별시 천호동	165	3	전	7	7	7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 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 166-90)				
32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17	도	179	12	12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 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 166-90)				
33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18	도	175	13	13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 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 166-90)				
34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117	대	169	67	67	217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 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 166-90)				
35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116	대	119	42	42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 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 166-90)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잔여면적 (㎡)	편입면적 (㎡)	중(길) 1-456	중(보) 1-412	중(보) 1-천호3	건축물 연면적	소유자			관계인		반경사유
		본번	부번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36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10	대	403	145	145		580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에프)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남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37	서울특별시 천호동	166	53	대	245	101	101		335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에프)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남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38	서울특별시 천호동	166	51	도	132	27	27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에프)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남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39	기정	서울특별시 천호동	166	대	298	125	125		170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에프)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남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지적분할촉강 성과에따른 면적변경
	변경	서울특별시 천호동	166	대	298	137	137		170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에프)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남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40	기정	서울특별시 천호동	166	43	대	284	284	194		김성만	1/3	성동구 성수동2가 299-47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지적분할촉강 성과에따른 면적변경
										김옥란	1/3	양천구 신정동 311 북동신사거리아파트 1009-203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김혜란	1/3	관악구 봉천동 180-239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6-90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201 0라1960)		
										김성만	1/3	성동구 성수동2가 299-47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김옥란	1/3	양천구 신정동 311 북동신사거리아파트 1009-203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변경	서울특별시 천호동	166	43	대	272	272	272	191		김혜란	1/3	관악구 봉천동 180-239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201 0라1960)
										에스엔디(에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6-90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201 0라1960)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잔여면적 (㎡)	면적 (㎡)	중(길) 1-456	중(보) 1-412	중(보) 1-천호3	건축물 연면적	소유자			관계인		변경사유
		본번	부번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41	서울특별시 천호동	166	90	데	175	40		40	42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42	서울특별시 천호동	166	42	도	493	471		471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43	서울특별시 천호동	166	44	대	228	13		13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44	서울특별시 천호동	166	45	대	139	40		40	54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45	서울특별시 천호동	166	46	대	102	40		40	152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46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102	대	63	12		12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47	서울특별시 천호동	450	51	대	7	6		6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48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12	대	149	62		62	196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49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59	도	423	12		12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50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11	대	159	90		90	339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51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9	대	279	113		113	15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52	서울특별시 천호동	450	52	도	559	551		551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53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72	대	10	9		9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54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6	대	129	98		98	29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잔여면적 (㎡)	편입면적 (㎡)	중(길) 1-456	중(보) 1-412	중(보) 1-천호3	건축물 연면적	소유자			관계인		반경사유
		본번	부번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55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8	대	208	108		108	28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56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5	대	93	70		70	63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57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54	대	30	30		30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58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4	대	136	116		116	87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59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3	대	122	120		120	87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60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21	대	146	6		6	12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기정 변경	서울특별시 천호동	450	54	도	437.9	433.9		433.9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지적분할초량 상과에따른 면적변경 공부상 요구사항
		450	54	도	460	434		434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62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2	대	112	112		112	74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63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22	대	106	17		17	30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64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1	대	146	128		128	109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65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0	대	296	153		153	264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엘(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안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66	서울특별시 천호동	450	55	도	8	8		8		강 동 구 청					
67	서울특별시 천호동	450	56	도	174	174		174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잔재면적 (㎡)	평면면적 (㎡)	중(길) 1-456	중(보) 1-412	중(보) 1-천호3	건축물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변경사유
		본번	부번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68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69	27	27			27	70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69	서울특별시 천호동	449	70	29	29			29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70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40	10	10	10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71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83	132	25	25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72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30	155	5	5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73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31	152	5	5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74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32	182	4	4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75	서울특별시 천호동	448	37	208	15	15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76	기정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52	146	1	1			최상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4-52 강동종합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87-33	근저당	지적분할측량 성과에따른 면적변경
	변경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52	1	1	1			최상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4-52 강동종합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87-33	근저당	
77	기정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67	165	2	2			지명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718 샘터마을아파트 110-130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6-90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200 0라1955)	지적분할측량 성과에따른 면적변경
	변경	서울특별시 천호동	164	67	2	2	2		1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에스엔디(엔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서울특별시천호동166-90)			면적변경 소유자변경
소 계				12,809	7,498	3,209	1,200	3,089		* 순번은 용지순번과 동일임.					
합 계						7,498									

※ 변경사유 : 지적 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소유자변경, 공부면적 오기, 측량으로 인한 편차 등)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66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번지, 81번지
 - 면 적 : 82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회의사당 연결 보행교 개설
 - 개 요 : RC 아치교 형태(L=54m, B=8~12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영구(허가일~2011.12.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6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7-1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본동 475번지 등 7필지
- 면 적 : 2,948㎡(영구), 1,105㎡(일시)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비상관로 설치(암사정수센터~올림픽대로 노랑대교 하부 송수관 이중화)
- 개 요 : · 압입추진(D=1,500mm, Shiled TBM공법) L=1,134mm
- 작업기지 수직구 2개소, 전진기지(H=48.5m), 도달기지(H=24.1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영구(허가일~2013.10.31)

